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2013. 3

ODA연구실
조한슬

저자

조 한 슬

(hscho@koica.go.kr/hanseul83@hotmail.com)

▶ 주요 경력

-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주요 연구실적

- 글로벌 도전과제와 개발협력: 인구와 가족계획, KOICA 정책포커스 제13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한국국제협력단, 2012.
-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pp. 31-51, 한국국제협력단, 2012
-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및 시사점, KOICA 정책포커스 제8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 요약	1
Executive Summary	5
 제1장. 서 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0
3. 분석방법	11
 제2장. 개도국의 ‘무역과 개발’ 관련 논의	 17
1. 1920년대 말 대공황 이전	17
2.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 1970년대	19
3. 1980년대부터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	22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	25
 제3장. 베트남의 AFT 관련 정책 및 사업 수요	 28
 제4장. DAC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38
1. 세계은행	38
2. 미국	46
3. 일본	60
4. 시사점	76

제5장. DAC 공여국의 AfT 사업수행 방식	78
1. DAC 공여국의 AfT 사업 현황	78
2. 세계은행	81
3. 미국	91
4. 일본	104
제6장. 한국의 AfT 정책 및 사업 현황	114
1. AfT 현황	114
2. ‘무역과 개발’ 정책	116
3. 한국의 AfT 사업 수행 방식	12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정책기관의 과제	139
2. 집행기관의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145
3. KOICA AfT 추진 전략(안)	150
참고 문헌	162
부록	167

표 목차

[표 1] 분석 프레임워크	11
[표 2] 한국의 AfT 지원 수원국 순위, 2006-2010	13
[표 3] DAC 공여국의 AfT 지원 수원국 순위, 2002-2009	14
[표 4] 입장별 주요 무역 및 개발정책	27
[표 5] 베트남 GDP 성장률 및 구성 변화, 1990-2011	28
[표 6] 베트남 교역 현황, 20005-2011	29
[표 7]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의 기업환경 비교	30
[표 8] 베트남의 글로벌경쟁력지수	31
[표 9]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전략	33
[표 10] 베트남 ODA 재원배분 7대 분야 중 AfT 관련 사항	34
[표 11] AfT 연관 베트남의 SEDP 목표 및 지표	35
[표 12] 세계은행의 무역개발 정책	41
[표 13] 세계은행 베트남 CPS와 베트남 SEDS 연계	43
[표 14] 세계은행 베트남 CPS와 무역과 개발 정책	44
[표 15] 세계은행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45
[표 16] 미국 2010 국가수출전략(NEI) 주요내용	48
[표 17] USAID 7개 중점 개발 목표 중 AfT 관련 정책	51
[표 18] USAID AfT 전략 주요 내용	52
[표 19] 미국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55
[표 20] 미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59
[표 21]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64
[표 22] JICA의 AfT 전략 주요 내용	70
[표 23] 일본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72
[표 24] 일본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75
[표 25] DAC 공여국의 AfT 지원 현황	78
[표 26] DAC 공여국 전체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79
[표 27] DAC 공여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79
[표 28] DAC 공여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80
[표 29] DAC 공여국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80
[표 30] 세계은행(IDA) 공여국의 AfT 지원 현황	81
[표 31] 세계은행(IDA)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82

[표 32]	세계은행(IDA)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82
[표 33]	세계은행(IDA)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83
[표 34]	세계은행(IDA)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83
[표 35]	세계은행 베트남 CPS 중 무역관련 지표	84
[표 36]	세계은행의 AfT 사업 분석	90
[표 37]	미국의 AfT 지원 현황	91
[표 38]	미국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92
[표 39]	미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92
[표 40]	미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93
[표 41]	미국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93
[표 42]	USAID의 AfT 관련 분야(포괄적 경제성장) 성과평가 지표	95
[표 43]	USAID의 STAR(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 Plus 2011-2013	100
[표 44]	미국의 AfT 사업 분석	101
[표 45]	미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8-2010	102
[표 46]	일본의 AfT 지원 현황	104
[표 47]	일본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105
[표 48]	일본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105
[표 49]	일본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106
[표 50]	일본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106
[표 51]	다낭 항만 개발 프로젝트*, 1999-2007	108
[표 52]	하이반 패스터널 건설 프로젝트*, 1999-2007	108
[표 53]	일본의 AfT 사업 분석	111
[표 54]	일본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8-2010	112
[표 55]	한국의 AfT 지원 현황	114
[표 56]	한국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115
[표 57]	한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115
[표 58]	한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116
[표 59]	한국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116
[표 60]	AfT 관련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121
[표 61]	KOICA 내부 AfT 지원전략(안)	122
[표 62]	한국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124
[표 63]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126
[표 64]	KOICA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 사업예시	129

[표 65] KOICA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 시행 예시	130
[표 66] KOICA AfT(경제개발) 관련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사업 개요	134
[표 67] 한국의 AfT 사업 분석	135
[표 68]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9-2010	136
[표 69]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결과 비교	142
[표 70] AfT 사업 시행체제 분석결과 비교	145
[표 71] AfT 성과 및 영향 평가 지표 예시	147
[표 72] KOICA AfT 전략(안)	159
[표 73] KOICA AfT 프로그램별 사업예시	160

그림 목차

[그림 1] 2009년도 공여국 AfT 지원 순위	12
[그림 2] 일본의 ASEAN 연결 마스터플랜	69
[그림 3] 세계은행그룹의 AfT 지원	88
[그림 4] USAID의 AfT 평가 프레임워크	97
[그림 5] EDCF를 통한 민자사업(PPP) 추진 모형	132
[그림 6] AfT 사업 연계방안	149

글상자 목차

[글상자 1] AfT 개념 및 논의 동향	14
[글상자 2] 2009년 미국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47
[글상자 3] USAID 대 아프리카 AfT 사업	54
[글상자 4] 일본의 EPA와 ODA 연계 사례	62
[글상자 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AfT	68
[글상자 6] 일본의 AfT 관련 주요 노력	70
[글상자 7] 1960~90년대 한국의 통상정책	117
[글상자 8] KOICA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방안	122

약어

약어	정식명칭	한글명칭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T	Aid for Trade	무역을 위한 원조
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
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	국별지원프로그램
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국별개발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개발협력연대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경쟁력지수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개도국 지원을 위한 통합체제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 무역 진흥회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DC	Least Developing Countries	최빈개도국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밀레니엄 챌린지 법인

MDTF	Multi-donor trust fund	다자공여기관신탁기금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투자보증기구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북미자유무역협정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	국가수출전략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OF	Other Official Flows	기타공적자금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정책일관성
PMU	Project Management Unit	프로젝트 관리기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빈곤감소전략보고서
SEDP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사회경제개발계획
SEDS	Socio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사회경제개발전략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위생 및 검역
SWAP	Sector Wide Approach Program	분야별 접근방법 프로그램
TCB	Trade Capacity Building	무역역량강화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국문 요약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글로벌 공공재와 같이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도 개발협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로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무역시스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통상시스템에서 개도국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촉구되고 있다.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여국이 큰 규모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통상정책을 AfT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AfT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개발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무역체제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AfT의 확대와 효과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공여국의 AfT 정책 및 수행체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무역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DAC 회원국의 대(對)개도국 무역정책과 AfT정책, 그리고 AfT사업이 각기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체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AfT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2장에서 시대별 무역정책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AfT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공여국을 선정하여 각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AfT정책을 정책일관성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정책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AfT 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여국의 무역관련 원조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AfT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6장에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KOICA를 중심으로 한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 분석대상 DAC 공여국은 무역관련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DAC 공여국·공여기관인 세계은행, 미국, 일본과 한국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수원국으로는 한국과 DAC 공여국이 공통적으로 AfT를 많이 지원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통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AfT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은행, 미국, 일본 모두 AfT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ODA 중점분야에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분야가 선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AfT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범분야적인 접근, 주류화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fT 사업은 주로 CPS 체계 안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PPP 사업과 Non-ODA 지원,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Aft 정책 및 사업 시행체제 분석결과 비교 >

분류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
정책	무역 정책 일관성	공여국 내	양호	미흡 (무역: 신자유주의 + 비신자유주의, Aft: 신자유주의)	미흡 (무역: 신자유주의 + 비신자유주의, Aft: 신자유주의)
		공여국 간	양호	양호	양호
		공여국-수원국 간	양호	양호	양호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적극	소극	소극	-
사업	Aft 정책	보유	- 정책기관: 보유 (Aft를 포괄하는 경제성장 강조 원조 정책) - 집행기관: 보유	- 정책기관: 보유 - 집행기관: 보유	미보유
	시행방식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경쟁력이 중점분야로 선정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별 사업 계획 시 범분야적인 방식 동시 사용 - 따라서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포괄적 경제성장이 중점분야로 선정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별 사업 계획 시 범분야적인 방식 동시 사용 - 따라서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점분야로 선정 -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에서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경제가 중점 분야로 선정
	Aft 평가지표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원조형태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패키지원조 강조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시작단계 - Aft와 민관협력 접목 시작단계 - Non-ODA 연결은 시도 중이나 미미

출처: 저자작성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국가협력계획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fT 정책이나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도국 무역 초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① 정책기관의 과제

- AfT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AfT 정책·전략 수립
- 무역정책과 AfT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CRS 코드나 무역마커를 사용한 AfT 통계의 과다·과소 산정 문제 개선 논의 주도

② 집행기관의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 KOICA의 AfT 지원정책·전략 수립 필요
- AfT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AfT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발굴
- 중점 AfT 프로그램 개발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 개발협력연대(DAK)와의 연계를 통한 PPP 사업 확대 또는 AfT 다자기금 기여 확대 등 다양한 AfT 프로그램 개발

Executive Summary

The spread and deepening of globalization has led to problems that require a global collective action, such as global public goods, and “global economic stability and free trade” are deemed as types of global public goods in need of support at the lev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both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ntire world,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international trade system by reflecting the standpoi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promote trade in those countries based on such a system as global public goods. However, the presence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is currently very weak.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should step in and make a concerted effort to tackle unfair market practices and regulatory barriers and also provide policy support and aid so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grow through trade.

To promote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ensure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of developing and donor countries. Even if donors provide aid for trade (AfT), the trade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that go against AfT will reduce the effects of AfT. This study, therefore, finds securing the coh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was also designed to draw suggestions to explore the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of donors. Since encouraging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trading system requires the expansion of AfT and improvement of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Af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ograms of developed donors, find ways to improve Korea’ s AfT, and ultimately suggest solutions to promote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hreefold; firstly, to examine and summarize the existing theories and discussions on trade policies for th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help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better underst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and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Secondly,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olicy positions upon which the trade policies of DAC members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fT policies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ultimately provide references for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Las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coh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of donors based on the study results, offer policy suggestions t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improve AfT to promote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Chapter 2 of this report summarizes two standpoints on the trade, and Chapter 3 offers a list of donors that provide the most aid for trade. The latter also focuses on the coherence of trade and AfT policies of the donors and whether the donors have adopted developing country-friendly trade policies. Chapter 4 discusses the implementation of AfT by donors to improve AfT, and Chapter 5 delves into the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AfT of Korea. Lastly, Chapter 6 provides suggestions to promote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olutions to improve Korea's AfT centering on KOICA.

Of the DAC donors that provide the most aid for trade, the World Bank, U.S., Japan, and Korea were selected for policy analysis, and Vietnam was selected as the recipient to which Korea and other DAC donors provide the most AfT.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trade policies of Korea, U.S., and Japan possessed both neoliberal and non-neoliberal characteristics, whereas their AfT

policies were exclusively neoliberal. The World Bank, U.S., and Japan all had their own AfT policies in place and there was an overlap between the priority areas of ODA and AfT. Furthermore, the donors adopted cross-cutting (mainstreaming) approaches for AfT. Their AfT businesses were implemented as program aids within the CPS framework, and the donors have recently begun to increase their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non–ODA support, and package aid connected to other areas.

Meanwhile, Korea seems to have a higher degree of coherence of its trade and AfT policies than U.S. and Japan. Moreover, the country holds regular meetings and implements joint projects to ensure harmonization with other donors and its policy coherence. However, Korea still does not have an official AfT policy or implementation system in place.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promote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① Tasks for policymaking organizations

- Make efforts to expand and implement an AfT.
- Establishing a specific AfT policy and strateg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DA.
- Make efforts to ensure the policy coherence of trade and AfT policies.
- Lead discussions about solving the problems of over–and underestimation of AfT statistics using CRS codes or trade markers.

② Tasks for agencies: centering on KOICA

- Establish a AfT policy and strategy.
- Develop indicators to evaluate and monitor Af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 Develop main AfT Programs:
 - Promoting a “customized package program” that meets the demands

and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 Developing a variety of AfT programs, including PPP through a partnership with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and increasing AfT trust fund.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글로벌 공공재와 같이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개도국의 경우 스스로 공공재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공공재 지원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¹⁾ 개발협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도 개발협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²⁾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로써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무역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³⁾ 또한, 최근 들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 규모가 증대되고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마찰과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통상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통상시스템은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무역 장벽들로 인해 개도국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촉구되고 있다.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간의 정책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여국이 큰 규모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1)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의 마련에 관련된 개발협력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연구가 2011~2015년 KOICA 연구 중기전략의 6대 연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공재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2015년까지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연구전략과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공공재 범위연구가 기획수행되었다. (조한솔 (2012b))

2) 조한솔 (2012a)에서는 글로벌 공공재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1) 지식생산 및 전파, 2)전염병 퇴치, 3)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4)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5)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3) 이에 따라 동 분야의 연구가 상기 범위연구의 후속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조한솔 (2012a))

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통상정책을 AfT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AfT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개발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무역체제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AfT의 확대와 효과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선진공여국의 AfT 정책 및 수행체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무역정책(Non-ODA)과 무역 관련 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개도국 친화적 국제무역체제 구축 및 개도국의 효과적인 무역시장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무역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DAC 회원국의 대(對)개도국 무역정책과 개발협력 관련 무역정책 및 사업이 각기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체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AfT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2장에서 개도국의 무역정책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AfT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공여국을 선정하여 각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개발관련 무역정책을 정책일관성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정책의 도입 여

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4장에서는 AfT 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여국의 무역관련 원조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AfT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6장에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KOICA를 중심으로 한 한국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끝맺으려고 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의 틀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수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AfT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먼저 분석대상 국가의 무역정책(Non-ODA)과 무역관련 개발협력 정책(ODA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일관성과 개도국에게 친화적인 무역정책 도입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AfT 사업수행 방식 개선을 위해 타 공여기관의 AfT 사업 시행 방식을 살펴보고 제언을 도출하려고 한다.

[표 1] 분석 프레임워크

1. 정책	가. 무역 정책일관성	①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무역관련 개발정책(AfT) 정책의 일치 여부 ②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③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 인식여부 - 개선방안
2. 사업	가. 시행	- AfT 정책 또는 사업의 계획 방법, 고려사항 - AfT 사업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AfT 사업 평가 결과 환류 방법
	나. 원조형태 (Aid modality)	① 프로그램 사업 - AfT 프로그램 사업 시행여부 - AfT 프로그램 사업 계획, 시행, 평가 방법 및 고려사항 ②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 민간 연계, 참여 촉진 방안 - AfT 관련 PPP 시행 전략 ③ Non-ODA 지원 - AfT Non-ODA 지원 여부 및 활용 현황 - AfT 관련 ODA와 Non-ODA 지원 연계방안 보유 여부 ④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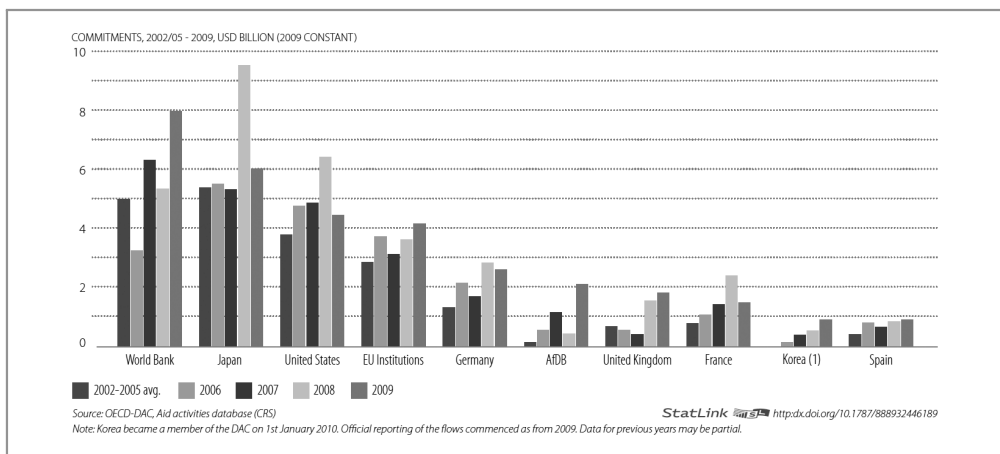
정책 분석대상 DAC 공여국은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DAC 공여국의 무역정책 또는 무역관련 개발정책이 의미 있기 위해서, 대상 국가가 각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무역관련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DAC 공여국 3개국과 한국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도국의 성장 및 빈곤퇴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ODA 중 무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AfT가 주요 원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AfT는 통상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을 돕는 지원, 또는 특별히 무역협력을 통해 얻는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의미하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OECD는 AfT 분야를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 ②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 ③ 무역 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
- ④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도 무역과 관련된 ODA 지원은 AfT에 제공된 ODA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2009년도 공여국 AfT 지원 순위



출처: OECD/WTO. (2011), p. 53.

2009년도 AfT 공여국 순위를 살펴보면, 세계은행(World Bank), 일본, 미국이 DAC 공여국 중 AfT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상기 3개 공여국, 세계은행, 일본, 미국과 한국을 정책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⁴⁾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볼 분석 대상 개도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DAC 공여국이 공통적으로 AfT를 많이 제공하는 개도국을 선정하여, 해당 개도국에서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이 시행한 사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업이 시행된 개도국을 전 세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국별 특수성 등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 사례 국가를 1개국으로 한정하였으며, 이후 ODA 관련 유의미한 제언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DAC 공여국이 공통적으로 AfT를 많이 제공하는 개도국 1개국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OECD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Purpose Code, CRS 코드)별 통계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DAC 공여국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AfT를 가장 많이 제공한 3개국은 인도, 이라크, 베트남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AfT를 많이 제공한 3개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는 DAC 공여국과 한국의 AfT 지원 상위 3개국 중 공통되게 나타난 베트남을 사업 사례 분석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베트남에서 시행된 AfT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한국의 AfT 지원 수원국 순위, 2006-2010

(단위: US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2010
베트남	5,536,860	165,383,779	137,959,433	232,606,176	273,122,413	814,608,661
방글라데시	28,419,180	32,180,078	138,794,983	36,318,024	93,340,605	329,052,870
필리핀	7,551,210	7,617,506	48,693,783	202,403,746	48,080,181	314,346,426
인도네시아	41,757,400	17,089,157	15,050,799	99,461,516	5,675,899	179,034,771
캄보디아	40,297,980	9,836,365	37,027,283	36,223,822	37,676,501	161,061,951
모잠비크	98,090	208,967	852,779	69,227,213	60,670,364	131,057,413

4) 향후 추가 자료조사의 진행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 공여국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스리랑카	5,358,700	507,605	62,604,146	43,786,753	1,132,077	113,389,281
탄자니아	552,090	27,076,152	30,800,047	1,295,285	42,411,594	102,135,168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data extracted on 04 Sep 2012 from OECD.Stat)

[표 3] DAC 공여국의 Aft 지원 수원국 순위, 2002-2009

(단위: US 백만달러)

국가	약정액					총약정액 2002-2009
	2002-05평균	2006	2007	2008	2009	
인도	1,703,600,000	1,847,000,000	2,388,600,000	3,424,000,000	1,882,400,000	16,356,300,000
이라크	2,101,200,000	2,208,100,000	1,191,400,000	3,029,700,000	400,200,000	15,234,100,000
베트남	1,643,600,000	1,450,200,000	2,141,900,000	2,046,000,000	2,608,100,000	14,820,700,000
아프가니스탄	759,200,000	1,267,200,000	1,478,200,000	1,692,000,000	1,509,500,000	8,983,800,000
인도네시아	1,208,600,000	1,022,600,000	905,900,000	895,900,000	970,000,000	8,629,000,000
방글라데시	830,000,000	580,100,000	1,008,900,000	1,187,900,000	892,200,000	6,989,200,000
파키스탄	648,600,000	408,500,000	738,200,000	1,150,400,000	965,200,000	5,856,700,000
중국	829,600,000	614,800,000	402,600,000	728,700,000	588,200,000	5,652,600,000
에티오피아	533,500,000	729,200,000	912,800,000	740,700,000	883,600,000	5,400,300,000
이집트	578,800,000	809,800,000	567,200,000	990,100,000	277,100,000	4,959,500,000
탄자니아	412,500,000	429,800,000	586,900,000	1,325,200,000	881,300,000	4,873,100,000
모로코	328,600,000	515,500,000	305,300,000	179,990,000	848,400,000	4,783,500,000
케냐	314,600,000	510,300,000	973,000,000	92,200,000	962,100,000	3,795,800,000
스리랑카	513,100,000	347,100,000	340,800,000	487,800,000	457,300,000	3,685,600,000
콩고공화국	512,900,000	161,000,000	479,700,000	267,400,000	724,600,000	3,684,300,000
가나	280,800,000	350,000,000	784,400,000	633,800,000	697,400,000	3,588,600,000
터키	485,000,000	281,200,000	224,000,000	785,900,000	283,800,000	3,514,800,000
나이지리아	229,600,000	189,400,000	286,300,000	705,400,000	1,333,400,000	3,423,900,000
우간다	258,300,000	191,700,000	739,700,000	305,500,000	1,017,900,000	3,288,100,000
모잠비크	354,500,000	346,500,000	488,100,000	5,200,000	430,400,000	3,202,800,000
합계						130,731,600,000

출처: OECD/WTO.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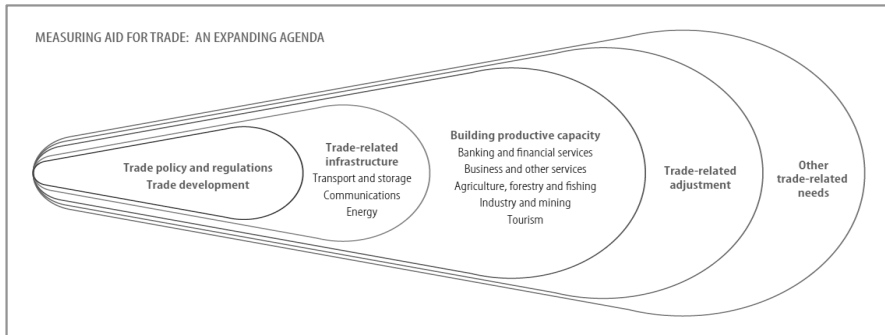
[글상자 1] Aft 개념 및 논의 동향

1. Aft의 개념

- Aft는 수원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원조사업을 통칭

• WTO 및 OECD는 Aft 분야를

- ①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
- ②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 ③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 ④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 ⑤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 ⑥ 기타 무역관련 니즈(other trade-related needs)로 구분하고 있음.



- 무역정책 및 규범: 개도국의 국제무역시스템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국의 무역관련 행정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 정부의 광범위한 무역정책 체계화, 무역협상 참가, 무역규율 및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한 현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
- 무역개발: 기업들이 무역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지원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말함.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금융 및 투자의 활성화, 시장분석, 전자상거래 실시지원 등이 포함됨.
- 무역관련 인프라: 도로 및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 정비
- 생산역량강화: 수원국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제공 역량 개선
- 무역관련 조정: 수입관세인하 및 특혜시장접근 철폐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재정의 불균형 문제 등 수원국의 무역정책개혁에 수반되는 조정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 기타 무역관련 니즈: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비롯한 국가개발계획에서 무역 관련 우선순위로 분류된 활동에 대한 지원

2. WTO 내 Aft 논의 동향

- 도하 WTO 각료선언(2001년)은 무역관련 지원 및 능력형성은 개발차원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
 - 개도국의 공급측면 능력 및 무역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WTO 협정의 혜택 및 교역확대에 기여

- WT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T/F를 설립, Aft 이행 권고안 마련을 요청하고, 회원국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Aft를 위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
- 2007년부터 WTO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2년마다 글로벌 리뷰회의 개최
 - 2007.11월, 2009.7월, 2011.7월 글로벌 리뷰를 3회 개최하였으며, 2013.7월 제4차 Aft 글로벌 리뷰 개최 예정

3. WTO Aft 이니셔티브(Aid for Trade Initiative) 추진 경과

- WTO가 개발기구는 아니지만, 2005년 Aft 이니셔티브 출범 이후 Aft를 위한 모니터링과 논의의 장을 제공, OECD와 더불어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
 - 2005년 이후 Aft 규모가 60% 증가, 다수 국가들의 ODA정책에 Aft가 포함
- 우리나라 1차 Aft 글로벌 리뷰 회의부터 적극 참여, 우리의 개발 경험을 수원국들과 공유하고 특히 Aft 관련 인적 자원관련 원조를 증대하겠다고 표명
- WTO/OECD는 2011년 제3차 Aft 글로벌 리뷰를 계기, Aft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성공 및 실패 요인과 교훈 도출 “Aid for Trade at a Glance: Showing Results” 발간

출처: WTO/OECD. (2007b); OECD/WTO. (2011).

제2장. 개도국의 ‘무역과 개발’ 관련 논의

개도국의 성장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켜, 국제무역체제에 원활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개도국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자유무역체제에 참가하거나 시장개방을 단행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무역 정책을 채택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전면적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⁵⁾이다.⁶⁾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경제에서 자유무역과 관련된 정책의 입장은 시대별로 자유무역을 옹호 또는 비판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920년대 말 대공황 이전, 2)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3) 1980년대부터 2007~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⁷⁾

1. 1920년대 말 대공황 이전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이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⁸⁾ 이러한 중농주의 이론은 아담 스미스(A. Smith)⁹⁾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그

5) 단계적 시장개방을 지지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6) 이 두 가지 입장은 흔히 영미식 발전모델과 동아시아식 발전모델로 대표되어 불리기도 하며, 최근에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7) 아나톨 칼레츠키 (2011)는 위의 시기 구분에 따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시대까지를 각각 ‘자본주의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 3’ 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44~45. 재인용)

8) 17세기를 주도한 경제 철학인 중상주의는 국제무역은 외국의 힘을 배격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독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상주의에 따라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가 있었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9)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도덕철학자로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이다.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의 출발점이 된 『국부론』을 저술하였다. 처음으로 경제학을 이론·역사·정책에 도입하여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하였다.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예정조화설을 주장하였다.

는 『국부론』에서 자유무역론의 내용을 개관하며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 소비자이익론을 통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⁰⁾ 또한, 그는 국내 분업의 원리를 국가 간에 적용하여 국제 분업화를 체계화한 후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absolute cost, 絶對生産費)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의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다.

이후 자유무역 이론은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에 의해 발전되게 된다.¹¹⁾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대표적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비교생산비(comparative cost, 比較生産費) 원리에 입각한 국제 분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국가의 보호·간섭·통제 없이 시행되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통해 교환할 경우 모든 나라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¹²⁾

이처럼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의 원리 등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등장한 1776년부터 1920년대 말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년간 세계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론들의 발전과 함께 19세기 말부터 세계무역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등 공업국들은 값싼 원료의 공급지와 공산품 및 자본재의 판매시장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농산물 등의 원료 수출을 늘리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¹³⁾

10) 김정수. (2009), pp.41-42

11)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고전학파의 완성자.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에 이르는 이론을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 저술하였다. 차액지대론(differential rent, 差額地代), 임금생존비설(standard living theory, 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12) 리카도는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무역발생원리와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역이익이 교역 당사국에 얼마만큼 배분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밀(J. S. Mill)은 리카도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 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과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을 규명하였다. 이 이론이 바로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또는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다. (진희선. (2009).)

13) 그러나 이러한 원료수출에 의존한 개도국의 발전 전략은 농산물이나 금속 등의 국제가격과 생산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수출소득원이 되지 못해 중남미 지역의 경제 발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김원호 (2004), p. 263.)

2.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 197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까지 약 40년 동안에는 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채택되게 된다.¹⁴⁾ 이 시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협정을 바탕으로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무역정책 역시 전면적이며 시장의존적인 자유무역보다는 각국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는 이 시기에 체결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GATT 협정이 다자주의적 특색을 보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¹⁵⁾

물론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이후 국제무역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GATT 협정이 1930년대 이래 도입된 수입 제한 규제들을 제거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던 관세를 완화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 시기에 GATT 협정이 성공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GATT 협정이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자유무역주의와 달리 정부의 간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GATT 협상에서 농산품은 높은 관세와 수입할당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의 보호를 받았으며, 보험, 금융, 건설, 공공 설비 등의 서비스 부분 또한 시장 개방에서 제외되었다. 이밖에도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에 할당량 제한을 두는 ‘다자간 섬유 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¹⁷⁾’,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규제하도록 하여 수입할당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 VERs)’가 허용되어,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¹⁸⁾

14)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44-45.

15)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계기로 형성되어 이후 국제 금융질서의 기준이 되었다.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44-45.)

16) 이로 인해 1948~90년의 국제 무역량은 연평균 7% 증가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총생산 역시 전례 없는 증가를 기록하며 경제 발전을 달성하였다. (대니 로드릭. (2011), pp. 122-123.)

17) MFA의 체결로 인해 개도국들은 다른 나라의 관세 감면 효과는 누리면서도, 관세 인하 압력을 받지 않는 혜택을 입을 수도 있었다.

18) 대니 로드릭. (2011), p. 124.

정부가 경제발전 주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역도 각국 정부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은 구조주의와 종속이론같은 개발경제학 이론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레비쉬는 세계가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간의 교역은 ‘불균등교역’을 초래하여, 주변부 국가들의 희생의 대가로 중심부 국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구조주의 이론을 주장을 하였는데, 향후 이 이론은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성립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¹⁹⁾ 프레비쉬의 이론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의 생산구조는 수출부문이 일부 1차 상품에 집중되어 이러한 생산구조 하에서 개도국은 중심부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공산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농산물이나 원료를 수출해야하는 ‘교역조건 악화’가 발생,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프레비쉬는 주변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적, 국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 공동시장을 창설을 통한 역내국 간 관세 인하, 제조업 등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설정 등을 통한 중심-주변부 간의 무역 관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차 상품의 수출에만 의존하여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개발전략으로 추진하여 근본적인 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또한, 1950년대에서 1960년까지 개도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유치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 학계의 학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했다.²²⁾

이러한 프레비쉬의 이론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실제로 적용되게 된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수출 감소는 외화 소득 감소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그동안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 수입해오던 공산품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²³⁾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오던 공산품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의 주

19) 이를 프레비쉬-ECLA 이론 (Prebisch-ECLA thesis)이라 부른다. (김원호. (2004), p. 265.)

20) 김원호. (2004), p. 265; 김정수. (2009), p. 48.

21) Iglesias. (1992), pp. 9-20; Cardoso and Helwege. (1992), pp. 84-85; 김원호. (2004), p. 266.

22) 대니 로드릭. (2011), p. 244.

23) 김원호. (2004), pp. 263-264.

요국가에서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개발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다.²⁴⁾ 프레비쉬의 주장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과 공업 원료의 가치가 하락하여 교역조건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필요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득 및 고용증대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여 공업국들의 경제적 변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²⁵⁾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제한적인 무역만을 허용하는 내수 시장에 의존한 성장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수입보호정책, 공공투자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동원해 시장에 개입했다.²⁶⁾ 결과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한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한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과 터키, 중동, 아프리카의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45~1980년까지 중남미 지역의 개도국의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4개 국가도 1970년대 후반까지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다.²⁷⁾

한편,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수출지향 무역정책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나 간섭을 허용하는 국가개발 정책을 채택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된다.²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나,²⁹⁾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³⁰⁾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라는 것

24) 이 시기에 중남미 지역 이외에 중동,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되었다.

25) 김원호. (2004), pp. 263-264.

26) 당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국제 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국내 시장에 개입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니 로드릭. (2011). p. 252.)

27) 대니 로드릭. (2011), pp. 252-253.

28) 대니 로드릭 (2011)은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자유무역과 시장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수출 보조금이 수입 보호 효과를 상쇄해 자유무역을 실시할 때와 비슷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시 발전 정책 자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29)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20-24.)

30)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7년 사이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국과 미국, 유럽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20-24.)

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했던 무역정책과 개발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들 국가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산업 보호, 무역금융·관세 환급 등의 보조금 지급, 자본유출입 및 외환거래의 통제, 환율통제 등의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철강, 조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유치산업보호정책과 이러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추진한 경제개발정책 역시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선진국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개도국들도 외부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는 각국 나름의 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거두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³¹⁾

3. 1980년대부터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

1980년대는 시장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게 된다.³²⁾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무역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 받게 된다.³³⁾ 특히, 1982년 중남미 지역에 부채 위기가 발생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통제하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부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워싱턴 컨센서스가 등장하게 되었다.³⁴⁾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 시기의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정책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탈규제화,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민영화를

31) 대니 로드릭, (2011), pp. 18-19.

32)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 45.

33)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 45.

34) 대니 로드릭, (2011), p. 253.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발정책의 주를 이루게 된다.³⁵⁾

세계은행, IMF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은 개도국의 성장과 자유 무역 사이의 무차별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싱턴 컨센서스 체제 내에서 추진되게 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은 정부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여기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으로, 자유무역은 관세나 다른 형태의 정부 규제로 제한을 받지 않는 무역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비교우위론은 각 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무역을 통하여 서로 교환할 때 모든 나라에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³⁶⁾ 또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무역 정책은 무역 자유화를 자국부터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것도 상대국의 시장 개방 여부에 상관없이 이롭다고 주장하며, 공적 필요에 따른 관세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여 이행할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조정비용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무역 자유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손실의 총량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방정책이 여러 개도국에서 시행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은 GATT의 개편과 WTO의 출범에도 그 영향을 미쳐, 이전의 GATT 체제에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들도 WTO 출범을 기점으로 전면적 또는 단계적으로 자유화의 수순을 거치게 된다.³⁷⁾ 산업정책도 WTO와 연계되어 기초교육이나 산업기반시설 세공, 일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일반적

35)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1989년에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단행한 개혁의 공통 요소들을 한데 묶어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대니 로드릭. (2011), p. 245;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p. 45-46.)

36)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대표적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에서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무역발생 원리와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역이익이 교역 당사국에 얼마만큼 배분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37) 대니 로드릭. (2011), p. 130.

인 산업정책만이 허용되게 되며,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통제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개도국들은 무역과 투자 시장을 개방하라는 선진국들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효과에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자유무역이 역내무역 변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인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³⁸⁾와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³⁹⁾가 있다. 또한 자유무역은 단기적 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데, 규모의 경제 및 경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생산요소의 재배치 등이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라고 한다. 이는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게 되고, 자유무역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당사국들은 역내의 외국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으로 인해 역내 투자도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협정⁴⁰⁾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무관세 혜택이나 원산지규정 등으로 단일 투자협정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경제개발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들어 체결이 활발해진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로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부채 위기를 겪은 이후 일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그 밖의 여러 국가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버리고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성장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기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초기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워싱턴 컨

38) 무역창출효과는 자유무역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자유무역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자유무역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로 인하여 생산 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39)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무역의 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무역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 정책으로 인하여 역내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0)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에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협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 당사국들이 체결하는 조약이다.

센서스는 이전 내용을 유지하는 한편 더 광범위한 추가 개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게 된다.⁴¹⁾ 이렇게 개방 및 개혁의 강도가 강화된 이후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니 로드릭(2011)은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명명하며, 초기 워싱턴 컨센서스와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 운영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워싱턴 컨센서스 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⁴²⁾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

중남미 지역 일부 국가가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요구하는 무역 및 금융 시장 개방 함께 시장규제 완화, 거시 경제 불균형 해소, 노동 시장 개방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경제 성장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자유주의 개발 및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⁴³⁾ 또한 이러한 비판론은 2007~2008년 미국발(發) 경제위기를 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면서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⁴⁴⁾

스티글리츠, 대니 로드릭, 장하준 등의 학자가 신자유주의적 무역 및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자유무역과 개도국의 성장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관점과는 다르게, 자유무역으로 인한 개도국의 성장은 특정한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만 상관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⁴⁵⁾

41) 이 시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으로, 당시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행정 부분의 광범위한 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 등의 금융 개혁과 자본의 흐름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개방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니 로드릭. (2011), pp. 256-257.)

42)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 47.)

43) 대니 로드릭. (2011), pp. 259-260.

44)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인 반면, 미국은 3.0%, 영국은 1.6%, 유로지역 1.8% 등을 기록하였다.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p. 17.)

45) 신자유주의 무역 정책과 입장을 달리하는 이론도 크게 스티글리츠 등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와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마시스트 입장의 무역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론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비교우위론이 상당수 개도국에서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위에 성립된 이론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통계적 증거도 취약하며, 역사적으로도 거의 모든 산업 국가 또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단계에서 관세, 수출 보조금 등 보호무역 정책과 선별적 산업정책을 사용했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⁴⁶⁾ 이 밖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무역 자유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단·중기적 조정 비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니 로드릭 (2011)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무역 정책과 개발 정책이 모든 개도국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모든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처방을 차별성 없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WTO 규범이 지향하는 무차별적인 무역 자유화, IMF의 관행,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충고, 현재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방향은 가난한 개도국들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무역정책과 관련하여서도 개도국 정부가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을 원할 경우 한국과 대만처럼 수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국처럼 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홍콩처럼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면 되고, 이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지는 각 개발동상국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또한 선진국을 포함한 각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또는 경제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 통일체(글로벌 거버넌스)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무역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장하준(2008)은 자유무역의 보호 장벽의 구체적 형태는 국가의 규모와 현재의 산업 생산 능력 등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한 후

46)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2008). pp. 88-89.

47) 대니 로드릭. (2011). pp. 262-263.

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장하준은 유치산업론이 개도국이 산업 국가와 무제한적인 교역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자유무역에서 단기적으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특화를 추구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해당 개도국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는 지금까지 논의 및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 및 개발 정책을 신자유주의 관점과 비(非)신자유주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본 표이다.

[표 4] 입장별 주요 무역 및 개발정책

	신자유주의 관점	비(非) 신자유주의 관점
무역 및 개발 정책	- 전면적 관세인하 - 수출촉진지역 - WTO허용보조금: 일반적 연구개발, 낙후지역지원보조금 - 일반적 산업정책: 기초교육, 산업기반 시설 제공 - 일반적 연구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유치산업 보호 또는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부과 - 수출보조금 - 수출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수입자제에 대한 관세 환급 - 핵심 산업에 사용될 원재료 수출 제한 - 수출품 품질 정부 규제 - 수출 시장과 마케팅 위한 정부의 정보제공 - 수입할당제 운영 - 수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 보조금 - 선별적 산업정책 실시 - 투자계획 지시 -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개도국의 예외 허용

출처: 저자작성

제3장. 베트남의 Aft 관련 정책 및 사업 수요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과 급격한 빈곤률 감소 등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및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 수출 진흥 및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편입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장개방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⁴⁸⁾

[표 5] 베트남 GDP 성장률 및 구성 변화, 1990-2011

(단위: %)

연도	연간성장률(Annual growth rate)				GDP 구성(Share in GDP)		
	GDP	농업 (Agriculture)	산업 (Industry)	서비스 (Service)	농업 (Agriculture)	산업 (Industry)	서비스 (Service)
1990-1999	7.4	3.9	10.6	7.7	30.2	28.9	40.9
2000	6.8	4.6	10.1	5.3	24.5	36.7	38.7
2001	6.9	3.0	10.4	6.1	23.2	38.1	38.6
2002	7.1	4.2	9.5	6.5	23.0	38.5	38.5
2003	7.3	3.6	10.5	6.5	22.5	39.5	38.0
2004	7.8	4.4	10.2	7.3	21.8	40.2	38.0
2005	8.4	4.0	10.7	8.5	21.0	41.5	37.5
2006	8.2	3.7	10.4	8.3	20.4	42.0	37.6
2007	8.5	3.8	10.2	8.8	20.3	42.0	37.7
2008	6.2	4.1	6.1	7.2	22.2	40.4	37.4
2009	5.3	1.8	5.5	6.6	20.9	40.8	38.3
2010	6.8	2.8	7.7	7.5	20.6	41.6	37.8
2011	5.9	4.0	5.5	7.0	22.0	40.8	37.2

출처: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1 (OECD, 2012a에서 재인용)

실제로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1990년 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2,050억 달러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규모도 급증하였다.

48) OECD. (2012a), p. 9.

[표 6] 베트남 교역 현황, 20005-2011

(단위: USD, 백만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연간증가율 (Total annual growth rate, %)	15.0	22.0	39.9	28.5	-14.7	22.1	15.0
ASEAN	9,326	12,547	15,908	19,568	16,461	16,408	20,900
EU	2,581	3,129	5,142	5,582	5,343	6,362	7,500
대만	4,304	4,825	6,947	8,363	6,113	6,977	8,557
한국	3,594	3,908	5,340	7,255	6,708	9,761	13,176
홍콩	1,235	1,441	1,951	2,633	2,121	860	970
일본	4,075	4,702	6,189	8,240	6,836	9,016	10,400
중국	5,900	7,391	12,710	15,974	15,411	20,019	24,594
미국	863	987	1,701	2,647	2,711	3,767	4,529
수출 총 연간증가율 (Total annual growth rate, %)	22.3	22.8	22.1	29.0	-9.7	26.5	22.3
ASEAN	5,744	6,633	8,110	10,338	8,761	10,351	1,3600
EU	5,517	7,094	9,096	10,896	9,402	11,386	16,500
대만	935	969	1,139	1,401	1,121	1,443	1,843
한국	664	843	1,243	1,794	2,078	3,092	4,715
홍콩	353	453	583	877	1,034	1,464	2,206
일본	4,340	5,240	6,090	8,468	6,336	7,728	10,781
중국	3,228	3,243	3,646	4,850	5,403	7,309	11,125
미국	5,924	7,845	10,105	11,887	11,407	14,238	16,928

출처: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1 (OECD, 2012a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Easy of Doing Business)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베트남은 무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74일로 인도네시아 (37일), 말레이시아 (11일) 등 동남아시아 지역 내(內)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수출비용도 2010년의 컨테이너 당 555달러에서 610달러로 증가하여,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베트남 개발전략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관련 인프라 개발에 향후 10년간 약 4,000억 달러의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⁴⁹⁾

49) OECD. (2012a), p. 18.

[표 7]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의 기업환경 비교

항목	단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2012	베트남 2010
기업환경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Rank)	123	12	138	18	99	78
사업의 시작 (Starting a Business)	순위 (Rank)	166	54	1161	85	108	100
시간 (Time)	일 (days)	47	6	36	29	34	39
비용 (Cost)	1인당 소득 (%of income per capita)	22.7	15.1	18.1	6.7	8.7	13.3
건설 승인에 대한 거래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순위 (Rank)	75	96	100	16	28	62
시간 (Time)	일 (days)	158	140	84	157	110	110
비용 (Cost)	1인당 소득 (%of income per capita)	95	17.5	103	9.2	67.3	110.8
전력 확보 (Getting Electricity)	순위 (Rank)	147	28	57	10	155	-
시간 (Time)	일 (days)	108	46	50	35	115	115
비용 (Cost)	1인당 소득 (%of income per capita)	1244	53.9	83.3	75.3 6	1988	3274
재산 등록 (Registering Property)	순위 (Rank)	98	33	122	26	48	43
시간 (Time)	일 (days)	22	14	39	2	57	57
비용 (Cost)	1인당 소득 (%of income per capita)	10.8	3.3	4.8	6.3	0.6	1.1
신용 획득 (Getting Credit)	순위 (Rank)	129	1	129	70	40	15
투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순위 (Rank)	46	4	128	13	169	173
과세 (Paying Taxes)	순위 (Rank)	131	15	143	96	138	124
시간 (Time)	일 (days)	259	133	193	264	872	1050
총 세금율 (Total tax rate)	세금부과율 (% profit)	34.5	24.5	46.6	37.6	34.5	40.1
국외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순위 (Rank)	37	11	53	20	74	63
시간 (Time)	일 (days)	17	11	15	14	21	22
총 세금율 (Total tax rate)	세금부과율 (% profit)	34.5	24.5	46.6	37.6	34.5	40.1

국외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순위 (Rank)	37	11	53	20	74	63
시간 (Time)	일 (days)	17	11	15	14	21	22
수출비용 (Cost to export)	달러/컨테이너 (US\$ per container)	644	435	585	585	610	555
수입에 걸리는 시간 (Time to import)	일 (days)	23	8	14	13	21	21
수입의 비용 (Cost to Import)	달러/컨테이너 (US\$ per container)	660	420	660	750	600	645
파산 집행 (Enforcing Insolvency)	순위 (Rank)	144	33	111	23	44	31
파산 해결 (Resolving Insolvency)	순위 (Rank)	148	49	165	58	149	124

출처: World Bank. (2012).

세계은행의 ‘기업환경(Easy of Doing Business) 지표’와 유사한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⁵⁰⁾에서도 베트남의 무역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도 GCI의 평가대상인 144개 국가 중 95위를 차지하였으며, 통관 절차 부담(Burden of customs procedure)은 114위, 수출기업 가치사슬의 폭(Value chain breadth)은 114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¹⁾

[표 8] 베트남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지표	순위		가치		가치 변화 (%)
	2010-11	2012-13	2010-11	2012-13	
글로벌 경쟁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95	75	4.3	4.1	3.9
인프라의 질 (2th Pillar: Quality of Infrastructure)	83	95	3.6	3.3	6.1
전체 인프라의 질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123	119	3.0	3.2	6.6
도로 인프라의 질 (Quality of roads)	117	120	2.7	2.7	0.7

50)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매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발표하고 있다. GCI는 각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거시경제의 건전성 기술이용의 용이성,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도, 인적자본 등 12개 부문을 평가해 해당 국가 안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51) World Economic Forum. (2012), p. 366.

철도 인프라의 질 (Quality of railroad infrastructure)		68		2.6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97	113	3.6	3.4	4.3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88	94	4.2	4.1	1.7
여객기 운송 능력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millions)	36	33	493.4	674.5	36.7
전력공급의 질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98	113	3.6	3.1	13.69
이동전화 이용자수 (Mobile telephone lines/100 pop)	58	18	100.6	143.4	42.6
유선 전화 가입자 (Fixed telephone lines/100pop)	35	86	34.9	11.5	67.1
비즈니스 민감도 (1th Pillar: Business Sophistication)	64	100	4.0	3.6	10.2
국내 공급자의 양 (Local supplier quantity)	61	38	4.9	5.0	2.8
국내 공급자의 질 (Local supplier quality)	91	99	4.1	4.1	1.3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13	36	4.9	4.2	13.1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110	139	2.8	2.5	10.0
수출기업 가치사슬의 폭 (value chain breadth)	76	114	3.4	3.0	13.0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72	108	4.0	3.6	9.2
생산공정의 성숙도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59	118	3.6	3.0	116.8
기업의 마케팅 정도 (Extent of marketing)	51	110	4.4	3.5	21.7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이양 정도 (Willingness to delegate authority)	64	105	3.6	3.3	10.4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12).

한편, 베트남 정부도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장애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⁵²⁾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무역 활성화를 통해 향후 베트남

52)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11-2015'에서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2011-2020’를 비롯한 국가개발계획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⁵³⁾

먼저, 베트남정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② 고급인력 육성, ③ 인프라 확충 세 가지 전략을 수립, SEDS 2010-2020을 통해 발표하였다.

[표 9]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전략

항목	세 부 내 용							
SEDS 기본목표	정치·사회적 안정, 물질·정신적으로 개선된 생활수준, 독립과 통합의 유지, 국제적 지위향상 및 더 높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 (2020년까지 1인당 GDP 3,000달러 달성과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							
SEDS 3대 전략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분야별 목표	경제발전				교육과학기술	자원환경	사회분야	
SEDS 목표 (Goals)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거시 경제 안정 유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2. 산업 및 공업부분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3. 농업분야 현대화 추진 4.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향상 5.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 6. 지역개발 및 지역별 도시화 추진				9.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인력역량강화 1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	11. 기후 변화에 적극적 대응, 환경 보호 강화	7. 경제발전과 사회문화 발전 동시 추진 8.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12. 정치적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	
ODA 재원배분 7대 우선순위 분야	경제 인프라 확충	투자, 무역, 특정분야 생산 촉진	농업 및 농촌 개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사법 및 행정 시스템 구축	고급인력 및 과학기술 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통한 녹색성장 추진	사회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 및 소수민족 사회경제 발전

출처: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1); Government of Vietnam. (2011); Government of Vietnam. (2012).

53)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1).

[표 10] 베트남 ODA 재원배분 7대 분야 중 Aft 관련 사항

분야	경제 인프라 확충	투자, 무역, 특정분야 생산 촉진	농업 및 농촌 개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사법 및 행정시스템 구축	고급인력 및 과학기술 개발
세부 내용	- 물류수송량이 많은 지역처럼 향후 국가전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확충 - 항만 건설 및 유통서비스 개선 - 국제공항 건설 - 대도시에서 지하철 건설 및 철도 수송망 개선 - 도시인프라 개선 - 전력생산 및 송배전 시스템 확충,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목표 달성 - 자연재해 방지 및 피해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인프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 기술이전, 현대화된 제조공정 및 관리 기술 도입, 베트남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농산물 가공, 해산물 가공, 가공무역 등) 생산력 강화를 통해 수출 및 투자 촉진 - 글로벌생산사슬(Global production chain) 편입 및 지역 경제통합 추진 - 수출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빈곤퇴치 도모	- 국가목표 프로그램에 맞춘 농촌개발 지원 -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인프라 구축 (교통, 전기, 보건, 교육 등) - 농촌경제 구조조정 (경제성 높은 상품 생산을 통한 소득 향상) - 농촌지도 및 연구를 통한 농수산 분야 기술 전수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력상품 개발 지원 -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산업화를 추진 - 농촌지역 산업화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조정 - 농촌지역 식수 및 친환경 위생시설 공급	- 상품, 서비스, 금융, 부동산, 노동, 기술과학 시장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선 지원 - 행정부 개편	- 고급인력 양성 - 기술이전 및 지식관리 - 과학기술 개발

출처: Government of Vietnam. (2012).

이와 연계되어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도 무역개발을 통해 베트남의 세계무역시장 편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Trade Development for Viet Nam for Period 2011-2020)을 수립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시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 등을 통한 상품의 수출입량 증가, ②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회원국 및 중국 등과 체결한 경제무역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는 동시에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등의 주요 통상국과의 협상을 통해 베트남 상품의 수출 시장접근성 개선, ③ 수출과 관련된 정보 또는 시장 전망 등의 정보를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개발 지원, 기업협회(business association)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무역활성화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무역 개발을 위한 정책목표는 5개년 사회개발계획(SEDP 2010-2015)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EDP 2010-2015에서는 무역 개발을 위한 목표 중에 하나로 ‘수출구조 개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 촉진, 전체 수출량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축소, 농수산물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전자기기,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 촉진, 국제품질기준 준수를 위해 수출품 품질 개선 등의 실행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표 11] Aft 연관 베트남의 SEDP 목표 및 지표

NO	목표/주요지표(Targets/ Key Indicators)	단위 (Unit)	기초선 (Baseline 2010)	목표 (2011-2015 Targets)
경제 목표(Economic Target)				
1	1인당 평균 GDP (Average GDP per capita on the ending date)	US\$	1,168	1,965-2,000
2	연평균 GDP 성장률 (Auunal average GDP growth rate)	%	7.0	6.5-7.0
3	경제구조-농업,임업,어업 (Economic structure-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20.58	18.5-18.0
4	경제구조-산업과 건설업 (Economic structure-Industry and Construction)	%	41.10	41.7-42.0
5	경제구조-서비스 (Economic structure- Services)	%	38.32	39.8-40.0
6	국가 예산 중 원조비율 (share of aid in total State budget revenue(%))	%	0.8	0.6
수출과 수입(Exports and Imports)				
7	1인당 수출량 (Export volume per capita)	US\$	830.5	1,389-1,520
8	수출증가율 (Export growth rate)	%	17.3	5.8-8.2
8a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수출 증가율 (Export growth rate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	—	—
9	수입증가율 (Import growth rate)	%	18.0	4.4-7.4

10	국내 수입 예산 중 수출입 비율 (Share of export-import revenue in total State budget revenue(%))	%	21.3	19.4-19.7
11	무역수지 적자 비율 (Share of trade deficit in exports)	%	22.4	12-10.1
생산성과 무역(Productivity & Trade)				
12	농업, 임업, 어업 생산 증가율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growth rate)	%	5.1	4.0-4.5
13	소비재와 사회서비스의 소매 판매 성장률 (Growth rate of retail sales of consumer goods and social services)	%	26.3	25.0
교통(Transportation)				
14	원자재 이동량의 증가율 (Growth rate of commodity transportation volume)	%	1.8	12.0
15	승객 이동량의 증가율 (Growth rate of passenger transportation volume)	%	10.2	11.8
커뮤니케이션 정보(D. Information-communications)				
16	전화 이용자의 수 (Number of telephone subscribers/100 people)	명	147.4	154.0
17	광인터넷사용자 수 (Number of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100 people)	명	12.6	8-8.5
관광(Tourism)				
18	베트남에 방문한 국제 관광객 수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coming to Vietnam)		20,846	30.8
투자과 비즈니스 환경(Invest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19	총투자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FDI share in total investment)	%	18.8	16.4-16.5
20	설립을 위한 기관등록 총 수 (Total number of establishment registered for establishment0)	천개	600	1,000
사회 목표와 경쟁력(Social Targets and Competitiveness)				
21	인구증가율 (Population growth rate)	%	10.5	1.0
22	빈곤층 가정 비율 (Proportion of poor households)	%	9.45	2%/year
23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수 (Number of laborers provided with employment)	백만 명	8.1	8.0
24	국민경제의 총 노동시장에 숙련된 노동자들의 비율 (Proportion of trained workers in total labor working in the national economy)	%	40.0	55.0

25	특허등록 비율 (Proportion of patents registered for protection)	%	—	10.0
26	기술 혁신의 비율 (percenta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	—	13.0
환경과 자원 목표(Environment and Resources Targets)				
27	숲의 면적 비율 (Proportion of forest coverage)	%	39.5	42-43

출처: MPI (2011), (OECD 2012a에서 재인용).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무역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새로 수립된 ODA 재원 배분 우선순위 정책 문서에서도 무역을 ODA 우선 배분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을 만큼, AfT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이 점차 무상원조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나, AfT 무역역량강화 등 기술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무역관련 인프라 사업도 관리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는 프로그램 사업의 시도가 필요함을 밝혔다.

제4장. DAC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2장에서 무역정책과 개발정책을 시대별 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이들 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의 입장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과 이와는 상반되게 정부의 개입이나 보호를 옹호하는 무역 및 개발정책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 DAC 공여국들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정책일관성의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DAC 공여국의 무역정책을 정책일관성의 측면에서 무역정책(Non-ODA)과 무역 관련 개발협력정책, 두 레벨로 나누어서 이들 무역정책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정책인지, 공여국 간, 수원국과의 정책 조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정책일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심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무역체제에 대한 비판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DAC 공여국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 도입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은행

1) 무역 및 Aft 정책

2007년 10월 1차 ‘Aft 글로벌 리뷰(Global Aid for Trade Review)’가 진행될 때 당시 세계은행 대표였던 로버트 줄릭은 세계은행이 빈곤감소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의 무역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세계은행은 Aft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⁴⁾

54) World Bank. (2009), pp. 3-4.

- 경쟁력 강화
 - 인센티브 제도, 기관 문제점, 인프라 제약사항 진단을 통해 경쟁력 향상
 - 개도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분 활동 촉진
- 무역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비용 감소 지원
- 도로, 항만, 에너지, 통신 등 무역과 관련된 인프라 공급 확대
- 국경무역(cross-border trade)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촉진
-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의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협력 촉진, AfT 및 무역금융 촉진

이후 2011년에는 무역전반에 관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무역 분야 전략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분야는 ‘무역 경쟁력 및 다변화’ 분야로, 이 분야는 개도국의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 수출시장 확대,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참여 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의 국내시장개혁을 통해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 또는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의 활동을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지원은 포괄적인 경제 인센티브 프레임워크(Economy-wide incentive framework)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무역정책(수입제한 및 외국인직접투자),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위한 서비스무역시장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책 및 규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밖에도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설립 및 활동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민간분야투자를 통한 국내적 수출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무역전략 분야는 ‘무역원활화, 유통, 무역금융’으로 이 분야는 국제공급망과 수송망의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 개도국의 상품의 유통비용을 절감, 수출입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지원은 수입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개도국의 빈곤층의 해당 상품 소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소규모 기업이나 농업 종사자의 경우 비용절감으로 인한 수익이 증대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역비용은 수출업자가 무역금융이나 수출신용 또는 보험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내륙개도국을 무역 촉진을 위한 교역로 개선, 지역 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유통서비스 개선, 국경관리 효율성 개선, 서비스업 종사 인력의 국경 간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에 위한 무역금융 접근성 개선과 상품보증 또는 보험 서비스 제공 개선을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세 번째 지원 분야는 ‘시장접근성 개선 및 국제무역협력’으로, 이 분야는 특정 국가가 무역 활성화를 통한 개발 목표의 달성여부는 시장접근성에 관한 정책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과 같은 일부 무역정책은 개도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세계은행은 보조금 등에 의한 시장왜곡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역정책에서 정책일관성 확보를 통해 국제통상 규범 및 관련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① 선진국의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개도국의 경제성장에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 및 협정 분석 제공, ②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통합 지원, ③ WTO 서비스 협정, 투자협정 등 무역과 관련된 규제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지원이다.

네 번째 지원 분야는 ‘위기 대처 및 포괄적 성장’ 분야다. 세계화와 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빈곤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진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실업과 같은 문제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다른 중점 분야의 무역 전략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해 개도국에 발생하게 될 단기적인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분

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무역의 경우에도 특정 국가에만 무역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국내 상품 유통, 역내 무역 활성화 위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혜택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있다. 이 분야의 지원은 ① 시장개방에 가장 취약한 계층 보호 지원, ② 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해결에 기여, ③ 무역조정 지원에서 여성계층 보호 강화, ④ 수출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에서도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지원 및 무역으로 인한 혜택이 빈곤가정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⁵⁵⁾

[표 12] 세계은행의 무역개발 정책

중점 분야	세부 정책
무역경쟁력 및 다변화	- 개도국의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 수출시장 확대,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참여 기회 제공 지원 - 개도국 국내시장개척을 통해 비공식 경제활동 농가·영세업자·중소기업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전환 지원 -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및 서비스무역시장 개방 및 확대 정책 지원 -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설립 및 활동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환경을 조성 - 민간분야투자를 통한 국내적 수출 제약 요인을 제거 지원 등
무역원활화, 유통, 무역금융	- 개도국의 상품 유통비용을 절감 - 지역 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유통서비스 개선, 국경무역 관리 효율성 개선을 통한 국제공급망과 수송망의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비용 감소 추진 - 서비스업 종사 인력의 국경간 거래 활성화 - 중소기업 무역금융 접근성 개선, 상품보증보험 서비스 제공 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 및 국제무역 협력	- 선진국의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 및 협정 분석 제공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통합 지원 - WTO 서비스 협정, 투자협정 등 무역과 관련된 규제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지원
위기 대처 및 포괄적 성장	- 시장개방에 가장 취약한 계층 보호 지원 - 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해결에 기여 - 무역조정 지원에서 여성계층 보호 강화 -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도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지원 및 무역으로 인한 혜택이 빈곤가정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World Bank. (2011a)

55) World Bank. (2011a), pp. 1-3.

2) 분석 및 평가

(1) 무역 정책일관성

가. 공여기관 내(內) 정책일관성

세계은행은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타(他)공여국의 사례처럼 공여국 내(內)의 무역정책과 무역관련 개발정책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세계은행 내부의 다른 개발정책과의 조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공여국내 정책일관성 비교를 대신하였다.

무역관련 의제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은행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책 간(間)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①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역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FPD 이니셔티브(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itiative)와 같은 산업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②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개발영향평가 이니셔티브(Development Impact Evaluation Initiative, DIME)와 연계, ③ 세계은행의 빈곤감소·경제관리 부서(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PREM), 개발경제 부서(Development Economics, DEC), 농업·농촌개발 부서(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RD) 등의 타부서와 함께 식량가격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 관리와 무역 연계 등의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공여기관 간(間) 정책일관성

세계은행은 AfT 시행방법의 하나로 외부조정 및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다년도 무역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지역별 무역 프로그램 사례 개발, 세계은행그룹의 무역 지원과 조화를 위해 다른 기구와의 무역 조정 위원회 설치, 중요 단체들과 정기적 모임 등 의견 교환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 공여기관, 연구기관, 민간분야 등

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한 무역정책 이행 전략으로 1) 지식공유 플랫폼 활용하여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지원, 2)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와 같은 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원조 조정, 3) 범국가적 무역 데이터 구축 등의 글로벌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비즈니스단체와 협력이 있다.

다. 공여기관-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세계은행은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또는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세계은행의 정책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사이에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베트남 국별협력전략(Vietna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6)’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SEDS 2011-2020과 SEDP 2011-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었다.

[표 13] 세계은행 베트남 CPS와 베트남 SEDS 연계

세계은행 베트남 CPS		베트남 관련 정책
중점분야	성과	
경쟁력 (Competitiveness)	1.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SEDS 목표 1
	1.2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SEDS 목표 5
	1.3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SEDS 목표 3, 4,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2.1 천연자원 관리 개선	SEDS 목표 11
	2.2 환경 보호 강화	SEDS 목표 11
	2.3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비 강화	SEDS 목표 11
기회 (Opportunity)	3.1 빈곤층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증가	SEDS 목표 3
	3.2 기초공공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	SEDS 목표 8, 9

출처: 저자작성

따라서 무역과 개발 정책의 경우, CPS에서 무역부분이 독립 섹터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한 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서 무역개발정책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4] 세계은행 베트남 CPS와 무역과 개발 정책

세계은행 베트남 CPS		세계은행 Aft 증점분야	
증점분야	성과		
경쟁력	1.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무역 경쟁력 미 다변화	무역원활화, 유통, 무역금융
	1.2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1.3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지속가능성	2.1 천연자원 관리 개선	시장접근성 개선 및 국제무역협력	위기 대처 및 포괄적 성장
	2.2 환경 보호 강화		
	2.3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비 강화		
기회	3.1 빈곤층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증가		
	3.2 기초공공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		

출처: 저자작성

(2)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세계은행은 기존의 국제통상 규범 또는 국제무역관련 기구가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무역전략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과 같은 일부 무역정책은 개도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에 의한 시장 왜곡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역정책에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전략문서에서 세계화 및 국제무역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국가 또는 계층에는 무역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세계은행 현재의 무역체제 및 규범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이나 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세계은행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선진국이나 무역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법이 아닌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는 방법

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AfT를 제공하는 세계은행의 설립목적 자체가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하나,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이러한 대처방식으로 개도국을 위한 무역체제 구축이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세계은행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 세계은행은 기관 내 타(他)분야 원조 정책과 AfT 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他)기관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CPS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CPS가 수립되고, 그 안에서 무역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계획 시 AfT 전략을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 AfT 정책이 독립된 섹터(분야)로서 규정되어 정책 및 사업이 수립 또는 시행되는 것이 아닌, 범분야 이슈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 계획 및 수립 시에 정책을 기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세계은행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항목		세 부 내 용
1. 정책	가. 무역 정책 일관성	①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 무역관련 의제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정책과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책 간(間) 일치를 추구 - 남아시아 지역 무역과 일자리 창출 사업 연계 등 -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전략과 정책이 주를 이룸
		②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 외부조정 및 협력을 강조하고, 6개 은행 그룹(Six bank Group), 세계 은행그룹 내 기구 등 다른 기구 및 단체를 통해 정기적 협의 실시
		③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 세계은행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또는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수립 - CPS에서 무역부분을 독립 섹터로 다루지 않고,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택한 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서 AfT정책을 접목

1. 정책	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 기존의 국제통상 규범 또는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등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 - 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고려한 정책 추진
----------	--------------------------------	--

출처: 저자작성

한편, 세계은행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 및 시장 확대 또는 개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산물인 현재의 WTO 다자통상체제가 개도국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는 세계은행의 무역정책은 정책일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역정책이 CPS 수립 시에 무역지원의 독립 분야의 수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점은 한국의 AFT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미국

1) 무역정책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반복된 역사로, 국내외 경제상황, 국내 산업경쟁력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되어 왔다.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하였으나, 1960년대까지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누리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0년 후반 이후부터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무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산업 등이 생겨남에 따라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GATT 협정 가입으로 인해 관세인상이 불가함에 따라 비관세조치를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추진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를 통한

자유무역 압력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을 통한 블록화,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한 개도국의 일방적 시장 개방 압력 강화 등이 진행되었다.⁵⁶⁾

미국은 80년대 이후 공정무역과 동시에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의 레이건 행정부는 자유기업, 자유무역을 내 걸었으나,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자율수출규제, 공정무역 강화 등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친기업적 성향의 부시 대통령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듯 했으나, 실상은 취임하자마자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자동차 통상 압력도 가중되는 등 보호무역 성향도 동시에 드러났으며, 이와 더불어 통상 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법규 이행을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⁵⁷⁾

[글상자 2] 2009년 미국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 규범에 기반한 통상체제를 지원함
 -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약속을 준수
 - WTO DDA 협상의 중요성을 확인하되, 미국의 이해가 불분명한 협상에서의 불균형은 반드시 수정
- 통상정책의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투명성을 개선함
 - 무역조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노동 관련 규정을 포함
 - 통상정책 개발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여,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기존 자문그룹 외의 이해당사자에 더 많은 협의기회를 제공
- 통상정책을 국가적 에너지 및 환경 목표에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함
 - 환경상품과 서비스를 DDA와 다른 통상협상에 포함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정책과 기후문제 골격 상호보완
 - 기후 정책이 무역규범과 일치하고, 무역규범이 환경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 통상마찰 원인 해결을 위해 무역협정을 활용함
 - 관세가 인하될수록 국경 내 조치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중요
 -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규제 등을 포함한 무역 관행 및 정책에 투명성 개선

56) 이 시기의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이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기는 하나, 이 시기에도 동경라운드를 통한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 관련 6개의 다자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 통상 협상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 받는 신속협상권제도(fast track) 도입 등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되었다.

57) 조성대. (2009). pp.1-4.

- 복수 간 협상을 통해 무역원활화, 소비자 상품안전 등을 개선
- 책임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의 FTA 및 BIT를 토대화함
 -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의 FTA 문제를 즉각 대처
 - 기존의 FTA와 BIT의 이행 점검
 - NAFTA 당사국과 개선 방법 연구
 - 이익이 되는 양자 및 지역협정 제안 고려하고, 필요시 의회에 협상권한 요구
-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에게 건실한 파트너로서의 약속 유지
 -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통상정책 촉진
 - 의회의 무역특혜프로그램 검토에 협조 및 동 프로그램 개혁
 - 최빈개도국에 특혜가 효과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고려

출처: 조성대. (2009). pp.10-12.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 증진과 국내기업 보호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는 국내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010년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수출 2배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 공공조달의 경우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⁵⁸⁾ 따라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무역협정 위반 및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늘어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WTO 제소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6] 미국 2010 국가수출전략(NEI)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수출기업 지원	• 향후 18개월 내 수출관련 부처, NEI 증진 방안 마련 • 무역진흥정책조정위원회(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TPCC)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 무역금융규모 연간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확대 • 미국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예산 20% 증액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인력 증원 • 중국, 인도, 브라질지역 수출확대 • 환경, 보건, 바이오테크놀로지 수출상품 육성

58) 미국제품 의무조달조항(Buy American Provision)

해외시장 장벽제거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을 중심으로 비관세 및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
--------------	--

출처: KOTRA. (2012). p. 20.

이밖에도 향후 미국의 통상협정은 2012년 통상정책 아젠다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권역별 경제통합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마무리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⁵⁹⁾

2) Aft 정책

미국정부는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RTA/CB)’를 중심으로 Aft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무역역량강화(Trade Capacity Building, TCB)’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⁶⁰⁾ 한편, 최근 들어 미국정부 및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중심으로 포괄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포괄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역을 통한 성장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와 USAID의 중점 추진 분야인 포괄적 경제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 정책은 사실상 Aft와 추진 목적과 방향, 범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의 Aft와 관련된 정책은 먼저 ‘2010년 개발협력에 대한 대통령 정책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PPD-6는 16개 정부 부처와 청이 참여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작성한 글로벌 개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연구 지침(Presidential Study Directive on U.S. Global Policy)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지침으로 매 4년마다 개정이 될 예정이다. 이 정책에서 미국의 핵심 글로벌 개발 정책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에 집중된 정책(A Policy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Outcomes)’를 선정하고

59) KOTRA. (2012). pp. 19-21.

60) 따라서 본 절에서는 TCB는 Aft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Aft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참고하고 있는 USAID 등의 관련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TCB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TCB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있으며,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제안, AfT를 강조하고 있다.⁶¹⁾

경제성장 및 무역관 관련된 정책의 강조는 ‘4개년외교개발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⁶²⁾ 미국 국무부와 USAID가 2010년 공동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가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위협이 등장했음을 밝히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³⁾ 또한 ‘결과 중심의 개발로 전환 (Transforming Development to Deliver Results)’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우위 분야에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식량 안보(Feed the Future), 보건(Global Health Initiative), 기후 변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인도적 지원’ 등과 더불어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개도국과 미국의 동반 성장이 중요하며, 국제개발협력도 미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⁶⁴⁾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미국의 개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기업활동 촉진, 인프라 및 교육분야 투자 확대, 무역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더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개발협력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7월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Economic Growth, Energy and Environment)을 선임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⁵⁾

한편 USAID도 ‘USAID 정책프레임워크 2011-2015와 USAID 포워드(Forward)’에서 7대 중점 개발 목표(7 Core Development Objectives)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광범위한 경제성장 촉진(Promote Sustainable, Broad-based Economic Growth)’를 선정

61) 이밖에도 ①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적 거버넌스에 집중, ② 새로운 혁신 및 기술을 활용한 장기적 개발 과제 해결, ③ 수원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 ④ 분쟁 후 및 안정화 단계 시 맞춤형 개발 전략 구축 (민간 및 군의 균형), ⑤ 수원국들의 개발 결과에 대한 책무성 부여를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에 집중된 정책의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2011).)

62) 지난 2010년 12월 미국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의 분쟁, 재난 등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관과 개발전문가, 민간전문가들을 결집하여 ‘스마트파워’로 새로운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상 첫 ‘4개년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를 발표했다.

63) 조한솔. (2012a).

64)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0), p. 10.

65)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0), pp. 87-89.

하고, 무역 촉진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⁶⁶⁾

[표 17] USAID 7개 중점 개발 목표 중 Aft 관련 정책

분야	지속가능한 광범위한 경제성장 촉진(Promote Sustainable, Broad-based Economic Growth): 민간부분을 경제성장의 드라이브로 육성
세부 내용	- 교역 역량 강화 (1달러 투자로 34달러 규모의 수출 증대) - 비즈니스 환경 개선 (1달러 투자로 29달러의 규제완화 효과)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2015년 까지 1억명의 초등학생 읽기능력 향상 및 직업능력 향상 - 개발신용제도(Development Credit Authority)를 통해서 민간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1달러의 대출보증을 통해 28달러의 민간자본 유치 가능) -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Growth, PFG)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장애요소 제거 지원 - 영세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 지원 (매년 약 1백만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3/4 이상은 농촌지역 출신 여성임)

출처: USAID. (2011).

이와 관련하여, USAID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 지원을 하여 이들 국가가 고중소득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개발협력 경험을 통해, USAID는 거시 경제 안정성,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 여성 역량 강화, 세계 시장과 지식의 활용 등이 개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비용 분석 및 성장 진단, 영향 평가 등을 활용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인들에게 재무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공동 사업, 신용 보증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 사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포괄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PPD-6 아래의 USAID의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 USAID는 엘살바도르, 필리핀, 가나, 탄자니아 등의 많은 국가가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USAID는 경제 성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중 첫 번째 목표인 MDG 1의 소득

66) USAID 차원의 좀 더 상세한 정책 및 실행 원칙과 전략목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문서로 PPD-6와 QDDR의 대외원조 정책 및 실행 방안을 USAID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 USAID Forward 로 불리는 개혁 아젠다를 이행하며 효과적인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QDDR과 동일하게 매 4년 마다 개정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초등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MDG 2의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USAID는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신용기관(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을 통해 새로운 민간 부문 파트너 참여와 중점분야 사업의 우선순위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춘 신용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USAID의 구체적인 AfT 관련 지원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USAID는 AfT 중 ‘무역역량강화(TCB)’를 핵심항목으로 채택하고, 개도국의 물리적, 인적, 제도적 역량강화를 통한 다자통상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TCB의 구체적인 협력분야에는 WTO 인지와 가맹(WTO awareness and accession), WTO 협정(WTO agreement),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인재 및 노동기준(human resources and labor standard), 금융부문개발(financial sector development), 무역관련 인프라개발(trade-rela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환경(environment),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농업개발(agriculture development), 서비스(services), 거버넌스 및 기관 간 조정(governanc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등이 있다.

USAID의 AfT 정책은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수한 니즈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나, ① 정부 및 민간의 무역협상참여 지원, ② 무역협정의 이행지원, ③ 무역 촉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급자로서의 역량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중점분야로 채택하고 있다.⁶⁷⁾ USAID의 AfT 전략에서 밝히는 AfT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18] USAID AfT 전략 주요 내용

중점분야	세부내용
1. 무역협상 참여 (Participation in Trade Negotiations)	- WTO 가입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국내 정책, 법률, 규제 등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 무역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에 기술지원 제공 - 국제무역협상 참가를 위한 훈련/연수 제공
2. 무역 협정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 관세평가, 수입자격증, 원산지 규정 등 WTO 규정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지원 제공 -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AGOA) 등 여타 특혜무역협정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 지원

67) USAID. (2003), pp. 8-9; WTO/OECD. (2007a).

3. 무역촉진을 위한 경제적 조치 (Economic Responsiveness to Trade Opportunities)	- 교통, 통신, 기타 무역관련 서비스 업종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유도 - 상법 강화 - 은행 및 자본시장 개혁, 무역관련 투자를 촉진시키는 관련 법규 이행 등 금융시장 개선 - 경쟁정책 및 독점금지법 강화 - 산업단지 또는 섹터 지원을 통해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 무역금융, 보험, 광고, 마케팅, 운송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공 - 농업생산력 개선 및 동식물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등 국제사회 규정 준수를 위한 역량강화 - 기업의 국제시장정보 이용 및 분석을 지원하고, 국제기업네트워크와 연계 등을 통한 지역 내 상업 활성화 및 노동인력 개발 - 영세업 및 중소기업 설립 및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	--

출처: USAID. (2003), pp. 8-9;

이밖에도 미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IF)와 관련하여 ‘IF 작업반(Working Group)’ 참가와 IF 신탁기금(trust fund)에 대한 기여금 제공하고 있다.⁶⁸⁾ 또한, WTO의 ‘무역관련 기술협력계획(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Plan)’ 참여 등 다자기구를 통한 AfT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⁹⁾

한편, 지난 2010년 USAID가 시행한 AfT 평가에서, USAID가 제공한 TCB 지원 1달러는 2년 후 개도국의 수출을 42달러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USAID의 TCB 지원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이익 증대, 여성의 빈곤층의 시장 접근성 개선, 새로운 지역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의 전반적인 빈곤감소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TCB 프로젝트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입 관련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이윤을 창출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TCB 프로그램이 여성이나 빈곤층에게 제공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평가 결과, USAID의 TCB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8) 1997년 WTO 주관으로 개최된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DCs' Trade Development, HLM)에서 출범하였고, LDC에 무역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 등이 목적이다. ITC, IMF,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TO,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등 6개 국제기구 참여한다.

69) 최민경. (2008), pp. 115-116.

1. 다양한 분야에서 개입을 하는 것 보다, 분야를 하나로 한정하여 수출지원과 관련된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경우
2. 수출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및 개선을 동시에 제공한 경우
3. 연수, 분석, 기술자문,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합한 패키지형 원조를 제공한 경우
4.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정부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수원국 주도의 개선 정책 등이 실행 된 경우

종합해보면, USAID의 무역원조는 ‘무역관련 인프라 개발’까지 물리적인 역량강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개도국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배경에 부정부패, 분쟁, 급격한 체제이행 등의 열악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개도국의 선정(good governance)을 TCB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⁷⁰⁾ 또한 연수부터 기자재 지원의 통합 또는 교육과 경제분야 지원의 통합 등 패키지형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장 개방, 경쟁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무역을 통한 개도국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글상자 3] USAID 대 아프리카 Aft 사업

USAID는 200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의 지속성유지를 위해 시장개방 및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개혁(trade policy reform)’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무역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아프리카의 시장개방 및 외국인투자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지고용확대 및 소득수준향상,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정책개혁지원의 세부내역에는 무역 및 투자개방 확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조성, 농업생산성 및 거래확대, 천연자원 관리역량 강화, 농촌지역의 수익증대 등이 있다. 특히, USAID는 이러한 세부내역을 미국기업과 아프리카기업간의 사업협력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USAID를 포함한 미국정부의 2006년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역량강화(TCB)’ 지원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49.5% 증가한 약 4억 달러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2007년 미국정부가 사하라이남 TCB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총 16억 달러에 이르며, 2007년도 지원액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억 5백만 달러였다.

70) USAID. (2002);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www.aid4trade.org.

USAID의 AGOA 관련 대표적인 아프리카 Aft 이니셔티브에는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와 '아프리카 기아종식 이니셔티브(Initiative to End Hunger in Africa: IEHA)'가 있다. USAID는 AGCI 기금을 활용하여 가나, 세네갈, 보츠와나, 케냐에서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허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Hubs)'를 운영하고 있다. 이 허브는 아프리카의 지역기구, 미 정부기관, 민간기업, 기타 공여국 및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을 대상으로 무역 및 투자, 지역 내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USAID는 IF 이니셔티브 및 기타 세계은행, WTO, IMF, UNDP 등의 다자기구의 Aft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출처: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최민경. (2008).

3) 분석 및 평가

(1) 무역 정책일관성

가.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미국의 통상정책은 6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다양한 비관세장벽(Non Trade Barriers, NTB)을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USTR이 의회에 제출한 '2009년 미국의 통상정책 의제 및 2008년 미국의 통상 연례보고서'와 2010년 수립된 '국가 수출전략(NE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미국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신자유주의(자유무역) 옹호	비(非)신자유주의(보호무역) 옹호
통상 정책	-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약속을 준수 -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규제 등을 포함한 무역 관행 및 정책에 투명성 개선 - 복수 간 협상을 통해 무역원활화, 소비자 상품안전 등을 개선	- WTO DDA 협상의 중요성을 확인하되, 미국의 이해가 불분명한 협상에서의 불균형은 반드시 수정 - 무역조정지원을 확대하고, FTA에 노동 관련 규정을 포함

통 상 정 책	•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건실한 파트너로서의 약속 유지 -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통상정책 촉진 - 의회의 무역특혜프로그램 검토에 협조 및 프로그램 개혁 - 최빈개도국에 특혜가 효과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고려 - USTR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의 비관세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	• 통상정책을 국가적 에너지 및 환경 목표에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함 - 환경상품과 서비스를 DDA와 다른 통상 협상에 포함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정책과 기후문제 골격 상호보완 - 기후 정책이 무역규범과 일치하고, 무역 규범이 환경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 관세가 인하될수록 국경 내 조치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중요 - 국가수출전략(NEI)에서 2014년까지 수출 2배 증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 - 공공조달의 경우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 도입
Aft 정 책	1. 무역협상 참여 (Participation in Trade Negotiations) - WTO 가입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국내 정책, 법률, 규제 등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 무역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에 기술지원 제공 - 국제무역협상 참가를 위한 훈련/연수 제공 2. 무역 협정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 관세평가, 수입자격증, 원산지 규정 등 WTO 규정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지원 제공 - AGOA 등 여타 특혜무역협정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 지원 3. 무역촉진을 위한 경제적 조치 (Economic Responsiveness to Trade Opportunities) - 교통, 통신, 기타 무역관련 서비스 업종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유도 - 상법 강화 - 은행 및 자본시장 개혁, 무역관련 투자를 촉진시키는 관련 법규 이행 등 금융시장 개선 - 경쟁정책 및 독점금지법 강화 - 산업단지 또는 섹터 지원을 통해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AfT 정책	- 무역금융, 보험, 광고, 마케팅, 운송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공 - 농업생산력 개선 및 SPS 등 국제사회 규정 준수를 위한 역량강화 - 기업의 국제시장정보 이용 및 분석을 지원하고, 국제기업네트워크와 연계 등을 통한 지역 내 상업 활성화 및 노동인력 개발 - 영세업 및 중소기업 설립 및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	--	--

출처: 저자작성

종합해보면, 미국의 통상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취약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보호조치 도입, 경쟁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의 색채를 띤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AfT 정책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만 이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도국 지원에 관한 통상정책이 있지만, 2010년 국가수출전략(NEI)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의 진출을 목표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상당히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있으며, 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나.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미국은 국별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을 수립함에 있어 공동협의과정의 이용 및 공동분석 실시가 정례화 되어 있다.⁷¹⁾ 이 협의 과정이 AfT만을 위한 협의체는 아니지만, 각 국별원조계획 수립 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AfT 관련 논의 역시 기존의 공여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71)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www.aid4trade.org.; 최민경. (2008), p. 84.

다.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미국은 개도국 내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전략에 AfT를 주류화(mainstreaming)하여 반영하는 것은 개도국 주도의 명확하고 전략적인 원조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⁷²⁾ 또한 미국은 70개 이상의 현지 및 지역사무소를 통해 개도국 이해관계자와의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은 매년 차관레벨의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 및 지역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⁷³⁾

이러한 내용은 USAID 베트남 사무소 현지조사 결과와 USAID의 정책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USAID는 국별전략 수립 시 수원국의 개발계획, 미국부의 원조 정책, 대통령 이니셔티브, USAID의 분야별 정책·전략 등을 고려하여 CDCS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CDCD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USAID는 현재 베트남 CDCS를 수립 중에 있는데, 곧 발표될 USAID의 베트남 CDCS도 베트남의 SEDS, SEDP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세워진 중점지원 분야의 하부로 AfT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계획되게 된다고 하며, AfT가 하나의 섹터로 CDCS에 반영, 수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무역진흥(trade facilitation) 등 AfT 분야가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있어 우선순위로 채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IADB의 경우 개발상국과의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개발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⁷⁴⁾

(2)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USAID는 개도국의 WTO 가입을 위한 국내 개혁 등의 준비 지원 사업, 양자협정 체결 및 협상을 위한 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개도국이 국제무역체제로의

72) UNCTAD. (2004).

73)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www.aid4trade.org.

74) 최민경. (2008), p. 82.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있다. 또한 AfT 사업 중 생산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빈곤 감소 프로그램등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영세농의 소득증가 프로그램에서 생 산품의 수출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USAID 의 경우 개도국을 위해 기존의 무역체제가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지금의 무역 체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4) 소결

미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분석 결과 미국 은 국가 내 무역(통상)정책과 AfT 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 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CDCS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 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CDCS가 수립되고, 그 안에서 무역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 이나 프로그램 계획 시 AfT 정책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 미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항목		세 부 내 용
1. 정책	가. 무역 정책 일관성	①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 표면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취약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도입, 경쟁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보호무역의 색채를 띤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AfT 정책은 개도국의 WTO 가입 지원,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전략과 정책이 주를 이룸. - 통상정책과 무역관련 개발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 국별개발협력전략(CDCS) 수립 시 다른 공여국과의 정기적 협의 실시
		③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 USAID의 CDC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또는 전략에 연계되어 수립 - CDCS에서 무역부문을 독립 섹터로 다루지 않고,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한 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서 AfT정책을 접목

1. 정책	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 개도국의 WTO 가입 지원, 무역촉진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무역체제에서 소외된 국가와 계층의 무역체제 편입 지원 - 개도국을 위해 기존의 무역체제가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지금의 무역체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의 수동적인 정책을 추진
-------	--------------------	--

출처: 저자작성

한편, 미국은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체제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도국을 현재 무역체제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등의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나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수준은 미흡한 반면, 공여국 간(間),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극적인 방법이나마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Aft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무역정책이 CDCS 수립 시에 무역지원의 독립 분야의 수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점은 한국의 Aft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일본

1) 무역정책

1990년대까지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⁷⁵⁾ 이 시기 일본의 통상정책이 다자간 협상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일본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의 이중성으로 인해, 일본 통상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내 취약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⁷⁶⁾ 일본의 금융서비스, 농수산업 분야 등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

75) 이밖에도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부 산업 및 품목을 대상으로 2국간 통상협상을 체결하였다.

76) 일본은 공업부문에서는 부품, 소재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 건설, 유통, 금융서비스 등의 서비스산업과 농수산업 등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국제 경쟁으로부터 격리되어 정치·관료 집단과의 관계구축을 통해 지금까지 보호받아 왔다.

는 도하라운드 등 WTO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이 부진하면서, 이 다자간 협상의 진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⁷⁷⁾

한편, 200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통상정책은 이전의 다자간 협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간(Regional) 혹은 양국 간(Bilateral) 협상을 활용하는 중층적 통상정책(Three Track Approach)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⁷⁸⁾ 이후 2002년 싱가포르와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을 시작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해왔다.⁷⁹⁾ 이 시기에는 2004년에 발표된 「EPA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FTA 체결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FTA 정책은 지난 2010년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에서의 TPP 참여를 통한 높은 수준의 EPA와 국내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FTA 정책이 전환되었다.⁸⁰⁾ 일본은 자국 FTA 정책의 목표를 ① WTO 체제의 보완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및 경제이익 확보, ②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 촉진 및 국제적인 룰 개정에 주도적 참가, ③ 정치·외교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⁸¹⁾

일본의 FTA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FTA가 상품무역에 관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나 지적재산권, 서비스무역 자유화, 인적교류,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EPA를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상품무역·투자·서비스 자유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한 규범의 조화, 인적 교류의 확대, 상대국의 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경제연대를 통해 상대국과의 연대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의 기반 형성을 중시하는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FTA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²⁾ 특히 이러한 포괄적

77) 김봉길. (2011), p. 44.

78) 일본은 2000년까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지역무역협정(RTA)에 한 건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였다.

79)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으로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한다. (지식경제용어사전, 지식경제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80)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은 1) 전 품목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EPA 추구, 2) TPP 참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여건 조성, 3) 이를 위한 농업·규제개혁 등의 국내개혁의 선행적 추진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81) 김봉길. (2011), pp. 61-66.

82) 外務省經濟局. (2008). (김봉길. (2011), pp. 41-42에서 재인용).

인 EPA가 개도국과 체결될 경우, 일본과 개도국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무역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성장과 개도국 인재육성 및 경제제도정비의 효과가 발생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개도국과 EPA 체결 시 관세 및 수출입 시의 수량제한 철폐 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인력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경쟁정책 분야의 국내법제도의 구축지원 등의 투자환경정비와 IT,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 ODA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⁸³⁾

[글상자 4] 일본의 EPA와 ODA 연계 사례

1. 일본-말레이시아 EPA

일본은 2006월 7월 말레이시아와 EPA를 체결하고, 농림수산업, 교육 및 인재육성, IT, 중소기업 등 7대 분야를 무역투자관련 역량강화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학생이 일본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하여 일본의 이공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차관기금계획(HELPⅢ)’과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인재육성지원, 목재 산업의 국가품질보증 시스템구축 지원을 ODA로 실시하고 있다.

2. 일본-태국 EPA

태국과 2007년 11월에 체결한 EPA가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업, 교육 및 인재육성,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9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고 ODA를 활용하여 상기 분야의 인재육성 및 제도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우선 육성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일본과 태국의 정부와 기업이 연수실시체제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는 프로젝트 전체의 운영관리 및 기자재 제공, 정부자문을 위한 전문가파견 외에도 현지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태국 지도자육성과 기술검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최민경. (2008). p.150.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농산물 등 자유화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상 분야를 넓혀 자유화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⁸⁴⁾ 실제로 일본의 FTA는 관세 인하의 측면에서 자유화 수준이 타국가의 FTA에

83) 최민경. (2008), p. 150

84) 김봉길. (2011)에서도 일본정부의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김봉길. (2011), p. 41.)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무역금액 기준으로는 멕시코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90%를 넘으나, 관세분류품목기준(HS8-9자리)으로 보면 일본의 자유화 수준은 모든 상대국보다도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FTA 체결의 경우 선진국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일본의 경우 상대국보다도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⁸⁵⁾ 이렇듯 일본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농림수산업분야에서 예외품목이 많기 때문인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밀, 설탕 등이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등도 예외품목 및 재협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⁸⁶⁾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분야가 EPA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취급을 받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일본의 EP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역내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GATT 제24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⁷⁾

한편, 일본은 농업분야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보상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는 2009년 도입된 호별소득보상정책이 있다.⁸⁸⁾ 이 정책은 2011년부터 확대, 실시되어 쌀 이외에도 보리, 콩, 원료용 감자, 메밀 등 발작물에도 도입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FTA 추진을 당 정책으로 내걸어, 농업의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농가에 대해 직접 소득보상을 함으로써 미국 등과 FTA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무역관련 조정정책의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⁸⁹⁾ 그러나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제도적으로는 직접 지불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거의 평균적 생산비를 보증가적으로 하여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한다는 점에서 WTO 금지 가격정책(Yellow Policy)인 부족금액에 대한 지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⁹⁰⁾

85) 김봉길(2011)은 2011년 11월까지 체결된 FTA를 기준으로 베트남과 브루나이와 체결된 FTA를 제외하고는 상대국보다 일본의 자유화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길, (2011), p. 44.)

86) 반면, 광공업의 경우 거의 전 품목의 관세율이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87) 그러나 이러한 GAT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국가들이 일부 상품의 관세 철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88) 호별소득보상정책은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생산수량목표」에 입각해 생산을 행하는 농가에 대해 생산에 필요한 비용(전국평균)과 판매가격(전국평균)의 차액을 기본으로 교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89) 김봉길, (2011), p. 76.

90) 김봉길, (2011), pp. 82-85.

[표 21]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항목		세 부 내 용
상황 인식		- 신흥국 부상, 일본경제력의 추세적 저하, DDA타결 부진, 주요국간 FTA확대 등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지체되고 있어 성장기반 재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목표		농산품 등 민감품목을 배려하되,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며 동시에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개혁을 선행해 나감.
세부 목표		- WTO체제 보안을 통해 대외경제 관계 발전 및 경제이익 확보(일본의 대외경제 관계의 발전/경제적 이익의 확보에 기여) • 원산지규정 등 상품무역 관련 규범에서 일본형 확립 • 투자, 지적권,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경쟁정책 등 다자규범이 미 확립된 분야에서 일본형 확립 시도 • 자국기업의 해외활동지원 위한 상대국 법제도 개선에 주력 -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 추진 • 상대가 주로 개도국이며 농산물 시장 보호기조를 유지 하여 일본에 대한 구조개혁 효과 미진 - 정치외교 전략상 일본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 • ASEAN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영향력 증대 및 중국 견제.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
EPA 추진 대상	아태지역	- 아태지역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2국간 EPA 추진 - TPP 참가여부에 대한 협의 개시 - 페루, 호주와의 협상타결 - 한·일 AFT협상재개 노력 가속화 -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일·몽골 EPA협상 조속 추진
	아태지역 외 주요국	- EU와의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조정 가속화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와의 협상 촉진
	기타지역	- 신흥국, 자원국 등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경제·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종합적 판단
국내 대책	농업	-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 설치, 2011년 6월까지 기본방침 결정, 이를 위해 자원 및 중장기 행동계획을 2011년 10월까지 책정
	인적이동	- 「신성장전략」의 고용·인재 전략을 토대로 인적이동에 대한 기본방침을 2011년 6월까지 수립 - 규제개혁행정쇄신회의가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2011년 3월까지 수립
	규제개혁	- 행정쇄신회의가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2011년 3월까지 수립.

출처: 김봉기. (2011), p. 65, 67.

2) AFT 정책

일본은 자국의 ODA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이끌어 냈다는 자체적 평가 아래, 무역 및 투자, 인프라정비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지향형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⁹¹⁾ 일본은 ‘개발원조헌장(ODA Charter, 2003년 개정)’⁹²⁾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중점 과제⁹³⁾의 하나로 선정하고, 여기에서 무역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⁹⁴⁾ 더 나아가 2005년 2월 개정된 ‘중장기 ODA 정책(Medium-Term ODA Policy)’에서 중점 과제로 채택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접근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역을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 for Trade)’를 도입하여 AfT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규정하고 있다.⁹⁵⁾

일본의 AfT 정책 및 지원은 크게 ①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지원, ②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③ 역량강화(인적자원 개발) 지원, ④ 경제협력 강화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지원을 통한 AfT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경제·사회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개도국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해 개도국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ODA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사회 인프라 제공을 위해 차관 제공을 포함한 유무상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무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항만, 공항건설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역과 국가 간·지역 간 무역 및 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역관련 ODA로 구분하고 있다.⁹⁶⁾

91) JICA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3). (최민경. (2008), p. 147에서 재인용)

92) The ODA Charter (approved by Cabinet decision in August 2003). 전문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p. 196-201 참조.

93) 일본의 ‘개발원조헌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growth)’을 포함하여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글로벌 이슈 해결(addressing global issues)’,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94) 1980년대 후반에 책정된 ‘신아시아산업개발계획(New Asian Industries Development(AID) Plan)’과 1990년대의 ‘정부개발원조 헌장(1992)’ 및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1999)’에는 ODA와 민간의 직접투자, 무역의 유기적인 연계가 개도국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최민경. (2008), p. 147.)

95) Japan's Medium 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bruary 4, 2005. 전문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p. 202-214 참조.

9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 66.

일본의 중장기 ODA정책에서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경제·사회 인프라 제공을 위한 ODA를 제공하여 다음의 인프라 시설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
 - 도로, 항구와 같은 기타 교통 관련 인프라
 - 발전소, 송전시설, 석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 정보통신 및 IT 관련 인프라
 - 기타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인프라
- 인프라 개발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인프라 개발을 위해 차관 제공 등의 유·무상 원조 제공 및 개도국의 부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
- 관련 분야 정책대화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동시에 지원하여 인프라의 지속적이며 적합한 관리를 추구
- 국제공공재에 해당하는 인프라의 경우 지역적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ODA를 제공해야 함.
- ODA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자금과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등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PPP를 촉진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인프라 지원과 함께 정책 및 제도수립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 투자, 환경, 법률체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개도국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및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관세제도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입안, 투명성 개선을 위한 투자관련 법안 수립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⁹⁷⁾ 이밖에도 일본은 민간분야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 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분야 지원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 19.

- 민간분야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지원
- 개도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금융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공공부채 관리 등을 지원
-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산업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지원
- 농촌 및 지역개발 정책 지원
- 경제개발, 재정, 세금, 관세 등에 관련된 제도 수립 및 인력개발 지원
- 개도국의 지역산업 및 육성산업 개발 지원
-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특화된 내용의 지원 제공을 통해 적절한 정책 및 제도, 법률체제 수립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개도국의 경제 상황과 국제경제규범에 고려한 관련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지원 (예시: 정부조달관련 규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패 척결, 공공행정 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지역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법률제도 개선 지원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개도국의 WTO체제 참가를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본정부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APEC지역 개도국의 WTO 의무이행 역량구축프로그램(전략적 APEC 계획)의 작성을 제안하여, 같은 해 APEC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JICA는 2002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4개국을 대상으로 개발조사 ‘APEC 지역 WTO 역량강화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⁹⁸⁾ 일본의 중장기 ODA정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인적자원 개발) 지원 이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 일본의 경제개발 경험을 살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 기술 과학 관련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
- 개도국의 기초 교육, 고등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을 위한 지원 및 일본의 고등

98) 최민경. (2008), p. 148.

교육기관에서 교육 제공

- 중소기업, 정보통신 등의 산업 개발과 과학기술 전파를 위한 전문가 파견

경제협력 강화 지원을 통한 AfT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민간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 마련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EPA 체결 추진 또는 완료한 국가의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과 관련된 법률체제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세관 및 출입국 관리의 개선 및 강화, 정보통신, 과학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산업, 농업,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5월의 제4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he Four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IV)와 7월에 개최된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담에서는 대 아프리카 원조지원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 AfT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아프리카산품의 마케팅지원, 최빈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확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빈곤감소 노력촉구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은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요청을 수용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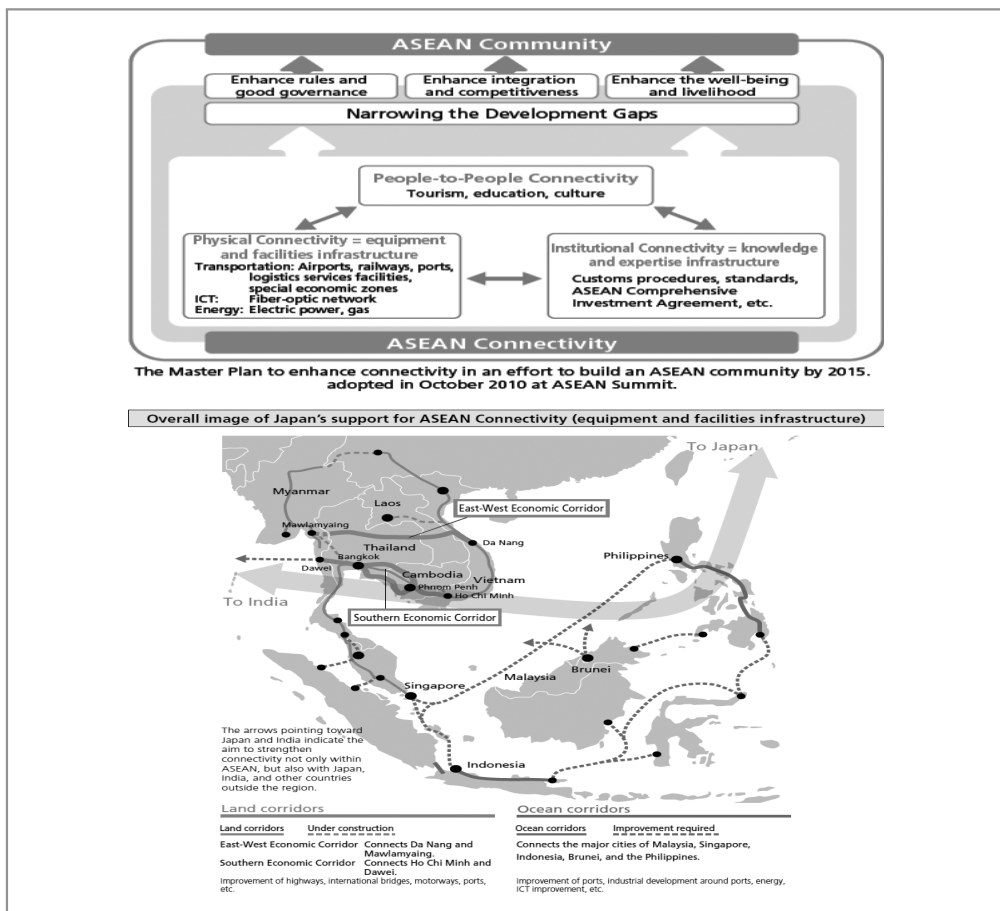
[글상자 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AfT

일본은 대 아프리카 민간투자촉진 및 무역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4년 아시아-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한 뒤 매년 아시아·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05년 코이즈미 총리(당시)가 ‘개발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빈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수입대상 품목제한 금지(無税無枠)’를 발표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대상품목이 관세베이스 약 98%, 최빈국 수입금액 베이스 약 99%까지 확대되었다. 결과 같은 해 4월-12월의 무관세 및 쿼터면제 농산물의 수입금액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43.4% 증가하였고, 전체 품목(원유 제외)에 있어서도 최빈국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1.3% 증가하였다.⁹⁹⁾ 이러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원조실시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¹⁰⁰⁾ 신 프로그램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조유자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JICA는 민간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최민경. (2008), pp. 148-149.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AFT와 관련하여 아세안을 통한 역내무역 활성화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¹⁰¹⁾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일본 ASEAN 정상회의(Japan ASEAN Summit)에서 ‘ASEAN 연결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ASEAN 연결 마스터플랜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 19, 20.

99) 2008년 2월 27일-29일, 레소토(Lesotho) WTO/LDCs 각료회의 요코다(横田)대사 성명서 참조

100) 2008년 10월 1일자로 JICA와 JBIC은 신(新)JICA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0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한편 JICA의 AfT도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실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정비, 법제도 정비, 산업인재육성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개발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아시아와 APEC지역을 중심으로 AfT가 실시되어 왔다. JICA의 AfT 개발전략목표는 크게 ①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②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③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뉜다.¹⁰²⁾

[표 22] JICA의 AfT 전략 주요 내용

목표	세 부 내 용
목표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 중간목표 1-1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초조건 정비 - 법제도 및 경제인프라, 국내산업의 사업환경 등을 정비함. ■ 중간목표 1-2 WTO 등의 국제적인 무역 및 투자규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WTO 등의 국제적인 규율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상정책 수립, 국내법제도 정비, WTO체제에 부합한 정책 및 제도운용, WTO의 진전에 따른 조직정비 및 인재육성
목표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 중간목표 2-1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적절한 운용을 위한 체제정비 - 관세 및 수출입관련 제도개혁 지원 등 ■ 중간목표 2-2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확충 - (1) 해외시장정보, 해외의 무역제도 및 절차, 상업습관 등의 정보제공, (2) 통상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수출진흥책 및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중간목표 2-3 활력 있는 민간부분 육성 - 중소기업 및 하청산업 육성, 농업개발의 틀 가운데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
목표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 중간목표 3-1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적절한 운용을 위한 체제정비 ■ 중간목표 3-2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확충

출처: 최민경. (2008), p. 151 재인용

[글상자 6] 일본의 AfT 관련 주요 노력

- ODA와 OOF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중소기업 육성, 일본의 산업기술 및 경제발전 정책 등을 전수하기 위한 지원 제공
- 개도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수출역량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102) 최민경. (2008), pp. 150-151.

- WTO 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활동 지원
- WTO의 Aft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DDA 이후 기술협력의 계획실시를 위한 도하개발 아젠다신탁기금(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DDA GTF)에 약 4억 8천만 엔을 출연
- 양자 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는 약 1,600건의 프로젝트를 실시
- WTO에 신탁기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도국의 WTO 협정 가입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
- 개도국이 수출하는 제춤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국시장 수출 및 진출 지원
- 2011년 11월부터 최빈국의 100% 면세 무쿼터 진입(Duty Free Quota Free Access)을 위한 장치를 도입, EPA 체결 등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 및 투자 시장 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
- Aft 활성화 방안으로 ‘무역을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 (Development Initiative for Trade) 2009’를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무역관련 프로젝트에 지원
- 40,000명의 전문가 파견 및 일본으로 유학생 지원 등 기술협력
- 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만, 도로, 교각 등의 교통시스템 구축과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 ‘1 마을, 1 생산품 캠페인(One Village, One Product Campaign)’라는 구호 아래 개도국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특정상품 등에 특화된 소규모 생산그룹 또는 소규모업체 설립하는 캠페인 지원
- ‘무역을 위한 원조 아태 지역기술그룹(Regional Technical Group on Aid for Trade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활동하며 아시아지역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지원
- 2011년 7월에 개최된 ‘제3차 Aft 글로벌 리뷰(Aid for Trade Global Review Meeting)’에서 일본의 성공적인 Aft 사업 시행 경험 공유

3) 분석 및 평가

(1) 무역 정책일관성

가.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일본의 무역(통상)정책과 Aft정책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非)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인 성격을 갖은 정책과 보호무역의 성격을 갖은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일본은 상품무역·투자·서비스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루는 EPA를 통해 개도국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및 지원을 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의 EPA는 관세 철폐율 등이 낮고, 보호하는 상품 수가 많은 개방수준이 낮은 EPA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EPA를 자국의 기업 진출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일본의 EPA 체결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업보조금 지급, EPA 체결 시 미개방 상품 시장 또는 관세 철폐율이 낮은 점 등은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통상정책도 다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23] 일본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신자유주의(자유무역) 옹호	비(非)신자유주의(보호무역) 옹호
무역 정책	-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 촉진 및 국제적인 룰 개정에 주도적 참가 - 상품무역·투자·서비스 자유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한 규범의 조화, 인적교류의 확대, 상대국의 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경제연대를 통해 상대국과의 연대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의 기반 형성 - 개도국의 무역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성장과 개도국 인재육성 및 경제제도정비의 효과가 발생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 - 인력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경쟁정책 분야의 국내법제도의 구축지원 등의 투자환경정비와 IT,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 ODA를 통해 지원	- WTO 체제의 보완을 통한 대외경제 관계의 발전 및 경제이익 확보 - 정치·외교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일본 FTA는 관세 인하의 측면에서 자유화 수준이 타국가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농림수산업분야에서 예외품목이 많음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밀, 설탕 등이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등도 예외품목 및 재협상 품목으로 지정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농업분야 보상정책(호별소득보상정책)
Aft 정책	- 민간분야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지원 - 개도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금융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공공부채 관리 등을 지원 -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산업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지원 -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특화된 내용의 지원 제공을 통해 적절한 정책 및 제도, 법률체제 수립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개도국의 기초 교육, 고등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을 위한 지원 및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제공

AFT 정책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개도국의 경제 상황과 국제경제규범에 고려한 관련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지원 (예시: 정부조달관련 규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패 척결, 공공행정 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지역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법률제도 개선 지원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원 • WTO 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활동 지원 • WTO에 신탁기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도국의 WTO 협정 가입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	
-----------	--	--

출처: 저자작성

한편, AFT 정책의 경우 WTO 대응력 지원,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등의 지원은 자유무역 체제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및 지원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무역정책과 AFT 정책은 정책의 방향성 면에서는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EPA 정책을 수립할 때,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정책에서도 통상분야의 접근과 원조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ODA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EPA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일본도 국별원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동협약과정의 이용 및 공동분석이 정례화되어 있다. 또한 개발대상국의 추진현황 및 발전단계에 입각한 지원, 국제기관 등의 추진현황 및 지역협정 등의 내용과의 조화, 안건 형성 시 협력대상국이 차기 가맹예정 또는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조직, 지역협정 내용 등의 파악 및 고려, 타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원조협조,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 강화, 국내 JETRO 및 일본해외무역개발협회(Japan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JODC) 등 관련기관과의 현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일본 국내 관련기관과의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⁰³⁾ 다만 위의 협의과정이나 협의체 등이 AfT 논의만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협의체는 아니나, 필요 시 위의 설명된 기존의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AfT 사업 역시 공여국 간 조율이 가능함을 밝혔다.

다.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JICA는 AfT 사업 시행 시, 국가개발전략·PRSP와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며, 협력안건 형성 시, 개발대상국의 국가전략 가운데 무역 및 투자문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개도국의 개발 및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아래 협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JICA는 베트남 국별협력전략 수립 및 사업 계획 시에도 베트남 정부의 전략과 요청을 먼저 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국별협력전략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JICA는 베트남에서 JICA 3대 분야 중 하나인 경제성장 중에서도 베트남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세관역량강화, 세관시스템 개선, 공산품의 국제수출기준 부합을 위한 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일본 정부와 JICA의 AfT 정책 중에는 개도국 친화적 무역을 위해 지금의 무역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JICA는 개도국의 WTO 가입을 위한 국내 개혁 등의 준비 지원 사업, 양자협정 체결 및 협상을 위한 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개도국이 국제무역체제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¹⁰⁴⁾

103)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JAPAN;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JAPAN.; 최민경. (2008), p. 84, 151.

10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4) 소결

일본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분석 결과 일본은 국가 내 무역(통상)정책과 Aft 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신자유주의적·비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방향성 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정책일관성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PA 무역정책 내에서 ODA의 역할 분담이 포함되어 정책이 수립되는 등의 점은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국가협력계획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협력계획이 수립되고, 그 안에서 무역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계획 시 무역개발 정책 방향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일본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항목		세 부 내 용
1. 정책	가. 무역정책 일관성	①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 무역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比)신자유주의적 정책 모두를 보유하고 있음. - 반면, Aft 정책은 개도국의 WTO 가입 지원,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전략과 정책이 주를 이룸. -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통상정책과 무역관련 개발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ODA와 관련된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EPA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②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 국별협력전략 수립 시 다른 공여국과의 협의 실시 ③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 국가협력계획은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또는 전략에 연계되어 수립 - 국가협력계획에 무역부분을 독립 섹터로 다루지 않고,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한 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서 무역개발정책을 접목
	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 개도국의 WTO 가입 지원, 무역촉진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무역체제에서 소외된 국가와 계층의 무역체제 편입 지원

출처: 저자작성

한편, 일본은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체제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도국을 현재 무역체제로의 편입시키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은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수준은 조금 미흡한 반면, 공여국 간(間),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극적인 방법이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국가협력계획 수립 시에 무역지원이 독립 분야의 수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선정된 중점분야의 하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기획 시 AfT 정책이 활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은 한국의 AfT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사점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의 무역정책과 AfT 정책은 정책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은 그 효과와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범분야 이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친화적 AfT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내 무역정책과 AfT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이 용이한 상품인데,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통상정책과 AfT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농산물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도입하고, 긴급관세 조치 등의 보호무역 성격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개도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치이다.

이밖에도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fT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現) 무역체제 중 개도국에 불리한 규정이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여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을 위해 기존의 무역체제를 개편하거나 WTO 규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선진공여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철폐하여 무역정책과 AfT 정

책 간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각국의 행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등의 행정부의 리더는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게 되므로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산업이나 지역의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내정치상의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것이다. 개도국 친화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무역체제나 WTO 규정을 개정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실행이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또는 AfT 시행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무역체제 내에서도 AfT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세계은행, 미국, 일본의 AfT 사업 수행방식 등을 살펴보고, AfT 효과성 제고 통한 개도국 친화적 AfT 수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5장. DAC 공여국의 AfT 사업수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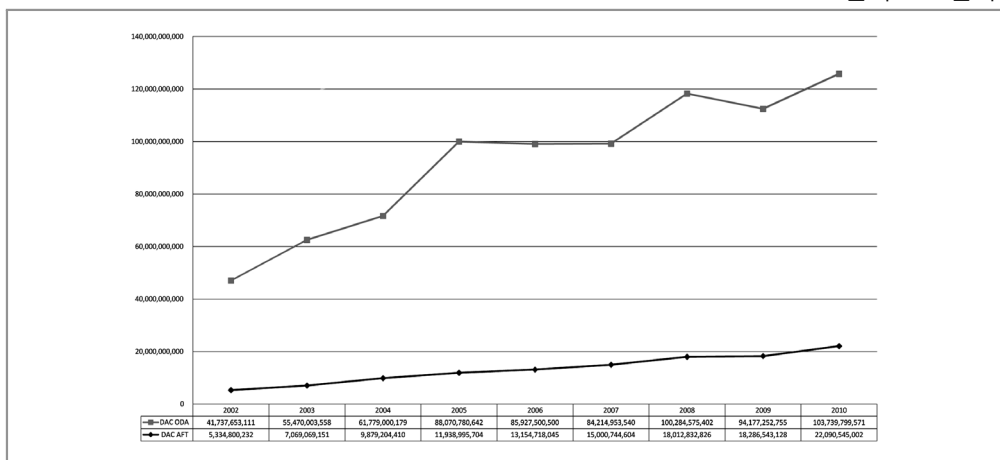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AfT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DAC 공여국의 사업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이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DAC 공여국의 AfT 사업 현황

DAC 공여국의 AfT 지원현황은 [표 25]와 같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 DAC 공여국은 AfT에 약 221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2년에는 DAC 전체 ODA 지원액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율이 12.8%였던 점을 감안하면 AfT 지원액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DAC 공여국의 AfT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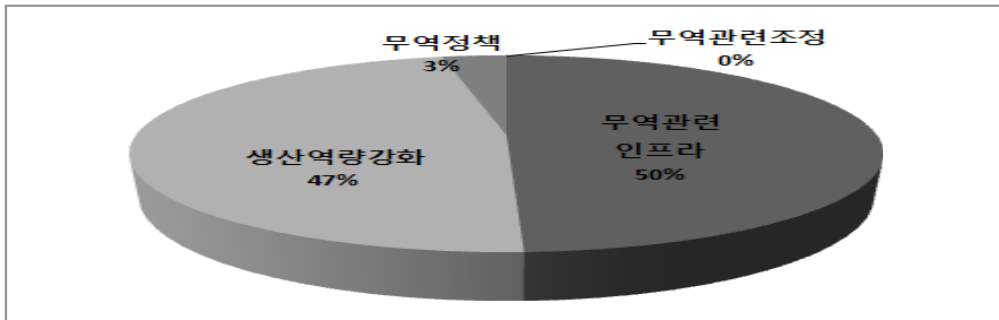
(단위: US 달러)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표 26] DAC 공여국 전체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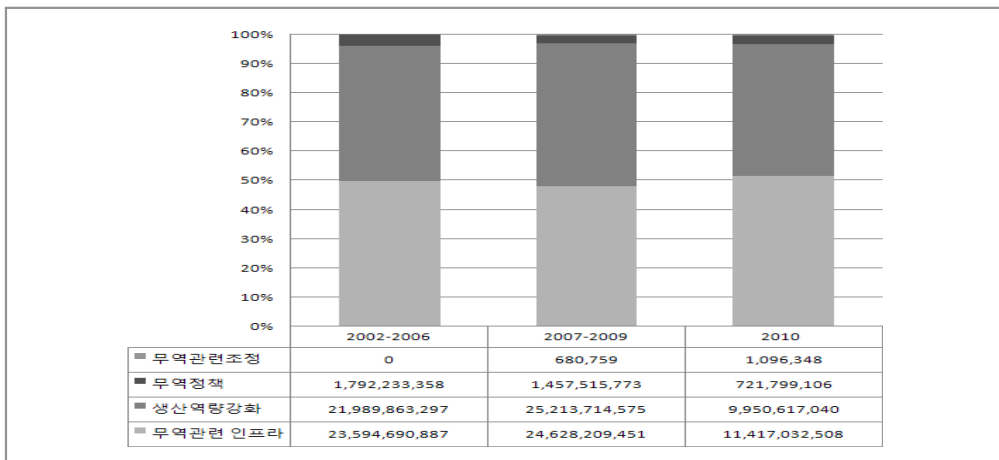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에 지원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관련 인프라에 50%가 지원되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역량 강화에 47%,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에 3%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또한 시기별 AfT 지원 현황 역시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두 분야에 대부분의 AfT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27] 참조).

[표 27] DAC 공여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단위: US 달러, %)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한편, DAC 공여국 전체의 대(對)베트남 AfT 지원액의 경우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AfT 지원 비율은 약 4% 정도로 전체 개도국 AfT 지원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DAC 공여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단위: US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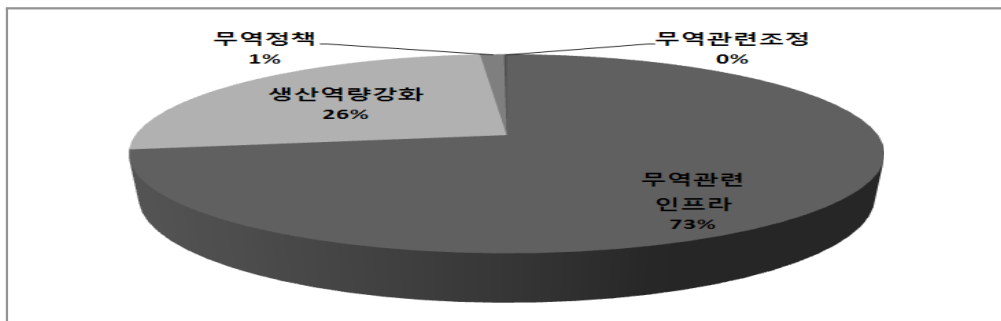
	전체			대베트남		
	AfT	ODA	AfT %	AfT	ODA	AfT %
2002	5,334,800,232	41,737,653,111	12.8%	122,418,797	5,334,800,232	2.3%
2003	7,069,069,151	55,470,003,558	12.7%	275,971,420	7,069,069,151	3.9%
2004	9,879,204,410	61,779,000,179	16.0%	393,681,405	9,879,204,410	4.0%
2005	11,938,995,704	88,070,780,642	13.6%	557,675,509	11,938,995,704	4.7%
2006	13,154,718,045	85,927,500,500	15.3%	567,158,992	13,154,718,045	4.3%
2007	15,000,744,604	84,214,953,540	17.8%	735,981,625	15,000,744,604	4.9%
2008	18,012,832,826	100,284,575,402	18.0%	857,644,282	18,012,832,826	4.8%
2009	18,286,543,128	94,177,252,755	19.4%	862,185,403	18,286,543,128	4.7%
2010	22,090,545,002	103,739,799,571	21.3%	1,088,430,326	22,090,545,002	4.9%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비율도 전체 개도국 AfT 분야별 지원에서와는 다르게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된 비율(약 73%)이 높게 확인되었다.

[표 29] DAC 공여국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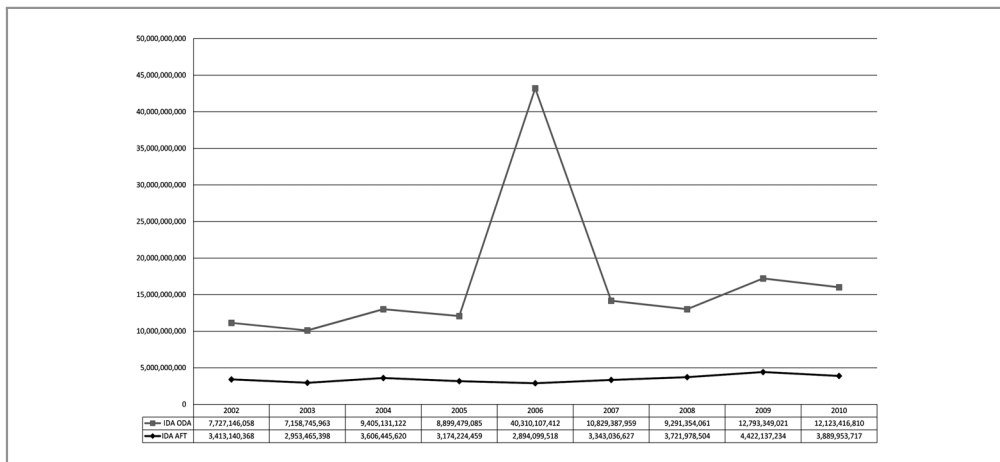
2. 세계은행

1) AfT 현황

세계은행의 AfT 지원현황은 [표 30]과 같다.¹⁰⁵⁾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 세계은행은 AfT에 약 39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의 3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AfT 지원 비율이 30~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⁰⁶⁾

[표 30] 세계은행(IDA) 공여국의 AfT 지원 현황

(단위: US 달러)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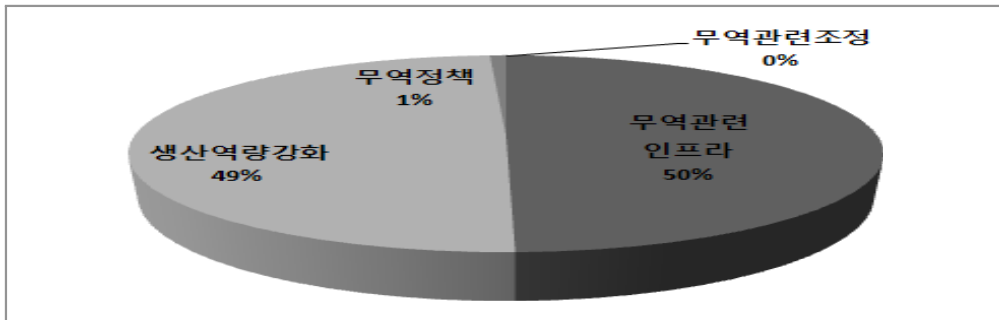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 역량 강화에 지원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관련 인프라에 50%가 지원되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역량 강화에 47%,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에 3%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5) 세계은행에서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IBRD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이다.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AfT의 경우 OECD CRS의 통계에서 IDA만 실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서의 세계은행의 AfT 통계는 IDA의 통계수치임을 밝혀둔다.

106) 2006년에는 세계은행이 이라크 부채탕감을 시행함에 따라, 다른 연도에 비해 전체 ODA 제공금액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참조). 또한 시기별로 AfT 지원 역시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두 분야에 대부분의 AfT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32] 참조).

[표 31] 세계은행(IDA)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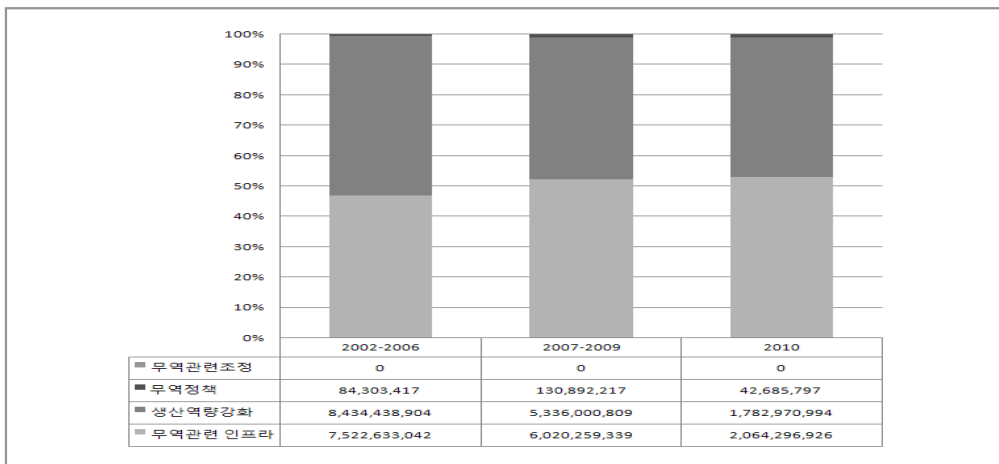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표 32] 세계은행(IDA)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단위: 달러, %)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한편, 세계은행의 전체의 대(對)베트남 AfT 지원액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AfT 지원 비율은 전체 개도국 AfT 지원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33] 참조). 그러나 세계은행의 전

체 개도국 AfT 지원 비율은 2002년(44.2%) 보다 오히려 2010년에(32.1%) 낮아졌으나, 대(對)베트남 AfT의 경우 2010년에는 2002년에 비해 AfT 지원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세계은행(IDA)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단위: US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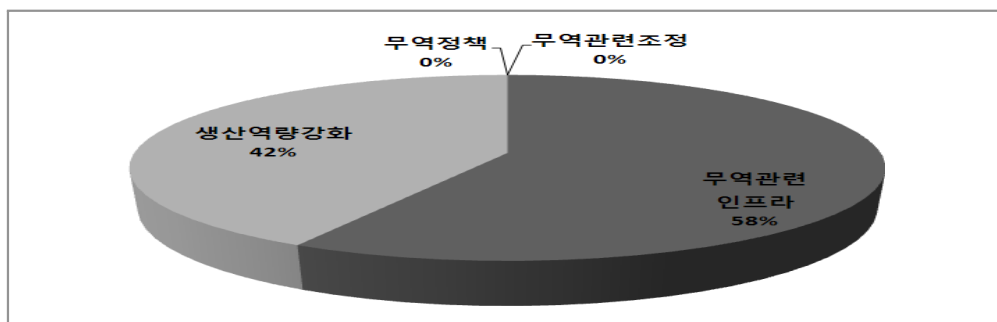
	전체			대베트남		
	AFT	ODA	AFT %	AFT	ODA	AFT %
2002	3,413,140,368	7,727,146,058	44.2%	192,715,209	3,413,140,368	5.6%
2003	2,953,465,398	7,158,745,963	41.3%	436,994,427	2,953,465,398	14.8%
2004	3,606,445,620	9,405,131,122	38.3%	291,521,943	3,606,445,620	8.1%
2005	3,174,224,459	8,899,479,085	35.7%	237,269,721	3,174,224,459	7.5%
2006	2,894,099,518	40,310,107,412	7.2%	218,222,151	2,894,099,518	7.5%
2007	3,343,036,627	10,829,387,959	30.9%	360,235,113	3,343,036,627	10.8%
2008	3,721,978,504	9,291,354,061	40.1%	319,955,746	3,721,978,504	8.6%
2009	4,422,137,234	12,793,349,021	34.6%	490,720,426	4,422,137,234	11.1%
2010	3,889,953,717	12,123,416,810	32.1%	520,926,141	3,889,953,717	13.4%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비율은 무역관련 인프라 분야에 58%, 생산역량 강화에 42%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개도국 AfT 분야별 지원 비율과 비슷하게 수준으로 배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세계은행(IDA)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2) AFT 사업 분석

(1) 사업 시행 (계획·이행·평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세계은행은 수원국에서 사업계획 시 CPS에 의해서 정해진 중점지원 분야와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즉, 베트남의 SEDP, SEDS를 반영하여 CPS 중점 분야와 분야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는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점분야 중에서 AFT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AFT 관련된 사업의 경우, 세계은행의 무역과 개발 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에도 일치하도록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있다고 한다.

[표 35] 세계은행 베트남 CPS 중 무역관련 지표

세계은행 베트남 CPS		지표		
중점 분야	성과	지표	기초선(Baseline)	목표치(Target)
경쟁 력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Sound macroeconomic framework maintained as evidenced by (i) moderate credit growth and strengthened loan portfolio; (ii) fiscal consolidation through more efficient investment and improved revenue effort.	(i) 31 % annual credit growth rate (2008-2019 average) (ii) fiscal deficit 5.5 % of GDP per year (2008-2010 average)	(i) <20% annual credit growth rate (FY12-FY16 average) (ii) fiscal deficit less than 4 % of GDP per year (FY12-16 average)
		2. Provinces using the integrated Treasury and Budge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ABMIS)	30 (2010)	63 (2015)
		3. Individuals and firms listed in a public credit registry with information on their borrowing history from the past 5 years	29.8% (2011)	40% (2015)
		4.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current financial and balance sheet data on their webpage	49% (2011)	74% (2015)

경쟁력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5. SOEs divested during the 2011-2015 period	0 (2010)	450 (2015)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6. Duration of interruptions in 500kV transmission system per 100 circuit km	15.43 minutes (2010)	13% improvement (2015)
		7. Reduced volume of water physically lost from water supply system in selected cities (i) in HCMC	27,300m ³ /day (2011)	125,000m ³ /day (2015)
		8. Reduced transport times on targeted transport corridors: (i) Road Network Improvement Program (ii) Hanoi 2nd Ring Road (iii) National Highway 91 (MDTP)	(i) Details available sep. (ii) 28 min (2011) (iii) TBD by June 2012	(i) 15% decrease (2012) (ii) 22 min (2015) (iii) TBD by June 2012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9. Higher Education students benefitting from improved curriculum, facilities, laboratories and research activities through TRIG grants (number)	200,000 (2010)	250,000 (2013)
		10. Farmers in targeted areas adopting good agricultural practices (number)	0 (2011)	23,500 (2015)
		11. Additional jobs created as a result of investments supported	32,142 (2011)	100,000 (2015)
기회	빈곤층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증가	20. Households in targeted areas reporting improvements in accessibility to basic productive infrastructure (%)	n/a (2011)	60 % (2015)
		21. Social Protection indicator (to be established by CPS Progress Report)		
	기초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	22. Rural households with access to (i) electricity in project provinces (ii) an all-season road	(i) 87.3 % (2011) (ii) 78 % (2010)	(i) 90 % (2014) (ii) 81 % (2014)
		23. People provided with a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s (i) in rural areas in Red River and Mekong Deltas	0 (2009)	1,100,000 (2015)

출처: World Bank. (2011b) 요약, 재구성.

[표 35]는 세계은행의 베트남 CPS 중 AfT와 관련된 분야의 지표 및 목표치를 정리한 표이다. 이처럼 세계은행은 CPS에서 분야별 세부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표들은 해당 분야의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CPS 경우 일부 중점목표가 AfT와 사실상 동일한 분야이므로 AfT를 단독 분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세계은행의 중점 분야와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상의 중점지원 요청 분야가 AfT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지, AfT를 별도의 독립된 분야(Sector)로 선정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무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점분야에서도 세부 이행 프로젝트로는 AfT 사업이 기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호주, 벨기에,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과 함께 AfT 공동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원조조화와 상호책임강화 등의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성과관리에 있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된다.¹⁰⁷⁾

(2) 원조형태(Aid modality)

세계은행의 AfT전략은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수원국별 CPS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차관, 기술지원, 신탁기금, 무역관련 원조를 조화시키기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프로그램 사업

세계은행은 CPS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즉, CPS에서 중점 분야와 목표를 설정하고 다수의 사업 추진을 통해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분야의 경우

107) 최민경. (2008), p. 85.

사실상 AfT와 동일한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원과 관련된 세계은행의 일부 AfT 사업은 AfT 단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fT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CPS 상의 중점분야도 세부 이행 프로젝트의 하나로 AfT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에도, 넓게 보면 AfT 사업이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에는 정책자문, 훈련 등 기술협력이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또는 소외지역 빈곤감소 사업에 AfT 사업이 연계되어 소득작물 생산과 수출을 통한 빈곤퇴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원조형태와 분야를 결합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AfT를 추진하고 있다.

나. 민관협력

최근 들어 세계은행은 파트너십 체결, PPP 사업 등의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의 공여기관 간(間) 정책일관성 부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세계은행은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 공여기관, 연구기관, 민간분야 등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노력은 베트남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AfT 관련 사업 계획 및 추진 시 베트남과 미국의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9년에는 무역을 위한 원조 활성화를 위한 PPP(Aid for Trade Facilitation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에서 글로벌 익스프레스 협회(Global Express Association, GEA)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GEA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계은행과 UPS¹⁰⁸⁾가 함께 베트남을 비롯한 10개국에서 국제특급화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는 PPP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PPP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PPP 관련 제반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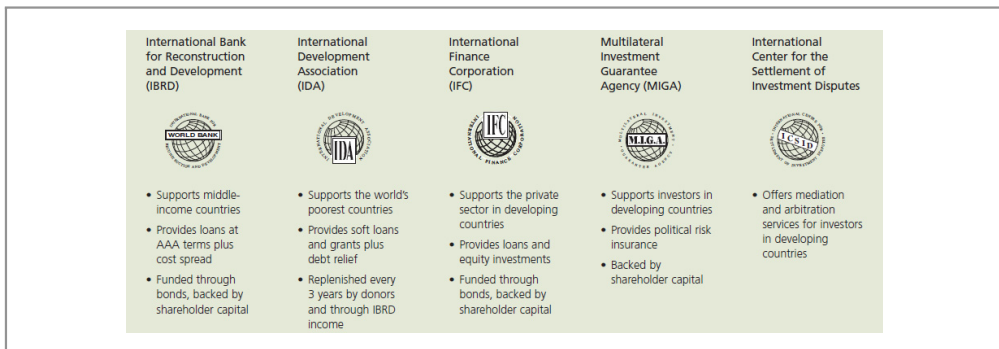
108) United Parcel Service,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물류 운송업체

특히 베트남에서 PPP관련 국내 법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다. Non-ODA 지원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등의 세계은행 그룹의 기구들을 활용하여 무역관련 Non-ODA 지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되는 IFC의 경우 민간투자가 3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이 중소득 국가에 제공하는 비양허성 무역관련 차관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총 37억 달러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총 66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중소득 국가들의 무역관련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포함한 무역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그림 3] 세계은행그룹의 AfT 지원



출처: World Bank. (2009).

세계은행의 혁신적인 무역관련 원조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IFC의 단기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무역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개도국의 영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MIGA는 기업의 정치적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라.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무역관련 지원방법으로 양허성 차관, 기술협력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은행의 AfT 지원 방식의 특징 중 하나이다. 먼저 세계은행의 무역관련 양허성 차관 지원이 상당 수준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세계은행의 저소득 국가에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평균 23억 달러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39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무역관련 양허성 차관은 교통, 농업 민간분야 개발 등의 다른 분야별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차관은 무역 경쟁력 강화, 무역관련 수송 및 유통 개선, 무역금융 제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무역관련 수송 및 유통 활성 프로젝트에서 관련 규제완화,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특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무역 활성화 조정 실패의 원인 분석 및 해결, 지역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형식의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 다자공여기관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MDTF)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MDTF는 2011년 6월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기금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은 지역 네트워크 등 무역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과 범국가적 데이터 수집 연구조사에 관한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¹⁰⁹⁾

끝으로, 세계은행은 WTO 가입 준비 등의 컨설팅 사업 등 기술협력의 방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AfT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무역을 촉진시키고 경제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기관 등에 관한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지식 생산 및 공유를 위한 노력을 기술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1) 범국가 및 범산업 무역 정책 지표, 2) 주요 발전 저해요소 분석방법, 3) 정책대화와 프로젝트 개발, 4) 연구조사 및 분석, 4가지 방법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9) World Bank. (2011a).

3) 소결

세계은행의 AfT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36]과 같다. 분석 결과 세계은행은 사업을 발굴·기획 시 AfT가 우선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된 CPS 상의 중점분야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가 사업 발굴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 중점분야가 AfT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세계은행의 AfT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AfT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fT 사업의 경우 CPS에서 제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타공여국과의 공동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세계은행의 AfT 사업 분석

항목		세 부 내 용
2. 사업	가.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시 CPS에 의해서 정해진 중점지원 분야와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관련분야에 AfT 사업 계획 - 세계은행의 AfT 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도록 사업을 기획·발굴 - CPS에서 분야별 세부지표와 목표치 제시, 모니터링 및 평가에 연계 - 타공여국과 AfT 공동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나. 원조형태 (Aid modality)	① 프로그램 사업 - CPS와 연계하여 AfT를 프로그램 원조 제공 - 인프라 사업에는 자문, 훈련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결합하여 추진 - 농촌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 ② 민관협력 -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 공여기관, 연구기관, 민간분야 등과 폭넓은 파트너십 체결 및 협력 - AfT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민간부분 의견수렴 - 베트남 PPP 추진을 위한 법규 및 정책 수립 연구 ③ Non-ODA 지원 - 세계은행그룹의 IFC, MIGA 기구 활용하여 비양허성차관, 무역금융 등 제공 ④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 AfT 관련 정책 컨설팅 제공 등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사용 - AfT 양허성 차관은 교통, 농업 민간분야 개발 등의 타분야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우 많으며, 무역 경쟁력 강화, 무역관련 수송 및 유통 개선, 무역금융 제공을 중심으로 제공 - 다자공여기관신탁기금(MDTF) 등 신탁기금 형식 지원 통해 지역 내 무역원활화 지원

출처: 저자작성

한편, 세계은행의 AfT 사업의 경우 CPS 상의 중점분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원조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 Non-ODA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 촉진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향후 한국의 AfT 사업 발굴 및 추진 시에 참고할 만한 점으로 사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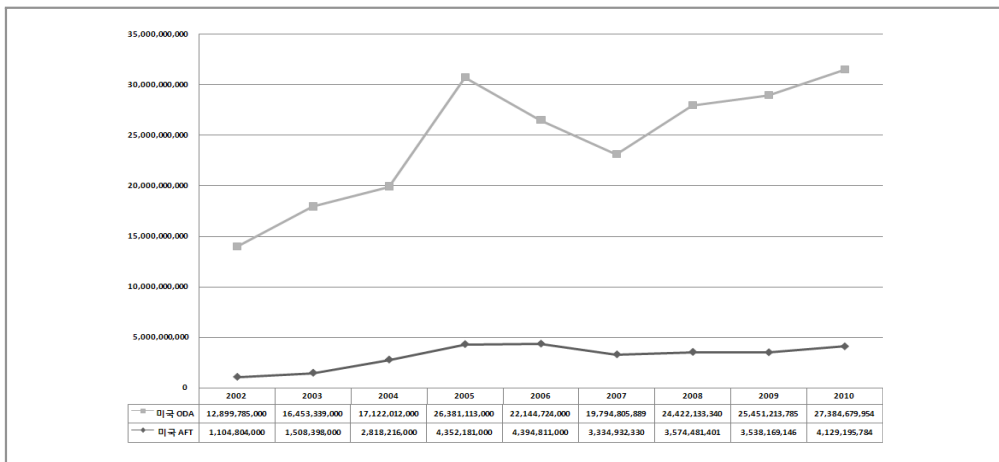
3. 미국

1) AfT 현황

미국의 AfT 지원현황은 [표 37]과 같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 미국은 AfT에 약 41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의 1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2년과 2003년의 AfT 지원 비율이 약 8~9%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AfT 지원 비율을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미국의 AfT 지원 현황

(단위: U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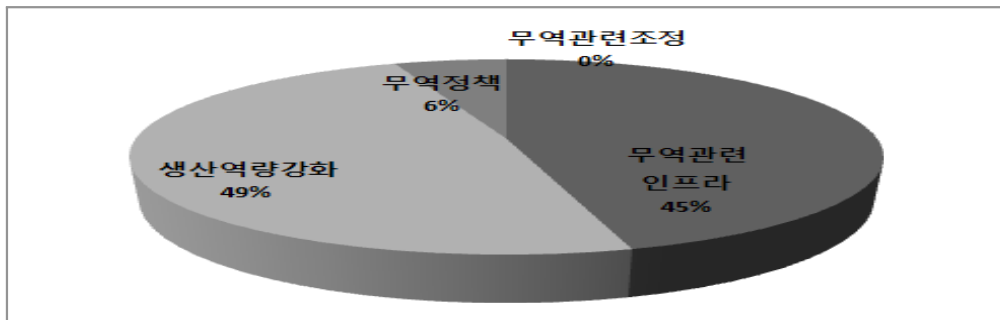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 역량 강화에 지원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역량 강화에 49%가 지원되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역관련 인프라에 45%,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에 6%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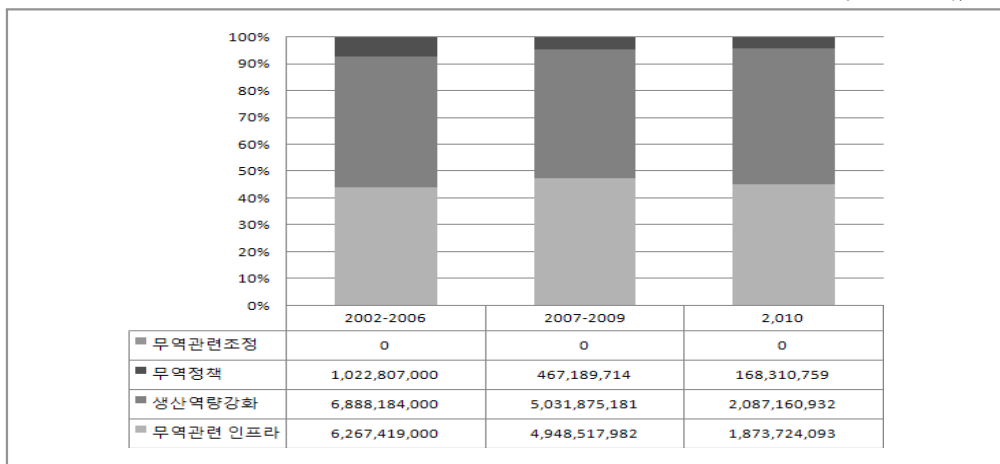
[표 38] 미국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표 39] 미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단위: US 달러, %)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한편, 미국 전체의 대(對)베트남 AfT 지원액의 경우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약 6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fT 지원 비율은 약 0.2~0.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개도국 AfT 지원 비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0] 참조).

[표 40] 미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단위: US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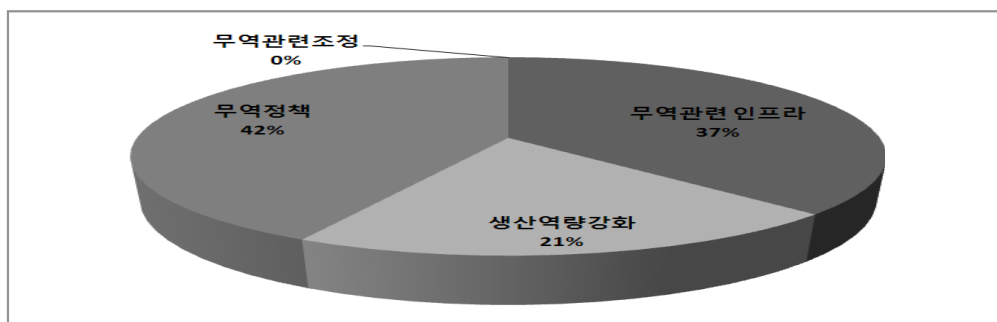
	전체			대베트남		
	AfT	ODA	AfT %	AfT	ODA	AfT %
2002	1,104,804,000	12,899,785,000	8.6%	2,634,000	1,104,804,000	0.2%
2003	1,508,398,000	16,453,339,000	9.2%	4,419,000	1,508,398,000	0.3%
2004	2,818,216,000	17,122,012,000	16.5%	869,000	2,818,216,000	0.0%
2005	4,352,181,000	26,381,113,000	16.5%	4,988,000	4,352,181,000	0.1%
2006	4,394,811,000	22,144,724,000	19.8%	5,691,000	4,394,811,000	0.1%
2007	3,334,932,330	19,794,805,889	16.8%	5,126,653	3,334,932,330	0.2%
2008	3,574,481,401	24,422,133,340	14.6%	9,516,231	3,574,481,401	0.3%
2009	3,538,169,146	25,451,213,785	13.9%	7,810,481	3,538,169,146	0.2%
2010	4,129,195,784	27,384,679,954	15.1%	13,867,418	4,129,195,784	0.3%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비율도 전체 개도국 AfT 분야별 지원 비율과는 다른 분포 양상을 보였다. 전체 AfT 지원 비율의 경우 생산역량강화, 무역관련 인프라,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 순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던 반면, 대베트남 AfT 지원의 경우 무역정책 및 규범(42%), 무역관련 인프라(37%), 생산역량강화(21%) 분야 순으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1] 참조).

[표 41] 미국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2) AfT 사업 분석

(1) 사업 시행(계획·이행·평가)

미국의 AfT는 수원국 정부와의 협력 아래 USAID의 해외사무소에서 계획되고, USAID 및 기타 정부부처에 의해 집행된다. 즉, 미국은 CDCS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며, CDCS 지원 분야 중 AfT와 관련 분야인 경우 다시 AfT 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USAID가 발간한 CDCS 가이드라인에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자국의 원조 정책, 특정 분야별 전략, 대통령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하여 CDCS를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 고려사항 사이에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¹¹⁰⁾ 그러나 지난 2008년과 2011년 AfT 자기평가(Self-assessment) 질문지에서 미국은 AfT가 별도의 독립된 분야(Sector)가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연계되어 있는 이슈라고 표현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AfT를 범분야 이슈의 하나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¹¹⁾ 이밖에도 USAID는 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도 미정부기관, 기타 공여국, 협력대상국의 정책분석가 및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¹¹²⁾

미국의 AfT 집행기관에는 대표적으로 USAID, 밀레니엄 챌린지 법인(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USTR, 국무부, 노동부, 농무부, 미국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등이 있으며, 이들 집행기관 간 조정은 USTR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집행기관인 USAID는 분야별 부서 내에 ‘경제성장·교육·환경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and Environment)’을 설치하고, 국내정부기관, 지역기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fT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성장·교육·환경국 내에서도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무역규제개혁팀(Trade and Regulatory Reform Office), 개발신용팀(Development Credit Office), 영세기업 및 민간기업 진흥팀(Microenterprise

110) USAID. (2012).

111)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112) 최민경. (2008), p. 119.

and Private Enterprise Promotion Office), 에너지·인프라팀(Energy and Infrastructure Office)이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AfT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아래 협력대상국의 산업협회 및 민간기업 등을 직접적인 사업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¹¹³⁾

한편 USAID는 모든 국가에서 추진되는 AfT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적용이 가능한 지표와 결과평가들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해 중점 분야별로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AfT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¹¹⁴⁾ [표 42]는 2011~2013년 USAID의 중점분야의 하나인 ‘포괄적 경제성장(Broad Economic growth)’ 분야의 성과평가 지표 및 목표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USAID의 경제성장 분야는 AfT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세부 지원 분야나 사업 등이 AfT로 분류되는 사업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USAID의 AfT 관련 평가 지표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SAID는 경제성장 분야의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 미국의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의 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USAID의 AfT 관련 분야(포괄적 경제성장) 성과평가 지표

Performance Indicator	FY 2007 Results	FY 2008 Results	FY 2009 Results	FY 2010 Results	FY 2011 Target	FY 2011 Results	FY 2011 Rating ¹	FY 2012 Target	FY 2013 Target
Three-Year Average in the Fiscal Deficit as a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78.3%	72.2%	72.2%	66.7%	72.2%	N/A	Data not available	66.7%	72.2%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s, annual	62.1%	51.7%	0.0%	86.7%	50.0%	53.1%	Above Target	60.0%	65.0%
Tax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improved (% increase in tax collection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N/A	N/A	N/A	N/A	15.0%	N/A	Data not available	16.0%	17.0%
Time to export/import (days)	79 days	77 days	74 days	72 days	72 days	72 days	On Target	70 days	67 days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to export goods across borders decreased	9 docs	8 docs	8 docs	8 docs	N/A	7 docs	Data not available	6 docs	6 docs
Domestic credit to the private sector as a percent of GDP	N/A	80.5%	66.7%	73.7%	75%	64.9%	Below Target	75.0%	75.0%

113) www.usaid.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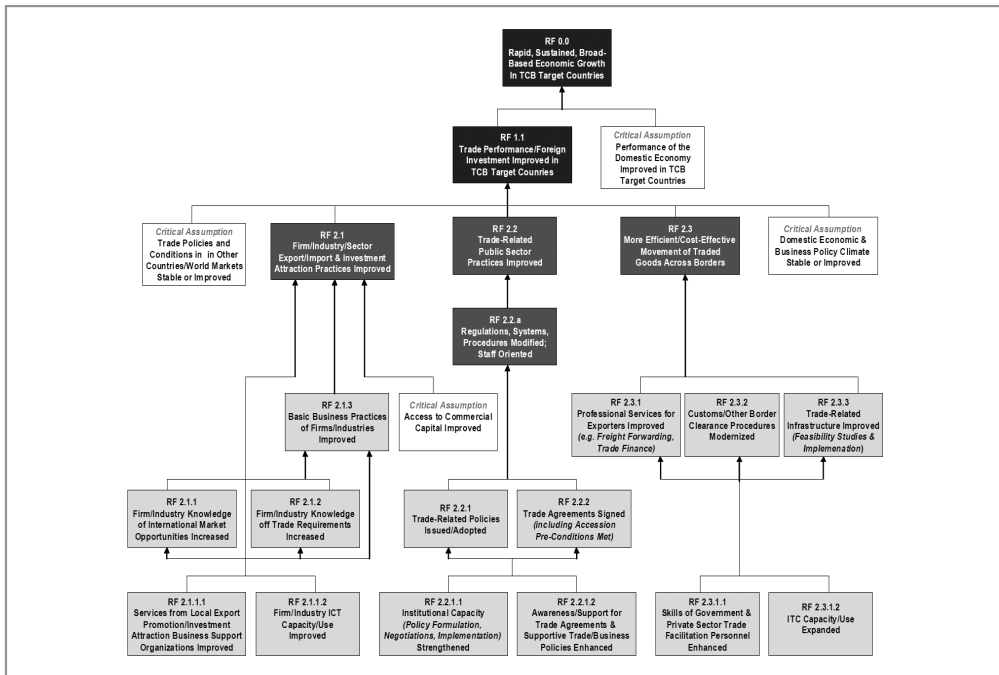
114) USAID. (n.d).

Number of beneficiaries receiving improved infrastructure services due to USG assistance.	N/A	N/A	N/A	N/A	5,183,513	5,820,641	Above Target	6,367,313	5,243,906
Number of People with Increased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1,865,076	803,277	4,426,952	2,129,223	1,687,087	1,701,901	Above Target	N/A	N/A
Number of Internet Users	1.4B	1.6B	1.7B	1.9B	2.1B	2.4B	Above Target	2.7B	3.1B
Three-Year Average in the Fiscal Deficit as a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78.3%	72.2%	72.2%	66.7%	72.2%	N/A	Data not available	66.7%	72.2%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s, annual	62.1%	51.7%	0.0%	86.7%	50.0%	53.1%	Above Target	60.0%	65.0%
Tax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improved (% increase in tax collection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N/A	N/A	N/A	N/A	15.0%	N/A	Data not available	16.0%	17.0%
Time to export/import (days)	79 days	77 days	74 days	72 days	72 days	72 days	On Target	70 days	67 days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to export goods across borders decreased	9 docs	8 docs	8 docs	8 docs	N/A	7 docs	Data not available	6 docs	6 docs
Domestic credit to the private sector as a percent of GDP	N/A	80.5%	66.7%	73.7%	75%	64.9%	Below Target	75.0%	75.0%
Number of beneficiaries receiving improved infrastructure services due to USG assistance.	N/A	N/A	N/A	N/A	5,183,513	5,820,641	Above Target	6,367,313	5,243,906
Number of People with Increased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1,865,076	803,277	4,426,952	2,129,223	1,687,087	1,701,901	Above Target	N/A	N/A
Number of Internet Users	1.4B	1.6B	1.7B	1.9B	2.1B	2.4B	Above Target	2.7B	3.1B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3.3B	4.0B	4.6B	5.0B	5.4B	5.9B	Above Target	6.2B	6.7B
Number of beneficiaries receiving improved transport services due to USG assistance	2,404,561	864,799	2,341,526	2,863,566	3,096,426	3,227,825	Above Target	2,121,874	257,418
Number of farmers or others who have applied new technologies or management practice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N/A	96,069	659,384	1,506,187	3,627,836	5,271,629	Above Target	6,139,997	7,766,912
Number of Rural Households Benefiting Directly from USG Interventions	3,780,419	3,536,170	2,079,359	3,210,058	3,784,805	4,359,028	Above Target	8,120,992	10,847,642
Percent Change in Value of International Exports of Targeted Agricultural Commodities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52.9%	28.3%	44.4%	28.2%	14.8%	16.0%	Above Target	N/A	N/A
Value of Incremental Sales (collected at farm-level) attributed to FTF implementation	N/A	N/A	N/A	927,778	65,577,818	86,789,146	Above Target	414,186,954	473,088,792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N/A	N/A	41.2%	74.5%	70.0%	74.5%	Above Target	75.0%	80.0%
Commercial bank accounts per 1,000 adults	N/A	N/A	N/A	697	N/A	653	Data not available	675	680
Percent of USG-Assisted Microfinance Institutions that Have Reached Operational Sustainability	69%	74%	86%	75%	70%	71%	Above Target	N/A	N/A
Quantity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measured in metric tons of CO ₂ e, reduced or sequestered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180M MT	142M MT	120M MT	120M MT	100M MT	200M MT	Above Target	100M MT	100M MT
Number of hectares of biological significance and/or natural resources under improv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s a result of USG assistance	121,637,252	129,580,863	104,557,205	92,700,352	103,100,000	101,800,000	Improved but target not met	103,500,000	106,800,000

출처: USAID. (n.d).

또한 USAID는 [그림 4]과 같이 AfT 세부 분야별 결과평가 프레임웍(Result Framework)을 사용하여 AfT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USAID는 공통적인 지표와 결과평가들을 사용하여 AfT 사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평가체계 확립은 개도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¹¹⁵⁾

[그림 4] USAID의 AfT 평가 프레임웍



출처: USAID. (2010).

(2) 원조형태(Aid modality)

가. 프로그램 사업

앞서 사업 수행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 미국의 AfT는 CDCS의 중점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CDCS 상의 중점분야 지원을

115) USAID. (2010); 최민경. (2008), p. 85.

위한 프로그램 원조 추진 시, 무역을 위한 원조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분야 프로그램 원조의 세부사업으로 AfT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USAID는 AfT를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보고 있지 않으나, AfT는 여러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진 이슈이므로 분야별 접근방법 프로그램(Sector Wide Approach Program, SWAP)의 방식 또는 주류화 방식을 사용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¹⁶⁾

한편 베트남 USAID 사무소에서는 AfT와 타분야의 사업을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드더퓨처(Feed the future)’ 프로그램과 같이 영세농·소작농 등의 생산역량 강화, 소득작물 재배 및 수출을 통한 빈곤탈출, 농산물 수출량 증가 등 여러 분야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 민관협력

USAID는 AfT 분야에서 PPP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기획 및 이행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USAID는 AfT 사업을 시행할 때, 향후 AfT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될 중소기업, 회사, 은행, BizCLIR (Business Climate Legal & Institutional Reform) 등 민간부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¹¹⁷⁾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AGOA를 통해 무역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참여와 의견 수렴하고 지역 내 공동사업 등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¹¹⁸⁾

또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AfT 사업은 월마트 등의 미국 내 기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산·수출될 상품을 실제 수입할 미국 기업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 시행된 USAID의 대표적인 AfT 분야 PPP 사업으로는 베트남 경쟁력 이니셔티브(USAID's Vietnam Competitiveness Initiative, USAID/VNCI)가 있다. 이 사업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 베트남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한 PPP 추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116)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117)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118)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USA;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USA,

투자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베트남 형(Hung) 지역에서는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USAID는 이 사업에서 PPP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개혁 방안 연구, 정책 자문 등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PPP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¹¹⁹⁾

다. Non-ODA 지원

대통령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Growth, PFG)을 중심으로 국무부, MCC,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USTR, 기관간글로벌개발정책위원회(Interagency Policy Committee on Global Development, IPC)를 통한 다른 기관들은 모두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비원조(non-assistance)성 지원 방법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SAID는 이러한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원조성 지원에는 미국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험과 수출신용 제공 등이 있다. 또한 미국 상공업자들의 개도국에서의 상업적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및 과학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라.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USAID의 AfT 사업의 형태로는 전문가파견이 일반적이다. 전문가파견은 협력대상국의 니즈에 따라 OECD 및 WTO, 기타 미국 정부기관에 전문가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프로젝트 베이스의 경우 대부분 공개입찰로 실시된다. 사전 경쟁입찰 단계(4-5주)와 본격적인 경쟁입찰 단계(3-4개월)를 거쳐 최종확정까지 약 7-10개월이 소요된다. 입찰기관은 교육기관, 민간 싱크탱크,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등 다양하나, 무역 및 투자분야의 경우 미국의 주요 경영컨설팅기업 및 민간조직의 입찰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수주기관은 업무실시 도중 중간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지닌다고 한다.¹²⁰⁾

119) <http://transition.usaid.gov/rdma/countries/vietnam.html>

120) 최민경. (2008), p. 120.

[표 43] USAID의 STAR(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 Plus 2011-2013

항목	세 부 내 용
프로젝트 개요	• 목표 -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거버넌스 및 거시경제 정책 개혁, 투자 및 무역환경 개선, 민간부분 성장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STAR Plus 프로그램은 ① WTO 규정을 준수하고, 미국-베트남 BTA (양자무역협정, Bilateral Trade Agreement) 이행을 위해 베트남의 관련 법규 및 정책, 제도 수립 또는 개정 지원, ② 이를 위한 역량강화 및 훈련 제공, ③BIT와 TPP 협상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음. • OECD AfT 분류: 무역정책 및 규범 • 운영방식 - 베트남 정부(MOIJ)에 프로젝트 관리기구(Project Management Unit, PMU) 설치 및 운영 (공여기관 프로젝트 사무소(DAI)에 의해 관리) - 베트남 정부의 시스템 사용을 최소화하여, USAID의 재정관리 및 조달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및 국외전문가도 DAI를 통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었음. • 사업형태 (Aid modality) : 양자지원, 기술지원
계획 및 목표	• STAR I, II 프로그램에 이어 2011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정부의 우선순위 분야 및 미국정부의 우선순위 분야(미국-베트남 양자협정, BIT, TPP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됨 • 유연하고, 수요중심의 프로젝트임 - STAR Plus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논리모형(Log-frame)을 사용하지 않으며, 17개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운영됨
M&E 및 모니터링 지표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M&E 프레임워크나 모니터링 지표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STAR Pl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부 이행 프로젝트는 각각의 M&E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글로벌무역지표(Global Trade Index), 글로벌경쟁력지표(GCI),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지표 등 국제통상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성 및 영향을 평가 • 5,000~10,000 달러 사이의 소규모 세미나 또는 훈련 프로그램은 USAID와 계약된 프로젝트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입물을 기준으로 보고됨
보고 및 평가	• USAID와 베트남 담당 정부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 제출 • 2011년 5월 성과평가 실시 완료
기타	• 관련자료: http://usaidstarplus.org

출처: OECD. (2012a).

3) 소결

미국의 AfT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44]와 같다. 분석 결과 미국은 사업을 발굴·기획 시 AfT가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원조는 CDCS를 중심으로 각각의 중점분야별 프로그램 원조 형식의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AfT 사업을 수원국별 CDCS의 중점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AfT를 독립된 하나의 분야(Sector)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성과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AfT와 관련있는 분야의 성과지표의 경우 AfT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까지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USAID는 모든 AfT 사업에 적용가능한 결과평가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수원국별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함 역시 강조하고 있었다.

[표 44] 미국의 AfT 사업 분석

항목		세부 내용
2. 사업	가.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시 CDCS에 의해서 정해진 중점지원 분야와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 - AfT를 분야(Sector)로 다루지 않으며, 범분야와 비슷하게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 -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중점분야별 성과관리 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AfT 모니터링 및 평가에 연계 - AfT 세부분야별 결과평가들을 제공
	나. 원조형태 (Aid modality)	① 프로그램 사업 - CDCS 상의 중점분야 프로그램 원조의 일환으로 AfT 사업 추진 - SWAP 접근법의 필요성 인정 - ‘피드더퓨처(Feed the future)’와 같은 농촌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 ② 민관협력 - AfT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민간부분 의견수렴 - 베트남 PPP 추진을 위한 법규 및 정책 수립 연구 및 기술지원 제공 - 개도국의 수출자와 자국의 바이어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 ③ Non-ODA 지원 - 미국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수출보험과 수출신용 제공 등 비원조성 지원 적극 활용 ④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 USAID의 AfT 사업은 전문가 파견이 큰 비중을 차지함.

출처: 저자작성

한편, USAID AfT 사업의 경우 CPS 상의 중점분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원조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거나 타분야와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PPP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등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Non-ODA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촉진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 미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8-2010

Aft 분야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설명
무역 관련 인프라	도로운송	NATIONAL INTELLIGENT HIGHWAY SYSTEM - Reverse Trade Mission	NATIONAL INTELLIGENT HIGHWAY SYSTEM - Reverse Trade Mission, through Business Council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수로운송	Port Sector - Definitional Mission	Port Sector - Definitional Mission. [Firm: Leonard Sugin C. E.]
생산 역량 강화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VIETNAM: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MODERNIZATION REVERSE TRADE MISSION - Reverse Trade Mission	VIETNAM: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MODERNIZATION REVERSE TRADE MISSION - Reverse Trade Mission, through Business Council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Improve policie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affecting the private sector. Includes reducing barriers to competition and unwarranted distortions to market prices; reducing policy and regulatory barriers to establishing operating and closing businesses; strengthening the legal framework surrounding property rights that is fair to both men and women contract enforcement and dispute resolution along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ose laws; reducing incentives for corruption [Development Alternatives Inc.]
		Program Support (Private Sector)	Develop and conduct needs assessments baseline studies targeted evaluations special studies or other information-gathering efforts specifically for the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USG-funded programs. This sub-element may also include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testing demonstration and/or pilot models or the preparation of strategic plans and other short-term programming tasks. Note: All such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by partners as an in [Personal Service Contractors - USAID]

생산 역량 강화	농업개발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Sustain the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through investments that foster increasing returns to land, labor, and capital. Targeted interventions to male and female producers provide improvements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practices, expanded access to markets and credit, increased organizational and market efficiency, and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resiliency in production and livelihood systems. [through Agriculture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농업관련 교육/ 훈련	WTO/SPS/TBT Notification (4); Developing and Implementing Food Safety Standards (7)	Provides U.S.-based agricultural training opportunities for senior and mid-level specialists and administrators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cerned with agricultural trade, agribusiness development, management, policy, and marketing.. From 10/01/2009 to 09/30/2010.
	축산진료	In-Country Training for Vietnamese Meat Inspectors	FAS/Vietnam has contacted FSIS and they have agreed to provide trainers for training in 2008. After consulting with Vietnamese officials FAS/Vietnam believes what is necessary is a more comprehensive course than was provided last year with elements covering HACCP and GMP in addition to ante- and post-mortem inspection.
무역 정책 및 규범	통상정책, 행정관리	Accelerated Transition To A More Open, Market-Based Economy	Accelerated Transition To A More Open, Market-Based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Enabling Environment	The policie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stitutions that support sustained locally driven improvements in the trade environment that benefit both men and women. [Development Alternatives Inc.]
	무역진흥	Trademark Training for Newly Hired Vietnamese Examiners	Location: Vietnam Training Recipient: trademark officials Program to train newly hired examiners.. Training Date: February 25-28. Participants from: Vietnam.
		U.S. - VIETNAM STANDARDS DEVELOPMENT PROGRAM - Technical Assistance	U.S. - VIETNAM STANDARDS DEVELOPMENT PROGRAM -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무역 정책 및 규범	무역진흥	CUSTOMS COOPE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 Reverse Trade Mission	CUSTOMS COOPE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 Reverse Trade Mission, through Decision / Analysis Partners, LLC
		NATIONAL SINGLE WINDOW CUSTOMS PROJECT - Feasibility Study	NATIONAL SINGLE WINDOW CUSTOMS PROJECT - Feasibility Study, through Selection in progress
	지역무역 협정	APEC Demonstration Project - Desk Study	APEC Demonstration Project - Desk Study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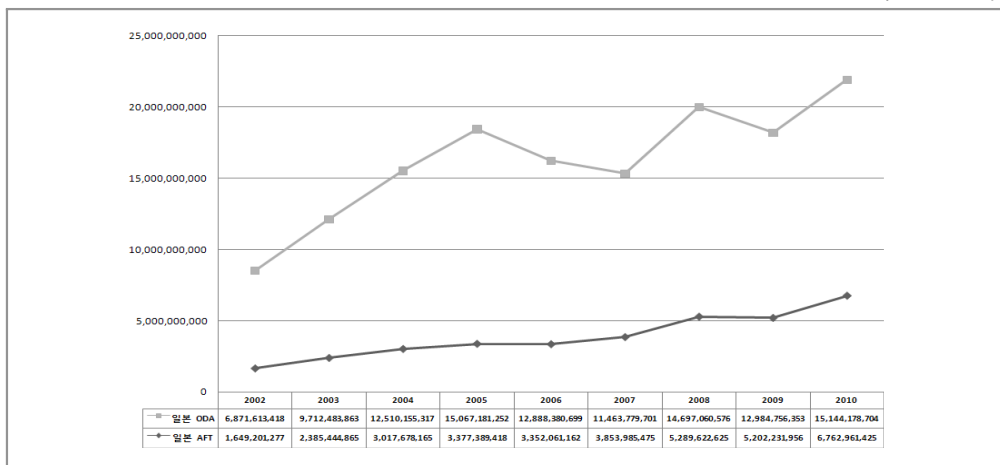
4. 일본

1) AfT 현황

일본의 AfT 지원현황은 [표 46]과 같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 일본은 AfT에 약 68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의 4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의 AfT 지원 비율은 2002년에 24%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AfT 지원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2~2010년 DAC 회원국 전체 AfT 지원 비율이 약 12~21%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AfT 지원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일본의 AfT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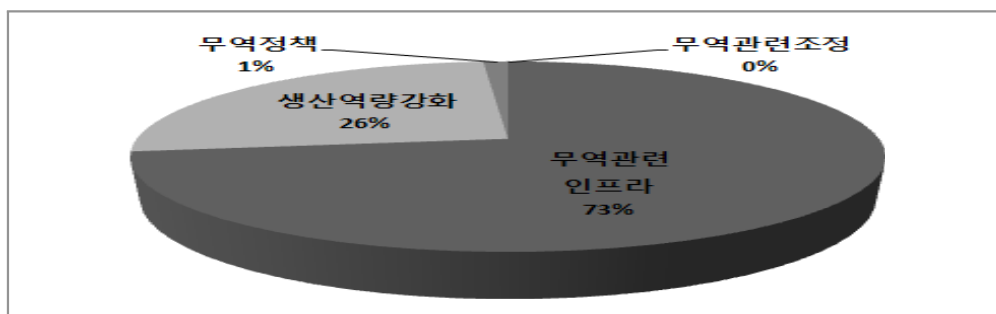
(단위: US 달러)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일본의 AfT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원조 사업 중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은 [표 47]의 분야별 AfT 지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AfT 총액의 약 73%가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되었다. 다음으로 생산역량강화에 AfT의 26% 지원되었으며,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 지원에는 1%만이 지원되었다([표 47] 참조).

[표 47] 일본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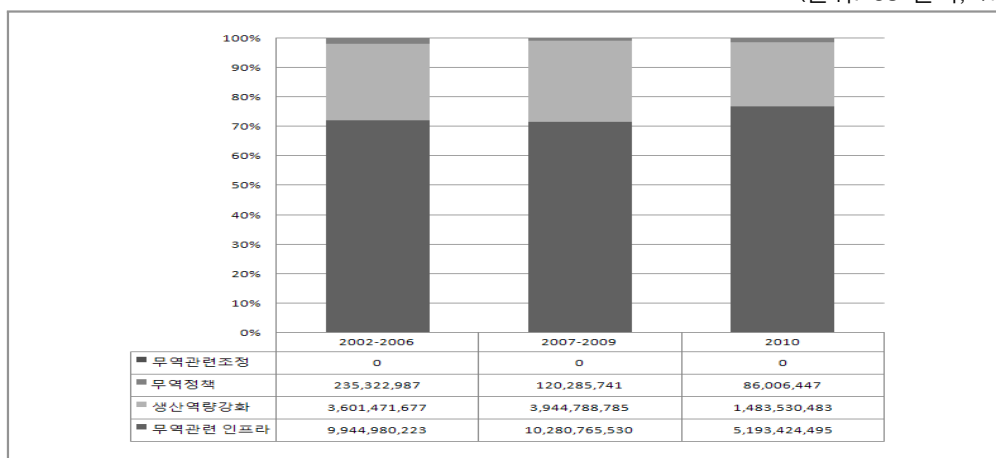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시기별로 AfT 지원을 나눠 살펴 본 결과, 최근에 들어 AfT 지원액 중 무역관련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8] 참조).

[표 48] 일본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단위: US 달러, %)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한편, 일본 전체의 대(對)베트남 AfT 지원액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약 20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베트남 AfT 지원비율도 2002년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준 약 12%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개도국 AfT 지원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9] 참조).

[표 49] 일본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단위: US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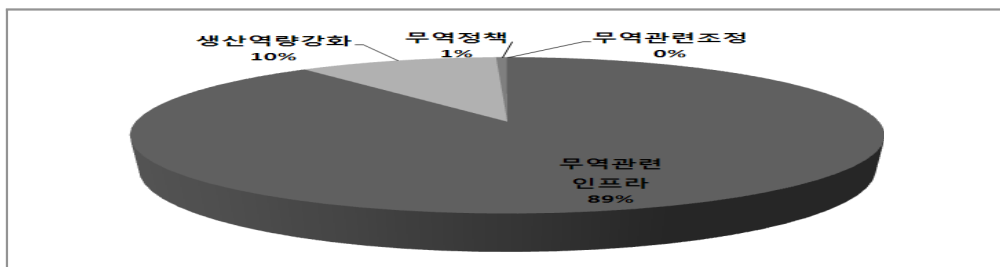
	전체			대베트남		
	AfT	ODA	AfT %	AfT	ODA	AfT %
2002	1,649,201,277	6,871,613,418	24.0%	40,423,324	1,649,201,277	2.5%
2003	2,385,444,865	9,712,483,863	24.6%	168,577,307	2,385,444,865	7.1%
2004	3,017,678,165	12,510,155,317	24.1%	242,079,927	3,017,678,165	8.0%
2005	3,377,389,418	15,067,181,252	22.4%	404,628,337	3,377,389,418	12.0%
2006	3,352,061,162	12,888,380,699	26.0%	428,017,980	3,352,061,162	12.8%
2007	3,853,985,475	11,463,779,701	33.6%	549,797,512	3,853,985,475	14.3%
2008	5,289,622,625	14,697,060,576	36.0%	571,109,901	5,289,622,625	10.8%
2009	5,202,231,956	12,984,756,353	40.1%	610,219,378	5,202,231,956	11.7%
2010	6,762,961,425	15,144,178,704	44.7%	811,625,177	6,762,961,425	12.0%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비중은 전체 개도국 AfT 분야별 지원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된 비율 조금 더 높게 확인되었다 ([표 50] 참조).

[표 50] 일본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2) AfT 사업 분석

(1) 사업 시행(계획·이행·평가)

일본의 AfT 사업은 수원국 국별지원프로그램(Country Assistance Program, CAP)에 따라 연계되어 수립된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CAP는 수원국의 국별개발계획·전략을 반영하여 수립되게 되는데, 베트남 CAP의 경우 베트남 SEDP와 SEDS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CAP 수립 시에 무역을 단독 분야(Sector)로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으며, CAP 내에서 AfT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경우 AfT 전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AfT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지표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2008년과 2011년 AfT 자기평가 설문지 답변 결과에서도 AfT의 경우 단일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명시한 점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AfT 사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다. 다만 AfT 사업의 경우 궁극적으로 관련 역량이나 시설 개선을 통한 무역 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지표 역시 세계은행, 미국 등이 AfT 관련 지표로 사용하는 지표가 유사한 지표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관개선 사업의 경우 통관 물량 증가량 등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AfT의 성과는 인프라 정비만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시일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¹²¹⁾ 그리고 일본은 AfT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할 때 수원국 및 지역기구, 기타 공여기관과 공동협력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¹²²⁾

121) 최민경. (2008), p. 85.

122) Aid for trade 2008 self-assessment: JAPAN;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JAPAN.; 최민경. (2008), p. 85.

[표 51] 다낭 항만 개발 프로젝트*, 1999-2007

항목	세 부 내 용
프로젝트 개요	• 목표 - 베트남 중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사회경제개발 촉진 - 티엔샤(Tien Sa) 항구 시설(부두, 방파제 및 화물터미널 건설) 및 접근성 개선 • OECD Aft 분류: 무역관련 인프라 • 운영방식: 베트남 정부(MOT)에 PMU 설치하여, 일본건설회사가 사업 시행 • 사업형태 (Aid modality): 양자투자차관(Bilateral investment loan)
계획 및 목표	• 1996년 베트남 SEDP, 다낭시 SEDP, 국가교통마스터플랜, 국가항구개발마스터플랜 등 베트남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프로젝트가 기획됨. 또한 1998년 JICA가 기술협력 사업으로 시행한 3단계 다낭 항구 개선 및 개발 프로젝트에 기속하여 사업이 기획됨. •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FS)는 세계은행이 시행하였음. •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음.
M&E 및 모니터링 지표	• PMU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를 발굴하여 설정하였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기초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여 M&E를 실시하였음. • 무역과 관련된 지표로 국외수출입증가량, 수출입회사, 물류회사, 항구 사용자의 만족도, 화물통관 증가량이 사용되었음.
보고 및 평가	• 정부 보고시스템을 사용하여 분기별, 연도별 정기 보고 실시 • 2009년 프로젝트 사후평가 실시하여, 2차 사업 제안됨.
기타	• JICA가 시행한 하이반 패스터널(Hai Van Pass-Tunnel)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동시 추진됨.

주: Da Nang Port Improvement project

출처: OECD. (2012a).

[표 52] 하이반 패스터널 건설 프로젝트*, 1999-2007

항목	세 부 내 용
프로젝트 개요	• 목표 - 베트남 중부지역을 비롯한 국가전체 경제개발 도모 - 1번 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해 하이반 패스터널 (Hai Van Pass-Tunnel) 공사 • OECD Aft 분류: 무역관련 인프라 • 운영방식: 베트남 정부(MOT)에 PMU 설치하여, 일본건설회사가 사업 시행 • 사업형태 (Aid modality): 양자투자차관(Bilateral investment loan)
계획 및 목표	• 베트남 SEDP, 다낭시, 투아티엔후에성(Thua Thien Hue Province) SEDP, 국가교통 마스터플랜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프로젝트가 기획됨. 또한 아시아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가 실시한 메콩지역개발계획(Mekong Regional Development Plan)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이 기획됨. •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FS)는 세계은행이 시행하였음. •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음.
M&E 및 모니터링 지표	• PMU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를 발굴하여 설정하였으며, 이후 HAMADECO로 이전됨. • 일부 지표의 경우 기준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여 M&E를 실시하였음. • 무역과 관련된 지표로 교통량 증가 및 안정성 개선정도, 지역별 무역증가량, 운송회사의 만족도, 관광객 증가, 동-서 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의 교통 및 교역 증가, 국외수출입 증가가 사용되었음.

보고 및 평가	• 정부 보고시스템을 사용하여 분기별, 연도별 정기 보고 실시 • 2009년 프로젝트 사후평가 실시됨.
기타	• JICA가 시행한 다낭 항만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동시 추진됨.

주: Hai Van Pass-Tunnel Contruction project

출처: OECD. (2012a).

(2) 원조형태(Aid modality)

가. 프로그램 사업

일본의 AfT 사업은 CAP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AfT 사업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정부가 AfT와 관련하여 국내성장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패키지형 AfT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성장정책으로 ‘신성장전략(New Growth Strategy)’을 도입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 ‘통합인프라시스템 전개(Deployment of Integrated Infrastructure Systems)’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 개도국의 성장과 일본의 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인프라시스템 전개(Deployment of Integrated Infrastructure Systems)’는 무역 활성화와 연계된 인프라 지원 시 건축부터 해당 인프라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의 다양한 ODA 지원을 연계, 패키지로 지화하여 제공하는 시도이다.¹²³⁾

나. 민관협력

개도국의 산업 개발 및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활동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 및 민간분야의 활동 촉진을 위해 PPP 등을 통한 협력 및 기타공적자금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투자를 포함한 민간(Private sector)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원조 정책과 일본 자국 기업의 정책, 참여를 연계강화하려는 시도를 하

1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p. 42-43.

고 있다.¹²⁴⁾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일본은 무역, 투자, 환경, 법률제도의 개선 지원하는 동시에 인프라 관련 기술(상하수도, 전력, 도로, 철도, ICT 등)의 경우 민간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원조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베트남-일본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베트남의 관계 부처와 일본 대사관, JICA, JETRO, 하노이와 호치민 소재 일본기업연합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2010년에는 ‘통합인프라시스템 전개(Deployment of Integrated Infrastructure Systems)’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PPP 인프라 프로젝트(PPP infrastructure projects)’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일본은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직접투자 또는 자금(direct investment and financing)을 제공하는 ‘JICA 민간분야 투자 재정지원(JICA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을 2010년부터 다시 도입하고,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JICA 민간분야 투자 재정지원(JICA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은 JICA의 차관을 활용하여 일본의 민간 기업이 개도국에서 비정부민간분야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²⁵⁾

다. Non-ODA 지원

백서에서 일본의 ODA와 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 등의 기타공적자금(OOF),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ODA와 OOF를 활용한 개도국 투자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인프라정비 및 제도 구축, 인재육성 등의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⁶⁾

1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 18.

12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p. 42-43.

1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pp. 42-43; 최민경. (2008), p. 148.

3) 소결

일본의 AfT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53]과 같다. 분석 결과 일본의 원조는 CAP를 중심으로 각각의 중점분야별 프로그램 원조 형식의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AfT 사업을 수원국별 CAP의 중점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AfT를 독립된 하나의 분야(Sector)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평가나 모니터링을 위한 AfT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fT의 경우 별도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53] 일본의 AfT 사업 분석

항목		세 부 내 용
2. 사업	가.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시 CAP에 의해서 정해진 중점지원 분야와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 - AfT를 분야(Sector)로 다루지 않음. - 단일화된 AfT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 필요시 수원국 및 지역기구, 기타 공여기관과 공동평가 시행
	나. 원조형태 (Aid modality)	① 프로그램 사업 - CAP 상의 중점분야 프로그램 원조의 일환으로 AfT 사업 추진 - 무역 활성화와 연계된 인프라 지원 시 건축부터 해당 인프라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의 다양한 ODA 지원을 연계, 패키지화된 프로그램 추진 ② 민관협력 - 베트남-일본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 추진 - 인프라 관련 기술(상하수도, 전력, 도로, 철도, ICT 등)의 경우 민간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원조 추진 ③ Non-ODA 지원 - 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 등의 기타공적자금(OOF),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활용

출처: 저자작성

한편 일본은 무상과 유상원조를 결합하는 방식의 다양화된 원조형태를 활용하여 A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인프라 사업 추진 시 관련 인적자원 훈련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패키지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CAP 상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는 등 프로그램 형식으로 사업이 다

수 수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프라 사업 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PPP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Non-ODA 지원 방식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최근의 백서에서 새롭게 다뤄지게 된 내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 일본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8-2010

AfT 분야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설명
무역 관련 인프라	도로운송	RED RIVER BRIDGE CONSTRUCTION PROJECT (III)	CONTRIBUTE TO EFFICIENT TRAFFIC FLOW, THE SOUTH - EAST SECTION OF HANOI THIRD RING ROAD, INCLUDING THE RED RIVER BRIDGE, NEW DUONG BRIDGE AND PHAP VAN VIADUCT
		TRAFFIC SAFETY OF HW, TUNNEL CONSTRUCTION	TRAFFIC SAFETY OF HW, TUNNEL CONSTRUCTION
		HIGHWAY BYPASS ROAD CONSTRUCTION PROJECT	HIGHWAY BYPASS ROAD CONSTRUCTION PROJECT
		IMPROVE TRAFFIC AND ECONOMIC GROWTH	IMPROVE TRAFFIC AND ECONOMIC GROWTH
	철도운송	HANOI - HCMC RAILWAY LINE BRIDGES SAFETY IMPROVEMENT PROJECT	TO REHABILITATE RAILWAY BRIDGES
		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BEN THANH-SUOI TIEN SECTION (LINE 1)) (I)	CONSTRUCT MASS RAPID TRANSIT SYSTEM
	수로운송	HAI PHONG PORT REHABILITATION	TO CONSTRUCT CONTAINER AND CARGO
		DA NANG PORT IMPROVEMENT PROJECT	DA NANG PORT IMPROVEMENT PROJECT
		CAI MEP THI VAI INTERNATIONAL PORT CONSTRUCTION PROJECT	CAI MEP THI VAI INTERNATIONAL PORT CONSTRUCTION PROJECT
	항공운송	TO CONSTRUCT A NEW AIRPORT TERMINAL	TO CONSTRUCT A NEW AIRPORT TERMINAL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SAFE T2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SAFE T2
	전력생산/ 재생불능 자원사용	O MON THERMAL POWER PLANT & MEKONG DELTA TRANSMISSION NETWORK PROJECT (IV)	TO INCREASE THE POWER SUPPLY
	수력 발전소	THAC MO HYDROPOWER STATION EXTENSION PROJECT	TO MEET THE INCREASING POWER DEMAND

생산 역량 강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OECD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Vietnam	Project to evaluate Viet Nam's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programme
	농업개발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LIVING CONDITION IN NAM DAN DISTRICT IN NGHE AN PROVINCE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LIVING CONDITION IN NAM DAN DISTRICT IN NGHE AN PROVINCE
	농업관련 기자재	Grant Assistance for Underprivileged Farmers	Grant Assistance for Underprivileged Farmers
	농업관련 교육/ 훈련	Improving household food security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supporting livelihood improvement (third year)	Improving household food security in Dak Rowa commune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supporting livelihood improvement
	공업개발	INFRA. DEVELOPMENT OF HI-TECH PARK	INFRA. DEVELOPMENT OF HI-TECH PARK
	중소기업 개발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ZES FINANCIAL PROJECT	TO EASE FINANCIAL ACCESS OF SMES
sme fund		sme fund	
SMES FINANCE PROJECT		SMES FINANCE PROJECT	
무역 정책 및 규범	무역진흥	the Project for the Reinforcement of Customs Functions at of the Haiphong Port	the Project for the Reinforcement of Customs Functions at of the Haiphong Port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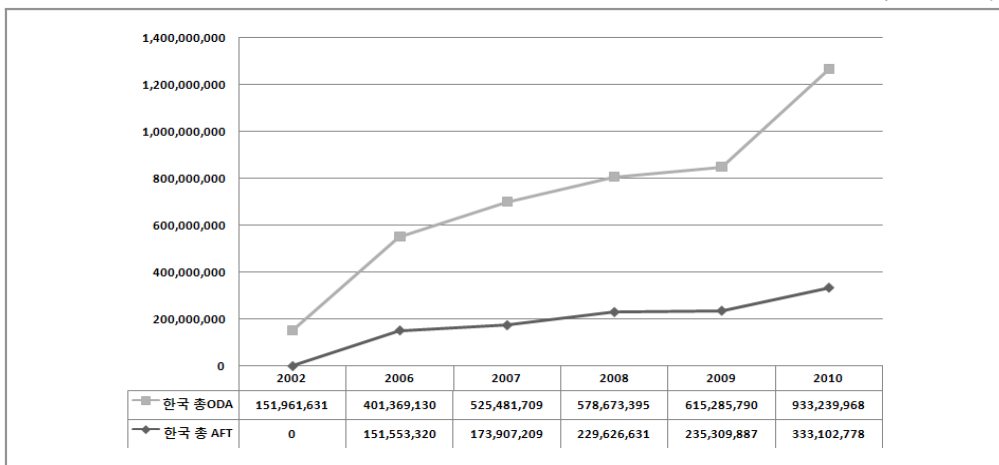
제6장. 한국의 AfT 정책 및 사업 현황

1. AfT 현황

한국의 AfT 지원현황은 [표 55]와 같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 일본은 AfT에 약 3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의 3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의 AfT 지원 비율은 모두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DAC 회원국 평균 AfT 지원 비율도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 한국의 AfT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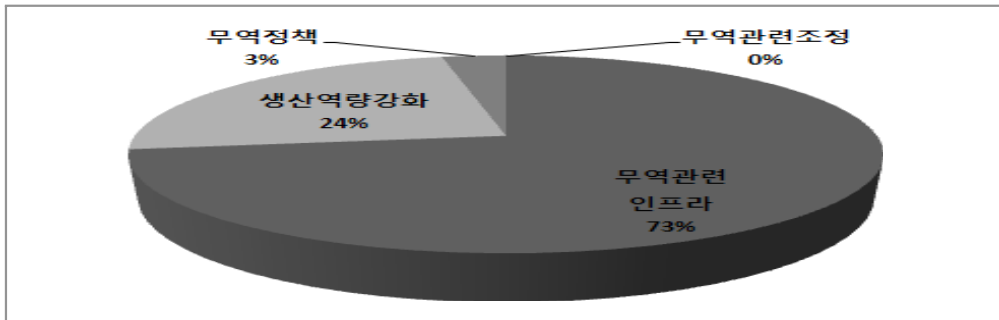
(단위: US 달러)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이렇듯 한국의 AfT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아,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표 56]의 분야별 AfT 지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AfT 총액의 약 73%가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 되었다. 다음으로 생산역량강화에 24%가, 무역정책 및 규범에 3%가 지원되었다([표 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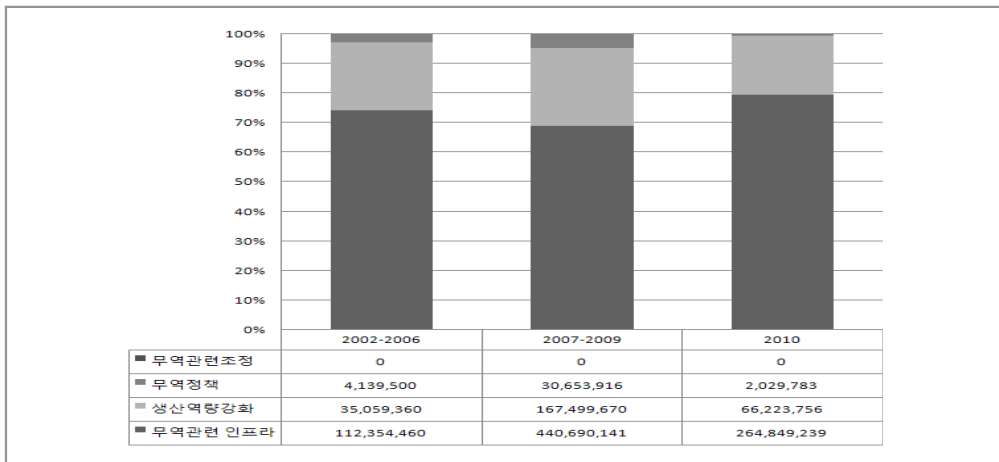
[표 56] 한국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표 57] 한국 시기별·분야별 AfT 지원현황, 2002-2010년

(단위: US 달러, %)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한편, 한국의 대(對)베트남 AfT 지원액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fT 지원 비율은 약 3.1%에서 16.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참조).

[표 58] 한국의 전체 Aft 지원액과 대베트남 Aft 지원액 비교

(단위: US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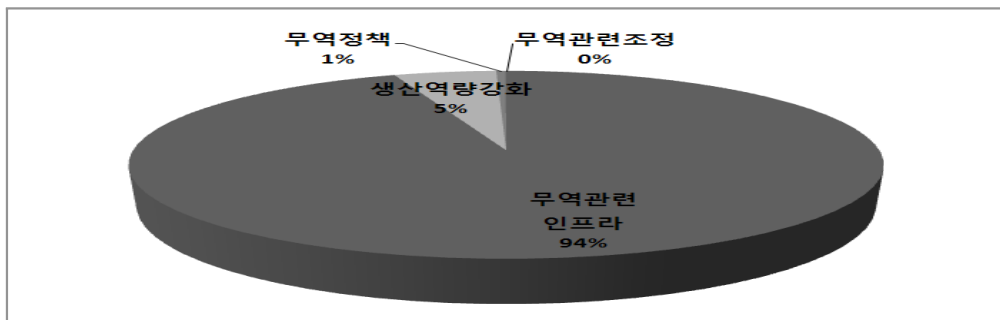
	전체			대베트남		
	AFT	ODA	AFT %	AFT	ODA	AFT %
2006	151,553,320	401,369,130	37.8%	4,768,200	151,553,320	3.1%
2007	173,907,209	525,481,709	33.1%	5,910,678	173,907,209	3.4%
2008	229,626,631	578,673,395	39.7%	38,880,650	229,626,631	16.9%
2009	235,309,887	615,285,790	38.2%	22,147,889	235,309,887	9.4%
2010	333,102,778	933,239,968	35.7%	56,316,439	333,102,778	16.9%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또한 대(對)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순서는 전체 개도국 Aft 분야별 지원 순서와 동일하나 무역관련 인프라에 지원된 비율(약 94%)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표 59] 참조).

[표 59] 한국 대베트남 Aft 분야별 지원 현황, 2002-2010년



주: 지출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data extracted on 07 Nov 2012 from OECD.Stat)

2. '무역과 개발' 정책

1) 무역정책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되는 동시에 2001년 시작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협상체결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한국 정

부도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정책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고 FTA를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¹²⁷⁾ 이에 따라 1998년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2003년에는 FTA추진로드맵이 채택되었다.¹²⁸⁾ FTA추진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정부의 FTA 추진 전략 및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FTA 추진에는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 바,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워지므로, 전략적·적극적으로 동시다발적(multi-track) FTA 추진
- ②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규범,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 추진
- ③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FTA 추진
- ④ FTA는 비대칭적인 부분별 효과로 인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FTA 추진
- ⑤ 경제적 영향은 물론 정치, 외교적 영향의 충분한 검토 위에서 추진

[글상자 7] 1960~90년대 한국의 통상정책

1960~70년대 한국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출주도형 통상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1960년대에는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초를 확립한 시기로, 일본·대만 등의 국과와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개별적으로 제정되어있던 무역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1967년 무역거래법을 제정했다. 또한 대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1960년대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원화를 평가절하하고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 수출업체의 수출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1967년 GATT 가입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수출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배경으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우대금융, 수출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관세환급제도), 수출생산용 중간

127) 강문성. (2009). pp. 10-12.

128) FTA추진로드맵에 따르면, FTA의 적극 추진으로 통상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FTA의 세계적 확산 및 경제블록화로 인해 시장확보 및 외톨이 입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략적, 적극적 FTA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과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할 DDA 협상 진행 중에 있어 UR보다도 심화된 시장개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체결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재 투입과 수출판매에 대한 내국간접세감면,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소모 허용제, 주요수출산업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제 허용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도입,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수입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수입자유화는 80년대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개방 압력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1978년부터 1981년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 걸쳐 수입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산물을 제외한 전품목이 수입자유화의 대상이 되었고, 수입 장벽 인하의 정도도 컸다. 7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한구수출의 주요품목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시장개방형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선진무역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먼저 수출입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무역결제에 대한 자유화 확대, 연불수출금융기간의 연장,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해 과제성책이 통관제도의 개선도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농산물 긴급관세부과조치, 반덤핑규제 정비, 수출입통관제도 개선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상품시장뿐 아니라 서비스시장, 직접투자의 개방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출처: 장춘녀. (2010); 송원근. (2008) 요약, 정리

이후 한국 정부는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3년 1월 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SEAN, 인도, 페루,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¹²⁹⁾ 한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FTA 추진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공산품과 임수산물에서는 전 품목을 예외 없이 개방하기로 하고, 즉시 철폐를 포함하여 5년 내 조기 철폐되는 품목수가 양측 모두 92%를 상회하였으며, 서비스 부분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었다.¹³⁰⁾

한편 한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WTO의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 민감성 보호를

129) 외교통상부 FTA 포털 (<http://www.fta.go.kr/new2/main/index.asp>)

130) 외교통상부. (2012), pp. 125-127.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주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규정을 보다 강화(TRIPS-plus)하는 별도의 협정에 가입하는 등 양자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하는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등의 주제에서 통합협정문 간결화를 제안,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으며, 대개도국 기술지원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지원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 AfT 정책

한국정부는 DAC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AfT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활동을 통해 정책을 표명해 왔다.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¹³¹⁾와 2007년 11월에 참가한 제1차 ‘글로벌 AfT 리뷰(Global Aid for Trade Review)’ 회의의 발언문, WTO/OECD가 각 공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를 통해 AfT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먼저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간 통상·투자를 확대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¹³²⁾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최빈국 무관세·무쿼터 수입품목의 확대,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 기여확대를 통한 최빈국 무역역량배양 지원확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통상투자 사절단 파견 등 기업인간의 교류 확대지원 등을 제안하였다.¹³³⁾ 이어 2007년 제1차 ‘글로벌 AfT 리뷰’ 회의에서 발표한 우리정부의 선언문(‘Statement of the Republic

131) 2006년 3월 대아프리카 ODA를 2008년까지 세 배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의 질병퇴치,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 분야의 지원 확대 등 10가지 이니셔티브를 공표하였다.

132) 2006년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발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중

133) 최민경. (2008), p. 169.

of Korea')은 우리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AfT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아직 한정적이나 AfT를 위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³⁴⁾ 또한 2008 AfT 자기평가 설문조사에도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동인을 적합한 무역 및 경제정책에 있다 보고, AfT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통해 최빈국의 개방무역체제 참여를 통한 혜택제고에 기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¹³⁵⁾

2010년 DAC 가입 이후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1-2015년간 우리 ODA 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운용계획을 담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 “개도국 자립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여 AfT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5대 중점분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무역이 중점 원조분야로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프로그램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도 AfT에 대한 고려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5대 분야 중 공공행정과 산업에너지 분야에 AfT의 한 종류인 경제개발 전략수립 지원이 중점지원 분야로, 수송(도로, 교통, 항만)인프라 구축 비교우위 지원대상 분야로 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 실천전략(Action Plan)으로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하였는데, 이 정책문서에는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분야별(경제/사회/행정제도, 거버넌스/미래, 범분야 이슈 등 4대 영역 11대 분야)로 정리하여,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정리·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4대 영역 중의 하나인 경제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직간접적으로 AfT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CPS 등의 정책 및 사업 기획 시 AfT를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4)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작성 및 발표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7.11.21)

135) 이러한 내용은 2011년도 AfT 자기평가 답변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WTO/OECD. (2007b);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Republic of Korea.)

[표 60] AfT 관련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4대 영역	11대 분야	AfT 직·간접 관련 프로그램
경제영역	경제정책	WTO 가입 프로그램, FTA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경제자유 구역 운영, 무역인력 양성, 통관시스템 개선, 무역관련 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수출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산업개발 정책 자문 등
	국토개발	공항 인프라 구축, 도시철도 및 경전철, 철도현대화 등
	농어업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에 등
사회영역	보건복지	-
	교육	-
	인적자원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고용 지원 및 관리
	과학기술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등
행정제도·거버넌스	정부효율화	-
	법제도구축	관세·조세행정 구축, 법체계 구축 등
	부패방지	-
미래·범분야 이슈	녹색환경	-
	ICT	-
	여성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KOICA는 2011년 1월 내부적으로 AfT 전략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전략안에서 KOICA는 AfT의 추진 목적을 개도국이 세계 무역질서에 편입되어 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빈곤완화, MDGs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개도국의 무역 참여 확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실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fT의 기본 원칙으로 개도국의 발전 단계, 국가개발계획 및 빈곤감소전략 등 개도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 현재 개도국의 여건과 수요,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노하우를 개도국과 효과적으로 공유,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접근하여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ICT, 산업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서의 지원 전 과정에 AfT의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AfT 지원분야별 추진 사업(안)과 전략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AfT 전략이 내부적으로 실행되거나, 이행

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AfT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기본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61] KOICA 내부 AfT 지원전략(안)

분야	세부 내용
무역정책 및 규범 수립 지원	협력대상국 무역관련 공무원 및 기타 관계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WTO 가입 지원, 무역진흥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
무역관련 인프라 개선	도로, 항만, 전력 등 대형 인프라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프로젝트 지원. 특히 이 분야는 지역 및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효과성 제고 또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PPP) 형태 시도
무역관련 역량 강화	금융, 농림수산업, 광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므로 새마을운동, 식량증산, 원조이용경험 전수로부터 생산 프로세스 및 수출상품 품질 개선, 기술개발 및 인재 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자원 활용 방안 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식 개발·활용

한편, KOICA는 5대 중점분야의 하나이자, AfT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제개발 전략수립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 추진전략에서 KOICA는 CPS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CPS에 기반을 둔 사업기획 및 실행, 평가를 통해 전략과 실제사업간 연계 강화하고 있다고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¹³⁶⁾ 또한 국제기구 및 타 선진공여국의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시민사회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정책 및 계획 세부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경제발전 정책과 이행 계획 부문에 대한 중점 지원(규모 및 내용 강화)을 통해 다른 공여국 ODA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글상자 8] KOICA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방안

1. 목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배양
2. 지원대상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의지를 보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학습 및 적용에 관심이 높은 협력대상국 및 체제 전환국 등
 - ※ 협력대상국의 복잡한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적합한 경제개발 정책 자문을 수행할 국내 전문인력 부족(현지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공동연구 추진하여 보완)

136) 한국국제협력단. (2012).

3. 지원전략

- 1단계(역량강화) 중·단기 연수생초청, 중장기자문단 파견 등을 통해 경제기획 및 관리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 2단계(정책수립) 현지 경제·사회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수립, 산업개발정책 수립, WTO 가입 준비 지원 등 자문을 통해 각 분야별 구체적 발전전략 마련 지원
-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정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경제운용에 필요한 각종 전략과 틀의 활용방안 자문
- 3단계(프로젝트) 정책자문 결과와 연계하여 증권시장 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제하에서 적응하기 위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또는 정착 지원
- ※ 각 협력대상국 상황에 따라 개별, 단계적 또는 통합적 접근 가능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2).

3) 분석 및 평가

(1) 무역 정책일관성

가.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한국은 1970~80년대 경제발전 시기에는 수출우대금융, 수출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도입,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의 성격을 띤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규범,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를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DDA 협상에서 농업 민감성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일부 비신자유주의적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2] 한국 주요 무역정책과 AfT정책 분류

	신자유주의(자유무역) 옹호	비(非)신자유주의(보호무역) 옹호
통상 정책	•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규범,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 추진 • DDA협상에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 • WTO TRIPS 규정을 보다 강화(TRIPS-plus) 하는 별도의 협정에 가입 • 무역원활화 부문 협상 주도 및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 지원 노력	• DDA 협상에서 농업 민감성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된 기존 협상안 안정화를 위해 노력 • 70년대 수출우대금융, 수출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관세환급제도), 수출생산용 중간재 투입과 수출판매에 대한 내국간접세감면,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소모 허용제, 주요수출산업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제 허용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도입·추진
AfT 정책	•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서 최빈국 무관세·무쿼터 수입품목의 확대,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기여확대를 통한 최빈국 무역역량배양 지원확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등 기업인간의 교류 확대지원 등을 제안 • WTO 가입 프로그램, FTA로드맵 및 협상전략, 경제자유구역 운영 등이 주요 한국형 ODA모델 추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실현 도모하는 것이 AfT 전략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주: 분류기준에 부적합한 정책 미포함
출처: 저자작성

한편, AfT 정책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AfT 전략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AfT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보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現) 통상정책과 AfT 정책은 모두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무역과 개발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도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분야와 타 정책 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 구축 및 시범실시 검토(대외경제·외교정책 수립 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PCD 실무조정 협의)하는 것을 도입·추진하고 있다.¹³⁷⁾

나.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한국은 일본,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의 타공여기관과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협의과정의 및 공동분석·평가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¹³⁸⁾ 특히 베트남에서는 6개 개발금융기구 모임(Six bank group), 원조 공여국 회의, 원조효과성 포럼(Aid effectiveness forum), 자문그룹회의(Consultative Group Meeting), 공여기관 분야별워킹그룹 등을 통해 공여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의 과정이 AfT만을 위한 협의체는 아니지만, 각 국별 원조계획 수립 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AfT 관련 논의 역시 기존의 공여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다.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한국은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OD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¹³⁹⁾ CPS 수립 시에도 한국의 중점지원 분야 중에서 수원국의 국가 개발계획과 일치하거나, 수원국의 요청이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CPS를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AfT의 경우 CPS 수립 시에 별도의 분야로 고려되거나, 범분야와 같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CPS 수립 및 사업 발굴 시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 실시하고, 관계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대표단 구성을 통해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정책 협의를 이미 실시완료한

13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138)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Republic of Korea: 최민경. (2008), p. 84.

13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바 있다.¹⁴⁰⁾ 따라서 향후 Aft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사업 기획 시에 이러한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여국-수원국 간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아직까지 한국은 Aft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개도국의 무역활성화 지원, DDA 협상 타결 지원을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개도국의 무역체제 편입을 지원하고, 더 많은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분석 결과 한국은 국가 내 무역(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국가협력계획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3]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정리

항목		세 부 내 용
1. 정책	가. 무역 정책 일관성	① 공여국 내(內) 정책일관성 - 서비스 시장, 금융시장 개방, 전면적 관세 철폐 등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여전히 보호무역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Aft 정책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 양호한 편임.

14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1. 정책	가. 무역 정책 일관성	② 공여국 간(間) 정책일관성 - CPS 수립 시 다른 공여국과의 협의 실시 ③ 공여국-수원국 간(間) 정책일관성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또는 전략에 연계되어 CPS 수립 - 국가협력계획에 무역부분을 독립 섹터로 다루지 않고,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한 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서 무역개발정책을 접목은 가능한 상황
	나.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DDA 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체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출처: 저자작성

다만, 아직까지 한국은 AfT를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고려하여 중점분야로 선정되거나, CPS 수립 시의 고려사항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형 ODA 추진모델 정책문서에서 AfT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제영역을 4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다양한 협의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fT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거나 전략적 이행 체계를 수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의 AfT 사업 수행 방식

1) 사업 시행 (계획·이행·평가)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계획을 통해 5대 중점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CPS 수립체계에서는 한국의 중점분야 중 수원국의 요청분야 또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의 중점분야와 겹치는 분야를 선택하여 CPS 중점분야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5대 중점 분야에는 공공행정 분야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일부 하부 프로그램만이 AfT와 관련이 있을 뿐, AfT 사업이 중점분야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무역정책 및 규범 분야(세관능력배양, 통상협상능력 강화 연수 등)처럼 AfT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AfT 사업이 시행은, AfT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발굴·기획되어 추진된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AfT가 특정 분야(Sector)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전략문서에서 AfT를

범분야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에도 AfT 사업은 중점분야 및 CPS 상의 중점분야의 하부 사업으로 기획 및 시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AfT 전략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AfT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할 때 협력대상국 및 지역기구, 기타 공여기관과 공동협력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¹⁴¹⁾ 2009년 KOICA 아프간과 라오스에서 시행된 직업훈련소 건축 사업에 KOICA-GTZ 공동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 평가비중 확대 및 현지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수혜자 중심, 현지 중심 평가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¹⁴²⁾ 아직까지 AfT 사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AfT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원조형태(Aid modality)

(1) 프로그램 사업

한국의 ODA 모델 추진 방안 정책 문서에서 한국은 향후 기본 OD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여, 단위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완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단순 프로젝트형 사업을 지양하고,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결합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예산지원 방식(Budget Support) 등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및 단계적 확산하겠다고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¹⁴³⁾ 이 정책문서의 중점분야의 하나인 경제 분야는 사실상 AfT와 같은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AfT 지원 방식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예측된다.

141) Aid for trade 2011 self-assessment: Republic of Korea, www.aid4trade.org.

14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14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한편, KOICA 공공행정 분야 지원으로 분류되는 일부 AfT 사업의 경우 상기 문서와 같이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행정 추진전략에서 밝히고 있다. KOICA 공공행정 분야 추진전략은 ① 다양한 사업형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② 정책자문 사업 추진 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발굴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와 사전 네트워크 형성, ③ 정책자문 사업 후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및 관련 NGO 지원, 중장기 자문단 파견, 사후관리 등 다양한 사업형태의 사업을 발굴, 연계하여 추진 ④ 정책자문 사업에 소규모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포함하여 추진,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 사업 연계실시를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등 타 기관 사업과 연계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공유,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이다. 또한 향후 사업 계획 시 활용 가능하도록 경제개발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유형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표 64] KOICA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 사업예시

전략목표 1.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사업목적	지원활동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1-1.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1-2. 거시경제 예측모델 개발 및 운용 1-3. 경제통계 작성 및 관리 1-4. 경제연구소 건립
2. 시장경제 이행지원	2-1. 시장경제 제도 구축 및 운영 2-2. WTO 가입 지원 2-3. 경쟁법 도입 및 확산 2-4. 공기업 민영화 2-5. 증권시장 도입 및 운영
3. 산업정책 개발 및 운영능력 제고	3-1. 산업개발 정책 수립 3-2. 수출 활성화 전략 마련 3-3.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2).

이러한 사업형태 연계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에서 시행된 베트남 증권 거래 역량강화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복합형 사업으로 1996-2002년 7년에 걸쳐 3차 사업으로 장기간 추진되었으며, 1차 정책 및 법·규제 등 제도 구축 자문, 2차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및 운영모델 제시, 3차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핵심적 제도를 구축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65] KOICA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 시행 예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형태	• 경제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배경 및 목적	•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은 개도국에게는 최적의 발전모델로 적합하며, 한국을 배우고자하는 요청이 점증하고 있음. •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MDGs 1 MDGs 8
사업대상 국가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체제전환국 • 대외개방 및 체계적 경제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	
사업규모/기간	• 3백만 불 / 3년 이내	
성과지표	•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자문 및 비전 제시 등 주요 연구기관(Think-tank)으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 • 지식정보 연구, 공유 및 확산 여부	
주요 사업수단	• 경제연구소 건축 • 전문가 파견 및 자문 • 관련 기자재 지원 • 연수생 초청	
투입 요소별 소요 예산(안)	[총사업비 : 300만 불] • 연구소 건축 : 220만 불 • 기자재 지원 : 50만 불 • 연수생 초청 : 10만 불 • 전문가 파견 : 10만 불 • 사업관리 : 10만 불	
추진사업	• 팔레스타인 경제개발연구소 건립사업('08~'09/250만 불) • 베트남 경제연구소 지원 사업('94~'95/80만 불)	
주요 고려사항	•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자문기능 역량강화 및 발전경험과 협력국 환경에 부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성숙도 조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형태	• 경제개발 전략 수립 자문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와 제도 구축 지원	
사업배경 및 목적	•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은 개도국에게는 최적의 발전모델로 적용 가능하며, 한국을 배우고자하는 요청이 점증하고 있음. •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MDGs 1 MDGs 8

사업대상 국가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체제전환국 • 대외개방 및 체계적 경제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	
사업규모/ 기간	• 2백만 불 / 3년 이내	
성과지표	•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수립 여부 • 공기업 민영화 비율 등 자본시장 체제 준비도	
주요 사업수단	• 공동연구 및 자문 등을 통한 경제개발정책 수립 지원 • 인적자원 교육장비 지원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 정책 워크숍	
투입 요소별 소요예산 (안)	[총사업비 : 200만 불] • 연구 및 자문 : 70만 불 • 기자재 지원 : 20만 불 • 연수생 초청 : 40만 불 • 전문가 파견 : 60만 불 • 기타 : 10만 불	
추진사업	• 알제리 국가산업정책 및 이행계획 수립사업('07~'08/100만 불) • 알제리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08~'09/150만 불) • 베트남 한국개발경험 전수사업('10~'11/100만 불) • 요르단 투자촉진을 위한 전략수립사업('10~'11/100만 불) • DR콩고 국가개발전략 수립 지원 사업('11/220만 불)	
주요 고려사항	• 한국적 개발경험의 개도국 현황과의 부합성, 개도국의 적응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자본시장 도입을 위한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성숙도 조사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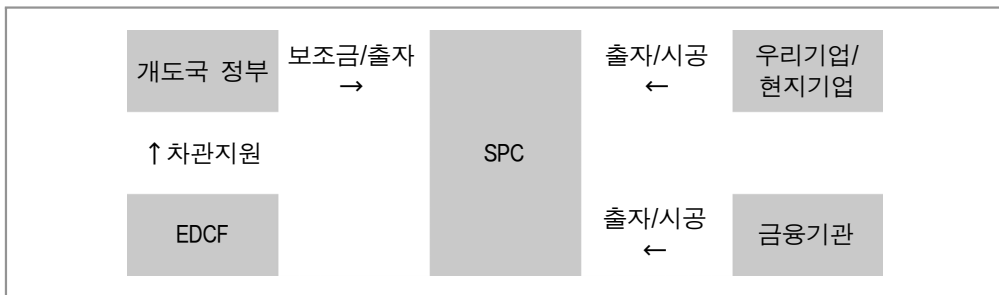
(2) 민관협력

아직까지 한국정부 및 실행기관에는 공식적인 AfT 전략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PPP를 통한 AfT 추진 전략 역시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유·무상협력 분야에서 모두 PPP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AfT 사업이 PPP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 먼저 한국정부는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통해 유·무상협력 분야의 PPP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AfT와 관련된 유상협력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전략으로 ① 개도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 자금으로 지원, ②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일부분을 EDCF 자금으로 지원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제고, ③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부수되는 공공사업(주변 진입도로·연결도로 등 배후 교통시설, 발전소 송·변전 시설 등)을 EDCF로 지원 등의 다양한 민-관 연계 사업모델 수립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 EDCF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의 경우 AfT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 유상 AfT 분야 사업이 PPP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EDCF는 2011년 솔로몬 군도 어항 개발 사업을 민자사업(PPP) 방식으로 최초 지원 추진한 바 있다.¹⁴⁴⁾ 또한 EDCF는 사업 관련 컨설팅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컨설팅 영역, 교육·보건 등 사회분야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NGO 참여 추진하는 등 개발 NGO와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¹⁴⁵⁾ 이밖에도 유상 분야 민관협력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2012년 복합금융팀을 신설하고 「EDCF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¹⁴⁶⁾

[그림 5] EDCF를 통한 민자사업(PPP) 추진 모형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무상분야 민관협력 확대 전략으로는 2015년까지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10배 수준으로 확대(‘10년 90억 원 → ‘15년 900억 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단체 지원방식

144) 동 사업의 경우 협의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이외에도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등 민간 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민관협력을 활용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14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14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을 다변화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¹⁴⁷⁾ 이에 따라 KOICA도 NGO 및 PPP 사업 지원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KOICA는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마련 및 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PPP 사업의 발굴·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¹⁴⁸⁾ 베트남에서 PPP 방식으로 시행된 AfT 사업의 예로는 포스코건설이 추진 예정인 베트남 동나이성 빈곤지역 청년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용접직업학교 설립 및 운영사업, 카자흐스탄에서 대성에너지가 2011년 시행한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 식수공급 및 녹색 마을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ODA 사업의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출범한 민관협력연대인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의 시범사업 추진 시 AfT 측면을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3) Non-ODA 지원

유상협력 분야에서 EDCF는 원조자금 외에도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 여타 공적 자금 및 민간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과 함께, 수출금융과의 연계 사업 추진이 시 작단계에 있는 상황이다.¹⁴⁹⁾

(4)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아울러 한국의 무역관련 지원은 주로 역량강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관련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에 주류화(Mainstreaming)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⁵⁰⁾ 또한 WTO DDA 글로벌 신탁기금(WTO DDA Global Trust Fund)에 참여하여 2012년 3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1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148) 한국국제협력단. (2010).

149)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권경석 보도자료, 2011.10.4 “EDCF와 수는 정책금융 연계해야”

150) 최민경. (2008), pp. 169-170.

[표 66] KOICA AfT(경제개발) 관련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사업 개요

항목	세 부 내 용
전문가 파견 및 중장기 자문단 파견 사업	- 사업시기 : 1991년 이후 ~ 현재 - 파견규모 : 전문가 315명 및 중장기 자문단 6명 - 주요활동 : 경제개발, 행정제도 등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정책 노하우 및 지식전수가 필요한 분야인 조세행정, 출입국관리, 증권거래, 무역진흥, 중장기 개발계획, 금융시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등 관련 정책 및 제도 컨설팅 - 주요성과 : 순수 ODA성 정책 자문 및 기술전수를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도모
장·단기 초청연수사업	- 사업시기 : 1991년 이후 ~ 현재 - 파견규모 : 1,278과정 20,364명 - 주요활동 : 개도국 발전을 위한 분야별 수요를 반영, 경제개발전략, 조세행정 발전, 수출 및 무역투자 진흥, 공무원 행정발전, 반부패 역량 강화, 법 정비, 선거관리 역량강화 등 과정의 단·중기연수(기본/특별연수), 장기연수(석사학위 과정), 공동연수(국제기구, 양자 원조기관 및 제3국 연수) 제공을 통해 개도국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하우 및 지식전수 - 주요성과 :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 및 조직역량 강화와 제도구축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 우호협력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2).

3) 소결

한국의 AfT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67]과 같다. 분석 결과 한국은 아직 공식적인 AfT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대 중점 분야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AfT 관련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역관련 인프라 사업과 같이 AfT를 간접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AfT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AfT를 특정 분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문서에서 AfT는 범분야 이슈와 같이 주류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다. AfT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시행되었던 AfT 사업에서 공동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향후 수원국 및 타 공여국들의 평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

[표 67] 한국의 AfT 사업 분석

항목		세 부 내 용
2. 사업	가. 사업 시행	- 한국 국제개발협력 5대 중점분야와 수원국의 요청을 반영하여 CPS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 - AfT를 분야(Sector)로 다루지 않으며, 주류화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5대 중점분야 하부 프로그램으로 AfT 사업이 시행된 바는 있으나, 정책이나, 사업 기획 단계에서 AfT가 고려되지는 않음. - 단일화된 AfT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가 존재하지 않음. - 필요시 수원국 및 지역기구, 기타 공여기관과 공동평가 시행
	나. 원조형태 (Aid modality)	① 프로그램 사업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노력 - KOICA도 AfT의 하나인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형태별 연계 실시 등을 추진 ② 민관협력 - 유상원조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과 연계 추진하는 다양한 민간연계사업모델 수립 - EDCF는 2011년 솔로몬 군도 여항개발 사업에 민자사업 방식 도입 - 무상원조도 한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마련 및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PPP 사업 발굴, 지원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연대 시범사업 추진 시 AfT 고려하는 방안 도입 여부 논의 중 ③ Non-ODA 지원 - 유상원조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재정지원(financing) 방안 검토 ④ 기타 원조형태 관련 이슈 - 한국은 AfT를 주로 역량강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음. - WTO DDA Global Trust Fund에도 지원하고 있음.

출처: 저자작성

한편 한국은 경제개발 수립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AfT 관련 공공행정 분야 추진 전략에서 AfT 사업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었고, 유무상 사업 연계, 사업형태별 연계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PPP 확대, 비원조서 금융 활용 등 AfT 관련 사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8]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Aft 사업, 2009-2010

Aft 분야	사업 분야	자금 형태	사업명	사업설명
무역 관련 인프라	도로운송	양허성 차관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베트남과 중국 간 'One Economic Belt, Two Corridor'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 벨트 구축 /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 하이퐁 신히안 등 지역개발 추진에 따라 가증되는 교통 혼잡 해소
		양허성 차관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투바이 ~ 켄 14호 교량 구간)	1. 사업 대상 지역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건, 교육, 고용 환경 개선 / 2. 교통·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촉진 / 3.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의 완성을 통한 캄보디아, 태국과의 교역 및 인적 교류 확대
		양허성 차관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사업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효율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포괄적 성장기반(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구축 / 지역 내 농공산업 생산·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자원 제고 / 지역 내 민간부문 투자 촉진 / 주변 메콩강 유역국가와의 지역연계성 확대 / 기초적 사회·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철도운송	무상	베트남 철도운영 현대화	운영, 차량, 전기, 시설유지보수 등 한국철도산업의 현황, 철도경영정보시스템 등
	항공운송	무상	ICAO 공동연수(10~12) - 공항운영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강의들과 산업시찰로 구성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무상	아중동 에너지 협력	한국의 에너지 수급정책 및 에너지기반 경제개발전략 등에 관한 강의,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등
생산 역량 강화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무상	아세안 등 공무원 초청연수	- 역내 금융정책/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 외환위기 극복경험 공유 및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 한국 금융인프라에 대한 이해 제고 -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강화 및 중앙아시아 대상 자원외교 기반 구축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무상	개도국 여성을 위한 e-Biz 교육훈련	여성정책결정자 및 경제인을 위한 e-Biz 정책 교육 - 기간 : 3주(2회) - 목적 : 개도국 내 여성역량 강화 - 참가자 : 19개국 58명

생산 역량 강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무상	201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베트남)	경제 구조조정 전략,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 유도방안, 국영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경제특별 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혁신능력 강화 인력육성 전략 등
	농업관련 교육/훈 련	무상	베트남 감자 생산 및 가공 기술지원	가공용 감자산업을 베트남 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생산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무상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이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간의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상호 협조관계 구축 및 정보교류임
		무상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	ASEAN 국가 등의 식물검역 전문가를 초청 하여 식물검역 관련 제도 및 기술을 전수
	어업 개발	무상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수산물 HACCP 법령, 제도, 현장 적용에 대한 강의 및 현장 견학 실시
	중소기업 개발	무상	아시아 중소기업경영 연수사업	아시아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 첨단 경영기법 및 한국 경제개발경험 전수
		무상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현지생산기술연수사업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가 중소기업 기술자 및 엔지니어와 기술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연수 실시
		무상	COLOMBO PLAN 공동연수 - 산업발전과 중소기업정책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이론강의와 현장학습, 산업시찰로 구성
	기술연구 개발	무상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참가국가와의 기술협력 및 무역거래 증진
무역 정책 및 규범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무상	세관통관관리자동화 및 위험관리 세미나	세관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통관원활화 및 위험관리 효과성 제고
		무상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강의들과 산업시찰로 구성
	무역진흥	무상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세미나	아세안 회원국 세관공무원 초청, 통관절차 간소화, 정보화 등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훈련
		무상	베트남 무역투자진흥정책 벤치마킹 지원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무역투자진흥에 기여
		무상	ASEAN 고위급 관세행정기법	강의를 바탕으로 통관절차 선진화 및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전수 및 ASEAN 공무원들의 정책 수행 역량 강화를 도모함

무역 정책 및 규범	다자간 무역협상	무상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이론강의와 현장학습, 산업시찰로 구성
		무상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강의들과 산업시찰로 구성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 개선 및 무역 관련 ODA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1. 정책기관의 과제

1) AfT 확대 및 강화

첫째, 한국은 AfT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단기 간에 최빈개도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함에 있어 무역의 큰 역할을 하였으며, 다수 개도국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개발 및 무역정책 경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공유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의제의 채택을 주도하였는데, G20 개발의제는 무역에 대한 접근 및 무역 역량이 빈곤 해소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 아래 저소득 국가들 간의 무역 촉진을 약속하였으며, AfT 관련 2006-2008년 3년간 평균액을 유지한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2011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력으로서의 AfT를 강조하며, 개도국의 원조 의존성 탈피 및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무역을 활용한 개발경험 공유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 한국이 주도하여 채택되게 된 무역 관련 의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도 AfT 확대를 통한 G20 개발 의제 및 부산총회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AfT 정책 수립

둘째, AfT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G20 개발의제 및 부산총회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AfT 정책 또는 전략

의 수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AfT 정책문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AfT와 같은 분야인 경제성장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개발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동시에 USAID도 자체적으로 AfT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JICA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AfT와 동일 분야인 경제성장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무역관련 별도의 정책도 수립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아닌 다른 공여국 중에서도 현재 AfT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은 중점분야 선정 또는 무역주류화¹⁵¹⁾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AfT 정책 목표, 중점 대상국가·분야, 추진체제 등을 담고 있는 AfT 추진 전략 지침(strategy paper)을 수립·시행함으로써, AfT가 원조정책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²⁾

한국의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 증대 및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 등 커져가는 AfT의 중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공여국과 달리 AfT 추진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문서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먼저, 「2011-2015 분야별 ODA 기본계획」 상에는 무역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점 분야도 무역이나 무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같은 분야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정책문서만을 보면 한국이 무역을 중점분야나 주류화 어느 방식으로든 정책레벨에서 AfT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2년 9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 실천전략(Action Plan)으로 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의 경우, 4대 중점 영역에 경제영역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제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두 AfT를 직접목적 또는 간접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무역이 중점분야로 보고 AfT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은 이 문서가 「2011-2015 분야별 ODA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서, 향후 한국의 ODA가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 제시된 중점영역과 세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 또 하나의 별도의 문서로

151)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수원국의 개발계획에 무역을 통한 성장 방안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면서, 공여국의 원조 정책에서도 원조분야의 선정 및 세부 원조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무역을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적용 방법이다.

152) EU는 2007년 전략지침을 채택, ‘무역정책 및 규제’와 ‘무역개발’에 초점을 맞춘 원조 증가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8년 전략지침 채택 및 2011년 무역투자백서 등을 통하여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에서 무역이 중심과제이며, 개도국이 직면한 수출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발표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일은 2010년 전략지침을 발표, 무역의 주류화를 위하여 AfT를 범분야 이슈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홍철·이호생·이시욱, (2011).)

서, 권고의 기능밖에 없는 문서인지가 불분명하다.

전자일 경우에만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개발정책에서 AfT를 하나의 중점영역으로 접근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두 문서상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개발정책에서 AfT 관련 내용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 분야별 ODA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영역 이외의 다른 중점 분야에도 인적자원 개발 등 AfT 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AfT를 총괄하는 주류화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상기 두 정책문서의 관계가 후자의 경우로 해석이 된다면, 한국 정부는 개발정책에서 무역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AfT 관련 정책의 수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ODA 중기 기본계획상 5대 분야가 이미 확정되어 추가적인 분야 지정이 어려우므로, 개별 원조사업 추진 시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 원조 사업의 각 단계에서 AfT 측면을 적용 추진할 수 있는 주류화 방식을 도입한 AfT 정책이 이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AfT를 범분야로 보고 주류화를 추진하는 AfT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2016년 이후 분야별 ODA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AfT정책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AfT 명시적으로 반영할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무역정책과 AfT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

셋째, 무역과 개발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의 정책일관성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의 필요성 여부 인식 및 도입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69]와 같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통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AfT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9] 무역과 개발 정책 분석 결과 비교

분류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
정책	무역 정책 일관성	공여국 내	양호	미흡 (무역 : 신자유주의 + 비신자유주의, Aft: 신자유주의)	미흡 (무역 : 신자유주의 + 비신자유주의, Aft: 신자유주의)	미흡 (무역 : 신자유주의 + 비신자유주의, Aft: 신자유주의)
		공여국 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공여국- 수원국 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개도국 친화적 무역체제 구축		적극	소극	소극	-

출처: 저자작성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Aft 정책에도 비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무역정책에서의 자국의 비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철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 단계에서 모두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사용했다는 점과 지금의 무역체제에서는 오히려 무역으로 인해 개도국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 후자의 경우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방향의 정책일관성 확보는 더 나아가 개도국 친화적인 무역체제를 구축하고,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체제에서 개도국의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되는 장치들은 제거하고, 선진국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개도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자국의 국내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는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이다. 그렇기에 공여국들의 개발정책과 통상정책이 완벽히 일치하게 수립될 수 없어, 이중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전자의 경우는 기존 자국 시장의 보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의 원조 정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자의 경우보다 추진이 수월할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개발협력 추세

에서 다양한 AfT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고, 각각의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호무역이나 정부주도의 무역정책 추진을 통한 한국의 경제 및 수출사업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AfT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전략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향후 AfT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이러한 방향을 고려하여 무역과 개발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개도국 친화적 AfT를 시행하기 위해 후자의 방식으로 공여국 내 무역과 개발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동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개도국의 성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밝혀졌듯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특히, 3국 모두 농산물 분야의 경우 보조금 지급, 관세 철폐 제외 대상 등의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산품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이 용이한 품목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과 국제사회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해 개도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농산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개도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AfT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과 개발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선진공여국과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국의 시장 개방 등의 노력과 함께 DDA 협상 타결 등 개도국 친화적인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4) AfT 통계 개선 논의 주도

AfT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AfT 지원을 증가시켜 개도국의 무역진흥을 통한 전(全)세계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fT 통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CRS 코드를 사용하여 추적·정리하는 현(現) AfT 통계는 통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AfT로 분류되는 CRS 코드에는 무역관련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 때문에 AfT 금액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AfT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실제 수원국의 무역 증진이라는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수 ODA 사업이 OECD 통계분류상 사후적으로 AfT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경제사회적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도국이 무역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경제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원조가 무역에 기여하는 원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송망 개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무역촉진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인프라 사업과 무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시행되는 인프라 사업과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역마커를 사용한 무역관련 원조 추적 통계에도 한계점이 있다. 인프라 관련 지원이 모두 무역마커의 표시 대상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마커를 사용하여 AfT를 추적할 경우 실질적으로 무역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인프라 관련 사업이 통계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무역마커 부여의 기준이 자세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 공여국별 무역마커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으며, 무역마커의 부여대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여 여부 자체가 아예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CRS 통계 및 무역마커 수정은 모든 DAC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향후 AfT 관련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아젠다가 산정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안의 제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마커의 부여 대상을 지금의 AfT로 분류되는 CRS 코드로 확대하고, 부여 대상 CRS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무역 마커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의 고려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 CRS 코드를 사용한 AfT 통계의 문제점과 무역마커의 문제점이 상호 보완되어, AfT 통계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역마커의 부여를 권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여전히 공여국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AfT 리뷰에서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AfT 통계 대상을 강화하여 기존의 AfT 대상 CRS 코드에 해당하는 지원액 중 직접 목적·간접목적 무역마커를 부여받은 대상만을 AfT 지원액으로 보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

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ODA 사업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기여하는 사업만 AfT 사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AfT 통계 과다계상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동시에 공여국에게 인프라 등의 사업 추진 시 AfT를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행기관의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들은 무역과 개발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개도국 수출 촉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여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도모하는 ODA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AfT의 양적인 확대 및 질적인 개선을 통해 개도국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개도국 친화적 AfT를 개선하여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0] AfT 사업 시행체제 분석결과 비교

분류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
사업	AfT 정책	보유	- 정책기관: 보유 (AfT를 포괄하는 경제성장 강조 원조 정책) - 집행기관: 보유	- 정책기관: 보유 - 집행기관: 보유	미보유
	시행 방식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경쟁력이 중점분야로 선정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별 사업 계획 시 범분야적인 방식 동시 사용 - 따라서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포괄적 경제성장이 중점분야로 선정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별 사업 계획 시 범분야적인 방식 동시 사용 - 따라서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점분야로 선정 - AfT를 단독섹터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에서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경제가 중점 분야로 선정

	AfT 평가 지표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사업	원조 형태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 민관협력 강조 - Non-ODA 적극 활용 - 패키지원조 강조	- C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행 시작단계 - AfT와 민관협력 접목 시작단계 - Non-ODA 연결은 시도 중이나 미미

출처: 저자작성

1) AfT 정책 수립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계은행, 미국, 일본은 모두 집행기관이 AfT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표 70] 참조).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도 별도의 공식적인 AfT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KOICA는 그동안 5대 중점분야의 하부 시행 프로그램으로서만 일부 AfT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AfT 전략을 수립하려는 내부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행이 어려웠으며, AfT가 사업 추진 시 고려되게 실제로 연결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AfT 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 분야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 무역 분야가 독립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AfT에 대한 지위가 불명확하여 AfT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AfT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KOICA는 AfT를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부의 AfT 정책과 방향을 맞춘 AfT 전략 또는 지침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AfT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발굴

향후 KOICA의 공식적인 AfT 전략 또는 지침 수립 시에는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AfT가 고려가 보장되기 위한 조치와 AfT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AfT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사업 발굴 시 AfT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는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걸쳐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AfT가 중점분야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도 AfT와 관련된 사업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AfT를 범분야 이슈와 같이 주류화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사업 발굴 시 AfT가 고려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이 내부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AfT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에서 AfT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체 ODA 사업에서 AfT 직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목표와 관련 지표를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AfT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경우 향후 이 지표들을 사용하여 AfT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AfT 사업의 무역 촉진 또는 기여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평가하여 AfT 사업 효과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평가지표의 경우 OECD가 권고하는 [표 71]의 AfT 달성 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각 단계별 세부 평가 지표는 [부록 2]에 자세히 나와 있다.

[표 71] AfT 성과 및 영향 평가 지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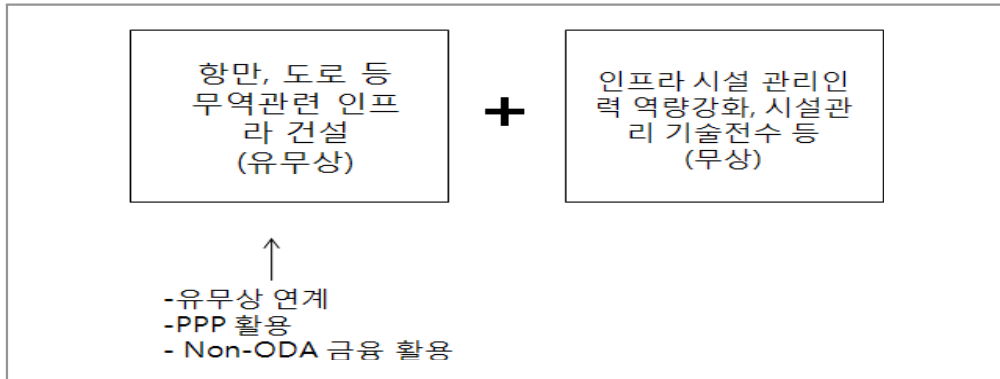
출처: OECD. (2012b).

3) 중점 AfT 프로그램 개발

AfT 추진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AfT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개발된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간 도미니카 등에 통관시스템 현대화 및 역량강화, 캄보디아 및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관련 제도적 역량 및 협상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사업건수나 규모가 빈약하여 한국이나 KOICA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최근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 AfT 관련 ODA 프로그램을 경제영역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인 상황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제영역 프로그램만 71개나 되어, 그 숫자가 다소 많은 편이다. 따라서 KOICA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 제시된 다수의 AfT 프로그램 중 KOICA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구체화하여 KOICA의 AfT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AfT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KOICA 공공행정 분야 전략에서 경제개발 지원전략 수립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방식들을 결합한 좋은 AfT 프로그램의 모델의 예시로 보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다른 AfT 관련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역관련 인프라 사업 추진 시 해당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무역증진 효과에 대한 개발조사 사업, 인프라 건설 위한 건축 프로젝트, 인프라 시설관리 기술을 전수할 전문과 파견 사업, 관리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사업 추진으로 AfT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6] AfT 사업 연계방안



출처 : 저자작성

예산지원 방식(Budget Support) 등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및 단계적 확산,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와의 연계를 통한 PPP 사업 확대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참여하고 있는 AfT 다자기금 기여 확대 등의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식의 AfT 프로그램과 전략을 수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AfT 추진 정책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통해,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AfT의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동 AfT 전략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의 무역 증진이 불균등 성장과 빈곤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적 인프라 구축, 숙련 기술인력 양성, 무역지원 금융 등 적절한 보완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3. KOICA AFT 추진 전략(안)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KOICA의 AFT 추진 전략(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비전 및 전략목표

(1) 비전

- 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통해 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 촉진

(2) 전략목표

- 무역 및 경제개발 전략 수립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경제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 및 경제 운용에 필요한 각종 추진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지원
- 무역관련 법체계 정비 및 행정역량 배양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해 국제무역규범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내 제도·법규 정비를 지원하고, 통관시스템 효율화 등 관련 행정역량 배양
- 무역관련 민간 생산역량 강화
 - 개도국의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 수출기업 육성 등 무역관련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국제무역 참여 촉진
- 무역관련 인프라 개선
 - 개도국의 상품 생산 및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통, 저장, 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개선하여 무역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2) 추진방식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한정된 ODA 재원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집중성·연계성·일관성 강화

가. [집중성]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점 지원

-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등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원조자원을 효율·효과적으로 활용
 -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 및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개발단계에 적합한 산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정부주도의 개발 및 수출 진흥정책과 전략 마련 및 이행 지원
- 전략적 중점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상의 25개 한국 ODA 비교우위 섹터 프로그램, ‘한국형 ODA 모델’ 등에서 선정된 Aft 프로그램 중점 지원 (예: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및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정책자문 사업 확대 추진
 - 전문가 파견을 통한 분야별 정책 및 전략 수립, 제도 개선 컨설팅, 현지 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국내초청연수 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정부 역량강화 지원

나. [연계성] 다양한 사업형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 (예시)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 모델: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수립+산업개발정책 수립+경제기획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개발 등
 - 단순 프로젝트형(Stand-alone) 사업을 지양하고,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결합하는 등 연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자문 사업 추진 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발굴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와 사전 네트워크 형성
 - 정책자문 사업 후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및 관련 NGO 지원, 중장기 자문단 파견, 사후관리 등 다양한 사업형태의 사업을 발굴, 연계하여 추진
- ※ (예시) 무역관련 인프라 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무역증진 효과에 대한 개발조사 사업+인프라 건설 위한 건축 프로젝트+인프라 시설관리 기술을 전수할 전문과 파견 사업+관리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 정책자문 사업에 소규모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포함하여 추진,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 사업 연계실시를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KOICA에서 추진 중인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ject)」 실행 시 AfT 측면을 적용하여 정책 수립 및 지원, 무역 인프라 개선 및 무역 생산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 등 추진 검토
-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기관간 사전협의 강화
 - KSP 등 타 기관 사업과 연계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공유, KOICA, EDCF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다. [일관성] CPS 중심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일관성(PCD) 확보 노력

-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CPS에 기반을 둔 사업기획 및 실행, 평가를 통해 전략과 실제사업 간 연계 강화
 - CPS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AfT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AfT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된 협력대상국의 현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지원 확대
- 개발협력 분야와 타(他)정책 간 정책일관성(PCD)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 구축 또는 시범사업 실시 검토

(2) 「현장과 성과」 중심의 사업 수행체계 정착

사업 발굴·집행·평가·사후관리 전(全) 과정을
‘현장과 성과’ 중심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운영

가. [사업발굴] 재외공관 참여도 제고를 통한 체계적 협의채널 구축

- 개별부처는 수원국과 정책협의 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고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며, 재외공관은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여 필

요한 지원을 실시

- 개별부처는 수원국과 협의 시 재외공관과 정보공유를 강화
-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 확대, 관계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대표단 구성을 통해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내실화
- 현지 실정에 적합한 사업형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F/S)를 강화하고 현지 조사 기간을 확대
- AfT의 범분야적인 특성상 모든 분야 사업발굴 시 AfT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

나. [사업집행] ODA 사업현장의 인력·조직 역량 강화

- KOICA·EDCF 등 주요 시행기관의 현장인력 및 조직역량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집행권한을 대폭 이양 노력 강화
- 개발협력담당관 지정, 현지 협의체 운영, 수원국 협의과정 적극 참여를 통해 공여국 간, 수원국-공여국 간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제고
- ※ ‘ODA 관련 재외공관 역할 강화방안*’(‘10.10월)을 적극 시행 추진
- 수원국 재정·조달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현지실정에 적합한 AfT 지원

다. [사업평가] 통합평가 및 현장중심 평가 강화

- 자체평가와 소위평가 간 역할분담 및 모든 평가결과의 원칙적 공개,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통합 평가 강화
- ※ (자체평가) 소관사업별 평가 → (소위평가) 국가별·분야별 평가 등 범부처 차원 평가
- ※ 평가결과 비공개 여부는 평가소위 심사를 거쳐 결정
-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 평가비중 확대* 및 현지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수혜자 중심·현지 중심 평가 강화
- ※ (예시) 수원국 공동평가 비중 : (‘13) 10% → (‘14) 30% → (‘15) 50%
- AfT 성과지표 풀 구축을 통한 평가체계 내실화 추진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 의무화 및 주기적 보완

- 수원국 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점 AfT 프로그램’ 및 국가

협력전략(CPS)을 주기적으로 보완(3~5년 단위)

- ODA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결과 활용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토록 의무화

(3)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국내외 다양한 ODA 주체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가. 국내 관계기관(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간 협력 강화

- 무역 분야 및 AfT 정책 개발, 제도 도입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기재부·외교부·EDCF·KOICA·KOTRA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경험 콘텐츠 확보 및 활용
 - 분야별 협의체 및 관계부처 회의 등 협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 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
 - 사업기획-결정-집행-평가 등 단계별 관계부처 참여를 강화하여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고 ODA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관계기관 간 인력교류 실시,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상호 이해 확대
- ※ 「관계부처-KOICA-EDCF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12. 下, 기재부·외교부·EDCF·KOICA)

나. 정부-민간 부문 간 협력 활성화

- 정부와 민간 부문 간 협의채널 구축, 협력사업 지속 확대와 함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수립
- ※ (예시) 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정기회의, 총리실-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간 정책 설명회 등 활용
-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협회 등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 － 2012.8월 출범함 개발협력연대의 시범사업 추진 시 AfT 측면 고려하는 방안 도입

※ 개발협력연대는 현재 7건 제안사업 중 3개 사업을 2013년 중 선정·추진예정

다.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 수원총괄기관 및 우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원국 개발전략과 AfT 사업 간 연계 등 주요사항 협의를 통화 원조조화 및 정책일관성 강화
- ※ (수원국) 수원 총괄부처, 중점분야 주관 부처 및 재정·인사·조직 전담 부처 등
(우리측) 재외 공관, 현지 KOICA·EDCF 사무소 및 관계부처
 - 수원국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국가개발계획, PRSP 등을 반영하여 CPS를 수립하고, CPS 체계 안에서 AfT 사업을 발굴 및 시행
-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평가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평가의 현장성 확보
- ※ (예시) 수원국 공동평가 비중 : ('13) 10% → ('14) 30% → ('15) 50%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 국제기구, 선진원조 기관, NGO와의 협력 강화
 - AfT 사업 수행 인프라 및 노하우가 우수한 선진 공여기관, 국제기구(다자기구를 통한 양자사업, multi-bi) 또는 NGO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
 - 선진국, 신흥 공여국 및 AfT 관련 다자기금 등과의 협의 활성화(Aid Architecture) 등 원조조화 및 정책일관성 강화
- G20 개발의제 및 부산총회의 AfT 관련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국제개발 논의의 주도적 위치 구축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의제 및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문서에서 개도국의 원조 의존성 탈피 및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시 채택된 서울 개발컨센서스는 수원국의 생산능력 배양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과 원조효과성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을 강조함.

- ※ G20 개발의제: 무역에 대한 접근 및 무역 역량이 빈곤 해소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개도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 간의 무역 촉진을 약속하였으며, Aft 관련 2006-2008년 3년간 평균액을 유지한다는 공약
- ※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력으로서의 ‘Aft’ 언급

3) KOICA Aft 지원 전략

(1) 무역 및 경제개발 전략 수립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경제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 및 경제 운용에 필요한 각종 추진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지원

- (세부목표 1) 경제개발 전략 수립능력 배양
 - 국가경제의 장기적 운용계획 수립, 대내외 경제 질서 확립 및 과세기반 확충·재정관리 등 경제 인프라 구축
- ※ 특정 국가의 수출 증가 및 수출역량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출(또는 통상) 정책과의 연관성상에서 경제개발 전략 수립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경제 운용에 필요한 각종 전략과 틀의 활용방안 자문
- (세부목표 2) 시장경제 이행 지원
 - 글로벌 경제하에서 적응하기 위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또는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수원국의 자본시장 육성, 경쟁법 도입 및 확산, 시장경제 제도 구축 및 운영을 지원
- (세부목표 3) 수출촉진 정책 수립 및 운영능력 제고
 - 현지 경제·사회 구조 부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 수출지원 기관 및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제공
 - 정책자문 결과와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출지원 기관 설립 등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수원국의 수출 촉진 지원

(2) 무역관련 법체계 정비 및 행정역량 배양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해 국제무역규범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내 제도·법규 정비를 지원하고, 통관시스템 효율화 등 관련 행정역량 배양

- (세부목표 1) 무역협정 체결 지원
 - WTO 협정, 지역무역협정 체결 준비를 위한 국내 규제개혁 및 법체계 정비 지원
 - 관세평가, 수입자격증, 원산지 규정 등 WTO 규정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지원 제공
 -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능력 강화 지원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 수립 지원
- (세부목표 2) 통관·관세행정 효율화 지원
 - 무역촉진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시스템 효율성 개선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통관·관세 행정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3) 무역관련 민간 생산역량 강화

개도국의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 수출기업 육성 등
무역관련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국제무역 참여 촉진

- (세부목표 1)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지원함.
- ※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할 경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부패를 방지가 용이
해서 열악한 유통망의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용 농산물의 품질관리시스템, 식품검
역시스템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술 지원
- 안정된 판로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 개발, 자체 브랜드 제
작 등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함.

-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집하 및 보관시설 건립, 유통 네트워크 구축,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촌 운송 시스템 개선 지원
- (세부목표 2) 산업정책 개발 및 수출역량 제고
 - 산업화 및 고도화 준비에 필요한 산업정책·제도형성 역량 확충
 - 중소기업·경공업 육성 지원 등 수출산업 육성
- (세부목표 3) 수출산업 기능인력 양성
 - 지원 국가별 발전 잠재력(산업발전단계, 기술인력 수요 등)과 주요 수출 산업을 고려한 중점 인력양성 분야(자동차 정비, ICT, 자동제어, 산업설비,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를 선정하여 지원함.
 - 단순 기능인력 양성보다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기존의 직업훈련 시설과 차별화
 - 경제발전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산업발전에 필요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 표준 자문, 기술 분야 국가자격검정시험 시행 및 관리 기관 설립 등을 지원

(4) 무역관련 인프라 개선

개도국의 상품 생산 및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통, 저장, 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개선하여 무역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 (세부목표 1) 물류인프라 구축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을 위한 교역에 필수적인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유통시스템 개선,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공급망과 수송망의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비용 감소 추진

[표 72] KOICA Aft 전략(안)

비전	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통해 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 촉진	
전략 목표	☐ 무역 및 경제개발 전략 수립 ☐ 민간 생산역량 강화	☐ 법체계 정비 및 행정역량 배양 ☐ 무역인프라 개선



기 본 방 향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파트너십 강화
-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점 지원 - 사업형태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국가협력전략(CPS)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일관성 확보	- 체계적 현지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 협력대상국 현장 중심의 사업역량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국내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정부-민간 부문 간 협력 활성화 -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 국제사회 협력 강화

출처: 저자작성

[표 73] KOICA Aft 프로그램별 사업예시

사업목적	지원활동	한국형 ODA 추진 모델 프로그램	KOICA 5대분야 25개 중점 프로그램
전략목표 1. 무역 및 경제개발 전략 수립			
1. 경제개발 전략 수립능력 배양	1-1.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1-2. 거시경제 예측모델 개발 및 운용 1-3. 경제통계 작성 및 관리 1-4. 경제연구소 건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거시경제 운용·관리 / 효율적인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공공행정분야: 경제개발 수립지원 프로그램
2. 시장경제 이행지원	2-1. 시장경제 제도 구축 및 운영 2-2. 경쟁법 도입 및 확산 2-3.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 육성 /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 /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자문	공공행정분야: 경제개발 수립지원 프로그램
3. 수출촉진 정책 수립 및 운영능력 제고	3-1. 수출 활성화 정책 수립 3-2. 수출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3-3. 경제자유구역 설립 및 운영	한국의 원조수혜경험 활용 / 무역인력 양성 / 경제자유구역 운영 /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 수출지원 기관(KOTRA, KITA) 설립 및 운영 /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공공행정분야: 경제개발 수립지원 프로그램
전략목표 2. 무역관련 법체계 정비 및 행정역량 배양			
1. 무역협정 체결 지원	1-1. WTO 가입 지원 1-2. 지역무역협정 체결 지원	WTO 가입 프로그램 / FTA 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공공행정분야: 경제개발 수립지원 프로그램
2. 통관·관세행정 효율화 지원	2-1. 통관시스템 개선 2-2. 관세행정 구축	통관시스템 개선 / 관세·조세행정 구축	
전략목표 3. 무역관련 민간 생산역량 강화			
1.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1-1. 가공처리 1-2. 유통망 개선 1-3. 마케팅 활성화 1-4.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	농촌종합개발 /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 농업생산 기반 구축 /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 농업인력 육성 / 가축사육 및 관리 / 농지제도 및 관리 / 농업협동조합 /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 친환경농업 / 영농 기계화 /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 어항개발 / 산림녹화 / 수산 양식기술 전수 / 임산 자원 개발 / 농촌특화사업개발 / 가축질병 관리	농림수산 분야: 농촌개발 사업, 산림보전 역량강화

2. 산업정책 개발 및 수출역량 제고	2-1. 산업개발 정책 수립 2-2. 수출화 활성화 전략 마련 2-3.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산업단지 개발 / 산업개발 정책 자문 /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산업 개발 정책 지원 / 경공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 녹색산업 육성 지원 /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공공행정분야: 경제개발 수립지원 프로그램
3. 수출관련 분야 기능인력 양성	3-1. 직업훈련원 설립 3-2. 기술분야 자격검정제도 도입	국가기술자격 검정 / 고용 지원 및 관리 /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 재직근로자 직업 능력개발 / 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인력양성 체계구축 (한국형 마이스터고) / 한국형 산학연관 협력 특성화교육	교육 분야: 직업교육 및 훈련
전략목표 4. 무역관련 인프라 개선			
1. 물류인프라 구축	1-1. 도로, 항만 등 물류인프라 구축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프로그램 / 공항 인프라 구축 / 도시철도 및 경전철 / 철도현대화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체계 개발	산업에너지 분야: 수송 인프라구축

출처: 저자작성

참고문헌

- 강문성. (2009).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자유기업원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8-1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안)”,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5-3호).
- 김봉길. (2011).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 일본연구 2011-0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김원화. (2004). “중남미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4호: 259~297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김정수. (2009). “New 무역 정책론”. 박영사.
- 대니 로드릭. (2011). “자본주의 새판 짜기”. 고빛샘·구세희 옮김. 21세기북스
- 송원근. (2008).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스티글리츠 조지프·앤드류 찰턴. (2007).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송철복 옮김. 지식의 숲.
- 유민지. (2011). “무역 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효과 및 제약요인 분석 : 몽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에릭 라이트너. (2012).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김병화 옮김. 부키.
- 외교통상부. (2003). “FTA 추진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자료.
- 외교통상부. (2012). “2012 외교백서”.
- 장춘녀. (2010). “한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형성백 옮김. 부키.

-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
- 장하준·아이린 그레이블. (2008).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정책매뉴얼”.
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
- 정훈. (2007.)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지역연구시리즈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성대. (2009.) “출범 5개월, 미국 신(新)정부의 통상정책 평가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201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10). “스티글리츠 보고서”. 박형준 옮김. 동녘.
- 조한솔. (2012a).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ODA연구 2012-04-058. 한국국제협력단.
- 조한솔. (2012b).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2012년 2호. pp.
31-51. 한국국제협력단.
- 진희선. (2009).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한국공정무역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경. (2008).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0).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한국국제협력단. (2012). “KOICA 공공행정 분야 추진 전략”.
- 한홍렬·이호생·이시욱. (2011).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TRA. (2012).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2-065. KOTRA.
- Burnside, Car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y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4), pp. 847-868.
- Cardoso, Eliana and Ann Helwege. (1992). Latin America's Economy: Diversity,
Trends, and Conflicts. Cambridge: MIT Press.
-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1).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Hanoi, 16 February 2011.

- Dalgaard, Carl-Johan, Henrik Hansen and Finn Tarp. (2004). "On the Empirics of Foreign Aid and Growth". *Economic Journal*, Vol. 114(496), pp. 191–216.
-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 (2010).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Washington D.C.,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www.state.gov/qddr
- Government of Vietnam. (2011). *Report on Assessment of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2006–2010 and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No.206/BC–CP.
- Government of Vietnam. (2012). *The Strategic Framework for Mobiliz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ODA and Other Concessional Loans from Donors in the Period of 2011–2015*. No.106/QD–TTg.
- Iglesias, Enrique V. (1992). *Reflections on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New Latin American Consensu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1*.
- OECD. (2006). *Aid for Trade: Making it Effective*. Paris: OECD.
- OECD. (2012a). *Management for Development Result: Aid for Trade Case Study of Vietnam*. Paris: OECD.
- OECD (2012b). *Managing Aid to Achieve Trade and Development Results: An Analysis of Trade-related Targets*. OECD.
- OECD/WTO. (2011).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1: Showing Results*.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2011). *Fact Sheet: U.S. Global Development Policy(2010)*, PPD–6,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201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0/09/22/fact-sheet-us-global-development-policy>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2008 Comprehensive Report on U.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oward Sub-Saharan Africa and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UNCTAD. (2004).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Linking International Trade with Poverty Reduction. United Nations.
- USAID. (2002). Foreign Aid in the National Interest: Promoting Freedom, Security, and Opportunity. Washington, DC: USAID.
- USAID. (2003). USAID Strategy: Building Trade Capacity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USAID.
- USAID. (2010). From Aid To Trade: Delivering Results: A Cross-Country Evaluation of USAID Trade Capacity Building. Washington, DC: USAID.
- USAID. (2011a). FY 2009 Foreign Operations Performance Report and FY 2011 Performance Plan. Washington, DC: USAID.
- USAID. (2011b). USAID POLICY FRAMEWORK 2011~2015. Washington, DC: USAID.
- USAID. (2012).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Guidance-Version 3. Washington, DC: USAID.
- USAID. (n.d). Foreign Operations Annual Performance Report for FY 2011 and the Annual Performance Plan for FY 2013. Washington, DC: USAID.
- World Bank. (2009). Unlocking Global Opportunities: The Aid for Trade Program of th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World Bank. (2011a). What is the World Bank doing on Aid for Trade?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World Bank. (2011b). Vietnam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12–FY16. Washington DC: The Worldbank.
- World Economic Forum.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WTO/OECD. (2007a). 2006 Joint WTO/OECD Report on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RTA,CB). WTO/OECD.

WTO/OECD. (2007b).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
WTO/OECD.

부 록

부록 1 <A/T 관련 CRS 코드>

구분	CRS 코드	분야	상세 분야
무역 관련 인프라	21010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운송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교통부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 역량강화 및 조연; 비특정 운송; 육로, 철도, 수로, 항공 운송과 관련된 활동
	21020	도로 운송	육로 인프라, 육로 운송수단; 승객용 도로 교통; 승용차
	21030	철도 운송	철도 인프라; 철도 장비; 기관차; 기타 차량(시가지 전차나 지하철 포함)
	21040	수로 운송	항구와 부두; 항구 관리 시스템; 배와 보트; 강 또는 내천에서의 수로 운송; 바지선과 선박
	21050	항공 운송	공항; 공항 관련 시스템; 비행기; 비행기 유지 관리 장비
	21061	창고	운송과 관계여부 무시
	21081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22010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통신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연(우편서비스 개선 포함); 통신과 관련된 비특정 활동
	22020	통신 / 전화	전화 네트워크; 통신 위성; 지상국
	22030	라디오 / 텔레비전 / 인쇄 매체	라디오와 TV 연결, 관련 장비; 신문; 인쇄 및 출판
	22040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접속; IT 교육(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을 시)
	230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에너지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에너지 자원부에 대한 지원; 관련기관 역량강화와 조연; 에너지 보존을 포함 에너지와 관계된 비특정 활동
	23020	전력 생산 / 재생가능 자원 사용	화력 발전소(열에너지 원천을 알수 없는 경우도 포함); 가스와 석탄을 혼합한 화력발전소
	23030	전력 생산 / 재생가능 자원 사용	정책, 계획 및 개발 프로그램; 조사와 장려(장작, 숯 생산은 31261에 해당함)
	23040	전력 송전 / 배전	발전소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배전; 송전선
	23050	가스 공급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공급
	23061	유류화력 발전소	디젤 발전소 포함
	23062	가스화력 발전소	

무역 관련 인프라	23063	석탄화력 발전소	
	23064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안전 포함
	23065	수력 발전소	전력 생산하는 강의 바지선 포함
	23066	지열 발전소	
	23067	태양 에너지	태양광전지; 태양열 시스템과 태양열 난방
	23068	풍력 발전	발전과 양수를 위한 풍력에너지
	23069	조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조력과 파력 에너지
	23070	생물자원 에너지	전략생산을 위한 고밀도 기술과 생물자원 (생물가스, 사탕수수 또는 기타 식물 잔재에서 얻어낸 가스, 혐기성 분해 포함)
	23081	에너지 교육 / 훈련	모든 에너지 분야에 사용 가능; 모든 수준의 훈련
	23082	에너지 연구	일반적인 천연자원조사
생산 역량 강화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금융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 강화 및 조언; 금융 시장과 시스템
	24020	중앙금융기관	중앙은행
	24030	공공 금융기관	모든 공공금융기관; 대출한도; 보험, 임대차계약, 벤처 캐피탈 등 (특정 한 분야 집중되어 있으면 제외)
	24040	비정규 / 유사 금융기관	소액 대출; 저축신용조합 등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무역과 기업협회,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 기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규제 개혁; 민간 부문 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통상 정보; 무역 박람회 등 민간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민간 부문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32130 사용)
	25020	민영화	분야를 지정할 수 없을 시; 일반적인 국영기업의 구조 개혁 또는 독점권 폐지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래밍, 조언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농업부에 대한 지원; 관련기관 역량강화와 조언; 기타 농업과 관련해 비특정 활동
	31120	농업개발	통합적 프로젝트; 농장 개발
	31130	농지개발	토양 파괴 관리; 토양 개선; 벌채 지역의 배수 ; 토양의 탈염화; 농지 조사; 토지개간; 침식과 사막화 관리
	31140	농업용수자원	관개; 저수지; 수압 구조물;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종자, 비료, 농업 기자재 공급
	31161	식량 생산	곡식(밀, 벼,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사탕수수); 원예; 채소; 과일과 베리; 기타 단년 또는 다년생 작물 (농산물 가공업은 32161 사용)

생산 역량 강화	31162	경제 작물 / 수출 작물	설탕, 커피, 코코아, 차, 식용류를 짜내는 씨, 견과류, 섬유 작물, 담배, 고무 (농산물 가공업은 32161 사용)
	31163	축산	축산업, 동물 사료 지원
	31164	농지제도 개혁 (경지정리 등)	농업 분야 개혁 포함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대체 농업 소득원을 통한 불법 마약 재배 감소 프로젝트 (농업 외의 대체 소득원 개발은 43050 해당)
	31166	농업 지도	농업관련 비정규 교육
	31181	농업관련 교육 / 훈련	
	31182	농업 연구	식물육종, 생리학, 유전자원, 생태학, 분류학, 병충해 관리, 농업 생물 공학; 축산 연구 (동물건강, 사육 및 유전, 영양, 생리)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마케팅 정책과 조직; 저장과 운송; 전략적 비축
	31192	병충해 구제	통합적 식물 보호; 생물학적 식물 보호 활동; 화학비료의 공급과 관리; 살충제 공급; 식물 보호 정책 및 법률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농업 분야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계획 포함); 농작물 보험
	31194	농업협동조합	농민 조직 포함
	31195	축산 진료	동물 건강과 관리; 유전자원; 사료 자원
	31210	임업 정책 / 행정 / 관리	임업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삼림조사;임업과 식림업 관련 비특정 활동
	31220	임업 개발	산업소비와 농촌소비를 위한 조림; 개발과 활용; 침식과 사막화 관리; 통합적 임업 프로젝트
	31261	연료용 목재 / 숲	장작과 숲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 개발
	31281	임업 교육 / 훈련	
	31282	임업 연구	인공 재생; 유전자 개량; 생산방법; 비료; 수확
	31291	임산물 유통 지원	
	31310	어업 정책 / 행정 / 관리	어업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심해와 해안 어업; 해수어와 담수어 조사 및 관찰; 어선/장비; 어업과 관련된 비 특정 활동
	31320	어업 개발	어업개발과 활용; 어종 보호; 수산양식;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
	31381	어업 교육 및 훈련	
	31382	어업 연구	시험적 수산 양식; 해수/담수 생물학 연구
	31391	수산물 유통 지원	어항; 수산시장; 수산물 수송과 냉동저장
	32110	공업정책 / 행정 / 관리	산업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산업관련 비 특정 활동; 기타 비특정 상품 제조

생산 역량 강화	32120	공업개발	
	32130	중소기업개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회계, 감사, 자문 서비스 포함)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기본 식료품 생산; 유제품; 도축장과 도축설비; 육류와 어류 제품 생산 및 저장; 식용류; 설탕 정제소; 음료/담배; 동물 사료 생산
	32162	임산물 가공	목재생산; 펄프/종이 생산
	32163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니트 공장 포함
	32164	화공	산업용과 비산업용 화학약품 생산 시설 (살충제 생산 포함)
	32165	비료공장	
	32166	시멘트 / 인조대리석 / 소석회	
	32167	에너지 가공	액화 가스; 석유 정제소
	32168	의약품 생산	의약 장비/물품; 약물; 의약품; 백신; 위생 제품
	32169	철강 산업	철강, 건설용 금속 제품
	32170	비철금속 산업	
	32171	엔지니어링(기계공업)	전기/비전기 기계 제조; 엔진/터빈
	32172	수송기계 산업	조선; 어선 제조; 철도 장비 생산; 자동차; 비행기; 네비게이션 시스템
	32182	기술연구 개발	산업 표준; 품질 관리; 도량형학; 검사; 인가; 보증
	32210	광물 / 광업정책, 행정, 관리	광물과 광업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광업관련 법률, 광업 토지 대장, 광물자원 목록, 정보 시스템);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광물 자원 탐사와 관련된 비특정 활동
	32220	광물탐사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광물 추출과 가공, 인프라, 기술, 경제성, 안전과 환경 관리 (수문지질학 14010, 환경 지질학 41010 제외)
	32261	석탄	갈탄과 토탄 포함
	32262	석유 및 가스	석유, 천연가스, 응축액,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채굴과 생산 포함)
	32263	철금속	철, 합금철 금속
	32264	비철금속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32265	귀금속 / 보석류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보석의 원석
	32266	공업용 석재	중정석, 석회암, 장식, 고령토, 모래, 석고, 자갈, 장식돌
	32267	비료용 광물	인산염, 칼륨
	32268	해양 광물	금속단괴, 인광, 해양사광 매장물
	33210	관광정책/행정/관리	

무역 정책 및 규범	33110	통상정책, 행정 관리	통상 정책과 계획;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 통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개혁; 정책 분석과 다자 통상 협정 이행 (무역 기술 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지역 수준이면 33130 사용); 국가 개발 전략에서의 무역 주류화 (예: 빈곤 퇴치 전략 연구논문); 도소매 무역; 통상과 무역 촉진과 관련된 비특정 활동
	33120	무역진흥	수출입과정의 간소화와 조화 (예: 세관 평가, 면허 취득 과정, 운송 형식 절차, 비용지불, 보험); 통관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 관세 개혁
	33130	지역무역협정	지역 무역 협정 지원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아세안, 미자유무역지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국가연합, EU); 지역 수준의 무역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포함; 지역무역협정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의 발단과 도입에 대한 상세 규정
	33140	다자간무역협상	개도국의 다자 무역 협상의 효율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협상이 교육, 협상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포함);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다자 무역 관련 기구 가입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위 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무역 관련된 인적자원개발 (무역관련 대학 프로그램 포함)
무역 관련 조정	33150	무역 조정	수원국 자체의 통상 정책 조정과 무역 개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타국가의 수원국 정부예산 지원;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수지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

출처: 저자작성

(전체 CRS 코드는 www.oecd.org/document/21/0,3343,en_2649_3447_1914325_1_1_1_1,000.html참조)

부록 2 < Aft 분야별 평가지표(안) >

Level 1: Direct objectives/outcomes

Technical assistance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Suppressing/reducing obstacles to trade at the border, including trade facilitation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Suppression of quotas and other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exports • Reduction of tariffs, suppression of tariff peaks, tariff escalation or simplification of tariff schedules • Customs modernisation and reform, harmonisation of procedures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including SPS, TBT, and other certifications, rules of origin, valuation, etc. to conform with relevant agreements or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 Implementation of WTO or regional/bilateral commitments (e.g. common external tariff)	• Changes in the legal and/or regulatory framework • Institutional reforms • Changes in practice	•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 OTRI, TTRI (WTI 1.1) • Binding coverage and bound rates (WDI) • Share of tariff lines with peaks/specific rates (WDI, WTI 1.6) • MFN applied tariffs – AV+AVE or AV only (WDI, WTI 1.2, 1.3) • Applied tariffs incl. preferences (WDI, WTI 1.4) • Tariff escalation (WTI 1.5) • MFN 0 tariff lines / Import value (WTI 1.7) • Tariff bounds / Overhang (WTI 1.8) • Non-AV tariffs (WTI 1.9) • Non-tariff measures (WTI 1.10) • Customs duties (WTI 1.11) • Export restrictions (WTI 1.13)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 efficiency of customs and other border procedures (LPI, WTI 4.1) • Trading across borders – Doing business (IFC, WTI 4.2) • Trade Enabling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dexes – goods market efficiency: burden of customs procedures, prevalence of trade barriers, trade tariffs,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import-export procedures, transparency of border administration (WEF GCI 6.10, 6.11, 6.13, ETI 1.01-

		4.02) • Average time to clear exports through customs / time to export/import (WDI) • Documents to export/import (WDI)
Suppressing/reducing trade-discriminatory or distortive measures beyond the border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Suppression or reduction of trade-distortive subsidies • Suppression of domestic regulations and measures incompatible with the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 nation principles, in particular in the domain of services, to include limits on equity, nationality requirements, local content, etc. • Removal of other market acces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 Implementation of WTO or relevant regional/bilateral commitments (e.g. provisions on services or investment)	• Changes in the legal and/or regulatory framework • Institutional reforms • Changes in practice	•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es (WB and OECD) • GATS commitment restrictiveness index (WTI 1.14) • NTMs statistics – surveys and tariff-equivalents (WITS)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goods market efficiency: agricultural policy costs, prevalence of foreign ownership, business impact of rules on FDI (WEF GCI 6.08, 6.11, 6.12)
Mainstreaming and promoting trade, trade integration and investment, including through multilateral/regional/bilateral agreements and improved market acces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Trade negotiations, including training and domestic consultations, for WTO accession, WTO negotiations, plurilateral (e.g. on telecoms), region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other types of trade-related agreements, such a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pen sky agreements, etc. • Trade-policy reviews, diagnostics, and other forms of monitoring, including data collection • Design of trade strategies and mainstreaming in other development or growth plans • Trade-related research, teaching or training	• Significant progress or successful conclusion of trade and trade-related negotiations • Increased occurrence of trade and trade-related issues in growth and development programs (PRSPs, CAS, etc.) • Increased publication, information and data on trade	• Market access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WTI 2.1) • Rest of the world applied tariffs, including preferences (WTI 2.2) • MFN 0 export value (WTI 2.4) • Asia regional integration indicators (ADB) • Number of FTAs / CUs (WTI 2.5) • Preferential exports take up / utilisation rates / value (WTI, 2.5) • Share of trade with FTA/CU partners (WTI 2.5)

Economic Infrastructure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of the domestic market, and the security, predictability,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ransports/logistics, telecommunications and ICT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Reforms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cluding infrastructure, regulation, competition, and access for all segments to include fixed lines and mobiles - Development of the ICT sector and the Internet (infrastructure, regulation, competition, access) - Reforms of the transport, logistics and ancillary services, including infrastructure, regulation, competition for land (road and rail), maritime/water and air - Regional infrastructure for trade corridors, and other forms of regulatory harmonisation and co-operation	- New infrastructure and trade “links” - Changes in the legal and/or 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institutions (including regulation authorities) - Changes in practice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 quality of transports and IT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ansport costs, logistics competence, trackability and timeliness of shipments, domestic transportation costs (WDI, LPI, WTI 4.1) - Trading across borders – Doing business (IFC, WTI 4.2) - Trade Enabling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dexes – infrastructure: quality of infrastructure overall, roads, railroads, ports, air transport, available seats, fixed telephone lines/100, mobile phone subscriptions/100, availability and quality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vailability and use of ICTs (WEF GCI 2.01-2.09, WEF TEI 4.01-7.05, WDI); – technological readiness (WEF GCI 9.01-9.06) -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AICD) -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UNCTAD, WTI 4.3) - Baltic Exchange Dry Index (WTI 4.3) - Lead time to export/import (WDI) - Port container traffic (WDI, WTI 4.3) - Total / air freight and costs (WTI, 4.3) - Number of seats available, airlines, international routes, airport passenger statistics (IATA, WDI) -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and ICT Development Index (ITU) - Foreign participation /

		ownership in telecoms (ITU, WTI 1.14) • Competition index in telecoms (ITU, WTI 1.14) • Number of international gateways, landing stations, licenses for fixed and mobile phone, Internet providers (national data, WB and OECD STRI) • Mobile and fixed-line telephone subscribers / population covered by mobile cellular network (WDI, WTI 4.4) • Average cost of 3-minute call to US (WTI 4.4) • Personal computers (WTI 4.4) • Internet/broadband users / subscribers (WDI, WTI 4.4) • Internet bandwidth, secured servers (ITU, WDI)
Improving other domestic infrastructure, including storage and energy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Storage infrastructure • Reforms pertaining to access, regulation, competition in the field of energ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other natural resources essential to certain activities (e.g. water in agriculture)	• Changes in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 Changes in institutions	• Procedures and time to build a warehouse (WDI) • Time required to get electricity (WDI) • Energy statistics / Access to electricity (IEA, WDI) •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WEF 2.07) • Power outages in firms / value lost in power outages (WDI) • Electricity cost (WTI 4.6) • Pump price for fuel (WTI 4.6)

Productive capacity building (including trade development)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Improving the legal/regulatory/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 Technical and SPS standard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Capacity building for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labs, personnel, resources, etc.) • Adoption or reform of domestic norms and standard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 Promotion of standards, including voluntary standards, and related training • Private sector support to comply with standards •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Improvement of IP regime and administration to comply with trade agreements, to include patents, authors' rights, geographical indications, etc. • Improvement of enforcement mechanisms and practices • Promotion of IPRs and related training or technical assistance • Competition, including privatisations and concession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Privatisations, concessions, and other forms of opening of sectors to competition •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a competition framework, including competition law, competition authority (e.g. independence, resources, etc.), competition law enforcement (e.g. investigations, sanctions, etc.) and related training or technical assistance • Government procurement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Adjustment of the laws pertaining to	• Changes in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including in court and other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chanisms) • Changes in institutions • International agreements pertaining to the recognition of domestic standards, certifications, etc.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IFC, WTI 3.1, WDI) • World governance indicators – corruption, rule of law,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political stability (WTI 3.2) • Enabling Trade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dexes – Regulatory environment (WEF ETI, 8.01-08) – institutions: property rights, ethics and corruption, undue influence, government inefficiency, security (WEF GCI 1.01-1.16) – labor market efficiency (WEF GCI 7.01-7.09); –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WEF GCI 8.01-8.08); – goods market efficiency (WEF GCI 6.01-6.16) – business sophistication: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WEF GCI 11.03) • Enterprise ownership (government, private foreign, private domestic) (ADI) • Cost of business start-up procedure / procedures to register a business (WDI) • Time spent in meetings with tax officials / expected gifts / informal payments to public officials (WDI) • Firms using banks to finance investment (WDI) •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WDI) • Time required to enforce a contract (WDI) • Time required to obtain an operating license / register property / start a business

public procurement, including transparency, selection criteria, national preference, etc. • Security of contracts and investment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including rights to challenge domestic regulations/decisions • Development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e.g.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olstering of domestic arbitration capacities) • Adjustment of the laws pertaining to nationalisation, expropriation, foreign ownership, stability clauses, etc. • Corruption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Reforms aimed at fighting corruption in the public (e.g. customs) and private sectors • Promotion and adop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 Administrative burden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Administrative reforms towards simplification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e.g. guillotine reform), increase in transparency, predictability, timeliness, and secur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e.g. suppression of authorisations) • Access to finance • Reforms of the financial sector, including micro-finance, to increase affordability and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 Export credit and trade finance • Other constraint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Cre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s, business clusters, technology centers, etc. • Revision of relevant labor regulations towards greater labor market efficiency • Revision of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form of business operations and partnerships (e.g. franchises, multi-sector		(WDI) • Banking GATS commitment index (USITC, WTI 1.14) • Export credit – insured exposures (WTI 4.5) • Indicators of financial structure, development and soundness (IMF) • Access to finance (WDI) • Diffusion of voluntary standards and ISO certification ownership (WDI, national statistics) • Value of seized counterfeited goods (national statistics) • Number of registered trademarks, patents, etc. (WIPO, WDI) • Number of competition investigations and sanctions (national statistics) • Public procurement penetration ratio – Public imports / public demand % (national statistics) • Arbitration awards (ICSID and other arbitration bodies statistics) • Protecting investors (ADI) • Security costs (ADI)
---	--	---

partnerships, etc.) Increasing security of operations and staff against crime and violence		
Improving business support and the organisation, connectivity and performance of markets, including e-commerce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and incentives - Analyses and information on markets, opportunities, threats, etc. - Marketing, branding, international presence and promotion efforts - Sectoral, professional or other forms of associations (e.g. chambers of commerce) and consultations - Development of trade corridors, and other regional forms of hard and soft networks (e.g. regional regulatory agency, regional distribution network, etc.) - Development of regional markets and stocks / boards of trade, price regulation mechanisms - Organisation of the value-chains and sectors (filières), including storage and distribution channels - Development of e-commerce (e.g. infrastructure, legal framework, protection of data, security of payments, etc.)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at the regional level) - Changes in practice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 quality of transports and IT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ansport costs, logistics competence, trackability and timeliness of shipments, domestic transportation costs (WB, WTI 4.1)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business sophistication: extent of marketing,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value chain breadth,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delegation of authority (WEF GDI 11.05-11.09) – goods market efficiency - Value of e-commerce, number of ICT firms, number of secured servers (WDI, ITU, national statistics) - Post-harvest losses (African Postharvest losses Information System)
Bolstering productivity, production and innovation capacities, including human capital and other resource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Innovation policies and incentives (e.g. R&D, innovation centers) and adaptation/diffusion of technologies in trade-oriented sectors - Education and training to match domestic skill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mand in trade-oriented sectors / upgrading of available skills - Development of production hard (e.g. storage, conditioning, cooling chains, etc.) and soft (e.g. value-chain management) capacities in trade-oriented sectors - Creation of clusters and other task bundling efforts - Changes in production (methods and equipment) towards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e.g. water) and energy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 Computer,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s, ICT goods and services imports/exports (WDI) - Investment in telecoms with private participation (WDI) - Firms offering formal training (WDI) -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residents and non-residents, domestically and abroad (WDI, WIPO) - Education statistics –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specialties, male/female, etc. (UNESCO, ILO, WDI)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business sophistication (WEF GCI 11.01-11.09); – innovation (WEF GCI 12.01-12.07) - Extent of staff training (WEF GCI 5.08)

		• Labor statistics – activity rates, unemployment, male/female, etc. (ILO, WDI) • Innovation indicators and surveys – public and private R&D expenditure, high and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OECD) • Production capacities – sector output – and productivity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WIOD)
--	--	--

Trade-related adjustment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Adjusting to fluctuations in tariffs and prices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Compensations and reforms linked to tariff erosion and movement from unilateral to reciprocal preferences • Compensations and reforms linked to losses in tariff/custom revenues • Mechanisms and policies to deal with price volatility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fiscal policy) • Changes in practice	• Price volatility of imports • Customs/tariffs and other revenues (WITS)
Restructuring industries/sectors facing a trade shock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Soft industrial policy • Industrial adjustment programs, impact mitigation plans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 Number of beneficiaries (national statistics) • Changes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sectors open to trade and/or affected by trade shocks (national statistics)
Providing safety nets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rkers negatively affected by trade Activities to target, among others: • Labor and social adjustment schemes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including in the private sector) • Results of the re-qualification programs (success rate, etc.)	• Number of beneficiaries (national statistics) • Employment/unemployment rates in sectors open to trade and/or affected by trade shocks (ILO)

Other trade-related needs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Ensuring enforcement of trade-related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trade remedies and safeguards Activities to include, among others: • Assistance to the use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WTO and other trade or investment agreements (e.g. RTAs) • Reform of trade remedies mechanisms and practices (e.g. antidumping, CVDs), including training and data collection • Reform of safeguards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 Trade remedy measures (AD, CVD, SG) in force / initiations / impositions (TTBD, WTI 1.12, 2.3) • WTO consultations and disputes initiated (WTO, WTI 1.13, 2.3)
Promoting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d business practices Activities to include, among others: • Negotiation and adop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d business – including the promotion of voluntary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e.g. for extractive industries,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land grabbing, intra-production network competition, responsible sourcing, etc.) • Negotiation and adop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pertaining to the environment, good governance, labor conditions / Monitoring of the respect of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 Changes in institutions • Changes in the legal/regulatory framework • Changes in practice (including in the private sector) • Adop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institutions: corporate ethics and accountability (WEF 1.17-1.20) • Signatori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s in the country (UN Compact, OECD)

Level 2: Intermediate objectives/outcomes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Developing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and non-discriminatory trading system	• WTO/PTA membership and level of commitments/locked-in reforms • Active participation to negotiations (offers, requests, etc.)	

Increasing 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		• Global Services Location Index (AT Kearney) •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WEF) • Global competitiveness / enabling trade index (WEF) • Trade and development index (UNCTAD) • FDI inflows and outflows (WTI 6.10)
Increasing exports and export market shares / Increasing foreign currency reserves or restoring BoP equilibrium		• Trade performance index (ITC) • Export/import value/volume index (WDI) • Real / nominal growth in trade – total and per sector (WTI 5.1, 5.2) • Trade balance – goods services, current account – and international reserves (WTI 6.6) • Shares and growth in shares of world trade (WTI 6.7, 6.8) • Trade in value-added (WTO-OECD) • Remittances inflows and outflows / rankings (WTI 6.10)
Diversifying exports and imports (products/services and origin/destination)		• Trade performance index (ITC) • Agricultural raw materials, food, fuel, merchandise, manufactures exports/imports (WDI) • Merchandise exports/imports by country/region/income level (WDI) • Trade composition – share of goods, services and sectors (WDI, WTI 6.3, 6.4) • Product and market diversification – number of products exported/imported, share of top 5 products and markets, export/import product concentration index (WTI 6.9)
Increasing trade integration and consolidating participation to global value chains		• Trade integration – trade as % of GDP (WTI, 5.5)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business sophistication: value chain breadth,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local supplier quantity/quality,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WEF GCI 11.01-11.09) •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 trade in tasks (national statistics) • Intra-firm trade (national statistics) • Input-output tables (national statistics, WIOD) • MNCs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UNCTAD)
Reducing the trade costs (exports) and price of imports/inputs		• Cost to export/import (WDI) • Commodity prices (WTI 2.7)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WTI 4.1) • Trading across borders – Doing business (IFC, WTI 4.2) • Freight and air freight cost (WTI 4.3)
Reallocating production capacities to more competitive and higher value-added activities		• Sector and economy-wide input-output tables (national statistics, WIOD) • Share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radable goods and services (national statistics, ILO) • Employment in high value-added production segments (national statistics, ILO) • High-technology imports/exports (WDI)

Level 3: Final objectives/outcomes or impacts

Objectives	Indicators	
	Qualitative/Quantitative	
Increasing the value for trade (exports and imports): • Direct and indirect job creations, including for women, youth, and other targeted groups (e.g. smallholder farmers, SMEs) • Level and predictability of income, including for women, youth, and	•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 Diffusion of technology, knowledge, know-how, capital and others – number of beneficiaries of trainings, innovation	• Direct/indirect job creations – by category at micro and macro levels (national statistics) • Income generated in trading sectors/entities – input/output tables, firms' profits (national statistics)

other targeted groups / poverty alleviation • Economic and social upgrading, including health (e.g. hygiene standards, access to health benefits, prevention, etc.) • Diffusion of technology, knowledge, know-how, capital and others • Better and mor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 Politi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resistance to shocks	indicators • Use of energy/water, agricultural productivity • Political – domestic and international – and economic stability and resistance to shocks (WGI, WTI 3.2)	• Formal v. informal jobs (national statistics) • Firms formally registered at start of operations (WDI) • Firms with female participation in ownership (WDI) • Years of experience of the top manager (ADI) • Health statistics in trading sectors/companies – e.g. business impact of HIV/AIDS tuberculosis or malaria (WEF 4.01, 4.04, 4.06) • Methane/nitrous oxide emissions, CO2/GHG/HFC/PFC/SF6 emissions, organic water pollutant emissions, fertilizer consumption, water pollution by sector (WDI) • Tourism satellite account (WTTC) •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terrorism (WEF TEI 9.02-03)
---	---	---

출처: OECD. (2012b).

부록 3 <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

[Interview Questionnaire for Donor]

1. Aid for Trade (AfT) in Vietnam

- 1.1 What kinds of AfT project does your organization conducts in Vietnam?
- 1.2 What are the strengths of your organization's AfT projects?
- 1.3 What are the challenges your organization facing with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AfT in Vietnam?

2. Policy Coherence related to Aid for Trade(AfT)

- 2.1 Policy coherence between AfT policy and other trade policy (Internal harmonization))
 - How do you evaluate the degree of policy coherence between AfT policy and other trade policy of your own country?
 - What kinds of efforts does your organization put in order to increase the policy coherence between AfT policy and other trade policy of your own country?
- 2.2 Policy coherence between donors (External harmonization)
 - Does your organization actively participating in donor working group for better harmonization related to AfT?
 - What other efforts does your organization make to enhance policy coherence among donors related to AfT?
- 2.3 Aid alignment
 - How does your organization conduct consultations with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fT projects?
 - What other efforts does your organization make to enhance policy coherence between your organization's AfT policy and Vietnam's development policy?

3. Building developing country friendly trade system

- 3,1 Does your organization realize the unfairness of imbalances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ncluding WTO agreement?
- 3,2 If so, what kinds of efforts does your organization put in order to create better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cluding WTO agree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4. Improving effectiveness of AfT

- 4,1 Aid provided to trade related infrastructure is considered as AfT at current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ue to this, there is possibility that aid which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promoting trade can also be included as AfT.
 - How does your organization deals with this problem?
 - What kind of measure does your organization have to assure AfT to trade related infrastructure to promote trade?
- 4,2 Aid provided to build productive capacity related to trade is also considered as AfT. What kinds of measures does your organization use to assure that assistance to build trade related capacity to achieve actual trade promotion?

5. Delivering AfT project

- 5,1 Plan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 How do you plan AfT project and what kinds of consideration is made for the planning?
 - How do you implement AfT project and what kinds of consideration needs to be made for the implementation?
 - How do you evaluate AfT project and what kinds of indicators do you use?

5.2 Promoting participations from private sector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policy on promoting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 How does your organization use PPP for AfT program?

5.3 Conducting AfT Program

- Does your organization implement program or programmable approach or package aid for AfT?
- If so, how does your organization plan, implement, monitor and evaluate the AfT program aid or package aid?

5.4 Non-ODA assistance (OOF, OF)

- Does your organization use Non-ODA assistance such as OOF and OF for AfT?
- If so, how does your organization plan, implement, monitor and evaluate the Non-ODA assistance related to AfT?
- What kinds of efforts does your organization put in order to harmonize the ODA assistance and Non-ODA assistance related to AfT?

* More questions to be added according to each donor

[Interview Questionnaire for government officials]

1. Trade policy in Vietnam

- 1.1 What kinds of trade policy does Vietnam government is conducting now?
- 1.2 What are the challenges Vietnam facing with related to trade?
- 1.3 What is the major trade mechanism and policy of Vietnam to promote trade?

2. Effectiveness of AfT in Vietnam

- 2.1 AfT assistance is categorized into 1) trade related infrastructure, 2)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3) trade policy and regulation and 4) trade related adjustment.
 - Among these category, AfT to which category do you think most effective achieving trade promotions?, and why?
- 2.2 Which country do you think is the best practice for promoting trade through AfT and why?

3. Needs for AfT in Vietnam

- 3.1 What kinds of or in which field(as described above question No.3) ‘Aid for Trade(AfT)’ assistance is most needed in Vietnam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your government's own agenda?, and why?
 - Please describe field in detail that you think AfT is most needed.
(i.e. Trade related infrastructure – road, transport, energy etc;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 privat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etc; Trade policy and regulation – trade facilitation, regional trade agreemen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etc; and trade related adjustment.)
- 3.3 Which country's experiences or practices do you want to learn regarding trade issues and why?

4. Building developing country friendly trade system

- 4.1 Do you think current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ncluding WTO agreement is unfair or imbalanced to developing countries?
- 4.2 If so, why and what kinds of efforts would be needed in order to create better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cluding WTO agree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 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 건의 프로젝트 사업, 8,000여 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 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 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에 보답하자는 ‘감사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ODA 연구실(ODA Resarch Office)

KOICA ODA 연구실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ODA 연구실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 연구실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KOICA 녹색 ODA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녹색개발혁신파트너십 (IPGD) 부록, 녹색 ODA 사업 개발 가이드라인: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 동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유발 재해경감 및 GAP 극복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 개선방안
- 직업훈련 개발협력 프로그램 모델 연구
-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 프로그램 모델 연구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 사회보호를 통한 개도국 도시빈민 지원방안
- 녹색 ODA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 직업훈련 분야 ODA 통합 추진전략 연구: 직업훈련 ODA 콘텐츠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 방안: KOICA의 내부적 지식공유 활성화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 4호 |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다
- 5호 | '개발협력건설링 ODA사업'과 공적개발 원조 개선방안
- 6호 |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 7호 |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 제10호 |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 제11호 | 개발공헌지수(CDI)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를 통해 본 우리 원조 개선 방안
- 제12호 | 개발협력 '신 사업성과지표' 활용방안 : KOICA를 중심으로
- 제13호 | 글로벌 도전과제와 개발협력 인구와 가족계획
- 제14호 |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 제15호 | 한국 OD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 제16호 |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ODA방안 : 빈곤층 친화적 시장개발(MM4P)사업을 중심으로
- 제17호 |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연구자료 ODA연구 2013-03-051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발행 2013년 3월
발행인 박 대 원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ODA연구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 461-833)
전화 031) 740-0493
팩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동화인쇄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3-000048-01

ISBN 978-89-6469-160-1 93320

